

##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2. 13. (수요일), 14:00 ~ 18:1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이순희, 홍보식(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과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공 개)
2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4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공 개)
5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6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	(공 개)
7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공 개)
8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9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공 개)
10	제2로 직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 개)
11	수원 화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3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공 개)
14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15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공 개)
16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공 개)
17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18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공 개)
19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공 개)
20	김포 덕포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김포 문수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2	이천 설봉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4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5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6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7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8	강화 삼랑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통합안)	(공 개)
29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공 개)
30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1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2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3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통합안)	(공 개)
34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5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6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7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8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9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0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1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2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b>【검토사항】</b>		
43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44	고성 송학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 개)
45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공 개)
46	익산 미륵사지 내외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공 개)
47	익산 미륵사지 내 경관조명 추가설치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공 개)
<b>【보고사항】</b>		

48	2024년 사적분과 문화재현장 위원회 운영 등 보고	(공 개)
4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01

### 1.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장릉」의 문화재지정구역 일부 해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장릉 104개 필지(414,427㎡) 중 2008년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시 오기입된 1필지(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231㎡)에 대하여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9차 위원회('23.09.13.) 원안가결
- 예고결과
  - 예 고 일 : 2022. 10. 19.(문화재청 공고 제2023-378호)
  -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별도 제출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장릉(사적 / 1970.05.26.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탄현면)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조정(해제) 조서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해제면적		조정 후 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04	414,427㎡	1	231㎡	103	414,196㎡	
문화재구역	104	414,427㎡	1	231㎡	103	414,196㎡	

#### (4) 일부 해제 사유

- 조정 필지는 2008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당시 포함된 필지이나 추가지정 사유로 논의된 연지 및 우백호 복원 예정지와 동떨어진 곳에 해당 필지

(1필지)만 위치하고 있어 해당 필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확치 않아 해당 필지는 오기입된 것으로 판단됨

#### 라. 참고사항

(1) 파주시 현지조사의견('23.03.1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경기도문화재위원 ○○○)

- 본 건은 파주 장릉에서 200여m 외 떨어진 1필지의 지정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파주 장릉의 지형적 형태를 볼 때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 파주 장릉의 좌청룡 우백호 등의 풍수적 요소가 추정됨. 또한 지형·지적선을 검토해 볼 때, 파주 장릉의 능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떠한 사유로 현 파주 장릉의 지정구역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 지정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지적도부터 근세까지의 지적변천, 지정구역 고시문에 의한 변천을 조사한다면 장릉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잔존한 것인지, 추가되는 과정에서 잔존한 것인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해제) 조사보고서 1부.

## 과주 장릉(坡州長陵) 사적 일부 해제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08.24.(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과주 장릉(坡州 長陵)(사적 / 1970.05.26. 지정)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 입지현황

- 과주 장릉은 동측의 월농산을 종산으로하고 자좌오향의 남향의 입지이고 좌우측 능선들이 능역을 감싸고 있다.

#### ○ 역사·문화환경

- 조선 16대 인조(재위 1623~1649)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1594~1636)의 능이다.
- 인조는 추존 원종의 첫째아들로 1623년 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다. 재위기간동안 이괄의 난(1624년)을 수습하였고,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의 시련을 겪었다. 또 충융청과 수어청을 새로 만들어 군사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인열왕후는 한준겸의 딸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으며, 인조 사이에서 6남(소현세자, 효종, 인평대군, 용성대군, 그 외 2남 조졸) 1녀(조졸)를 낳았다.
- 장릉은 처음 인열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과주 북운천리에 조성되었고, 이후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쌍릉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뱀의 피해가 잦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장릉의 병풍석은 조선왕릉 중 처음으로 모란꽃과 연꽃문양을 새겼다. 장명등에도 모란무늬와 연꽃무늬가 새겨 있는데 이는 17세기 석물문양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
-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고,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호, 석양, 장명등, 망주석 등을 세웠다. 합장릉의 형태로 혼유석은 2좌 배치하였다. 장릉의 석물은 옮기기 전 석물과 옮긴 후 새로 만든 석물이 같이 있어 17세기와 18세기의 왕릉 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조선 제 16대 인조와 동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임.
- 인조는 선조의 제 5男 정원군(추존원종)의 맏아들 능양군으로 광해 15년 반정으로 김류, 이귀 등에서 추대되어 왕위에 오름. 재위 27년에 춘추 55세로 승하함. 능 석

물제도를 보면 봉분하에 병석을 두르고 밖에 석난간을 둘렀으며 능전에 석상 2좌를 배치하여 2위임을 표시함.

- 이곳은 조선 제16대인조(1623~1649, 재위)와 그 비 인열왕후(1594~1635)의 능이다. 인조는 원종(추존)의 아들이며 선조의 손자로서 선조40년(1607) 능양군에 봉군되고 광해군 15년(1623) 3월에 이귀, 김유 등의 반정이 성공하여 경운궁 별당에서 즉위하였다. 인조는 재위 기간 중 인조 2년(1624)에 반정에 공을 세운 신하들의 논공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이괄의 난과 인조5년(1627)의 정묘호란을 겪었으며, 인조 14년(1636)에는 병자호란을 당하여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였다가 강화가 성립되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고 환궁하였다. 인조는 재위 27년 동안에 두 번의 호란에 많은 치욕과 고생을 겪고 한을 품은 채 춘추 55세로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
- 인열왕후는 청주 한씨로 서평부원군 한준겸의 딸로서 선조 27년(1594)에 원주에서 탄생, 광해군때 능양군과 가례하고 인조원년(1623)에 비에 책봉되었고, 효종, 소현세자, 인평대군, 용성대군을 낳았으며, 인조 13년(1635)에 춘추 42세로 승하하였다.

## 5. 해제 근거기준

- 해당 조정 필지는 2008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당시 추가됨.
-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는 보호구역으로만 지정한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조정하고, 재실·연지 등 조선왕릉의 기본 상설물이면서 미지정된 부분 등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임.
- 추가 지정 당시 논의된 연지 및 우백호부분에서 조정필지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지정 당시 필지 **오기입**된 것으로 판단됨.
- 일제강점기 시기 지적도(임야조서)와 비교해서도 조정 필지는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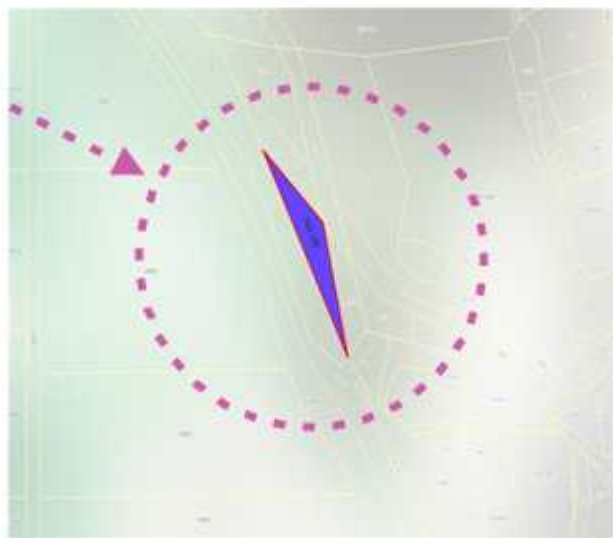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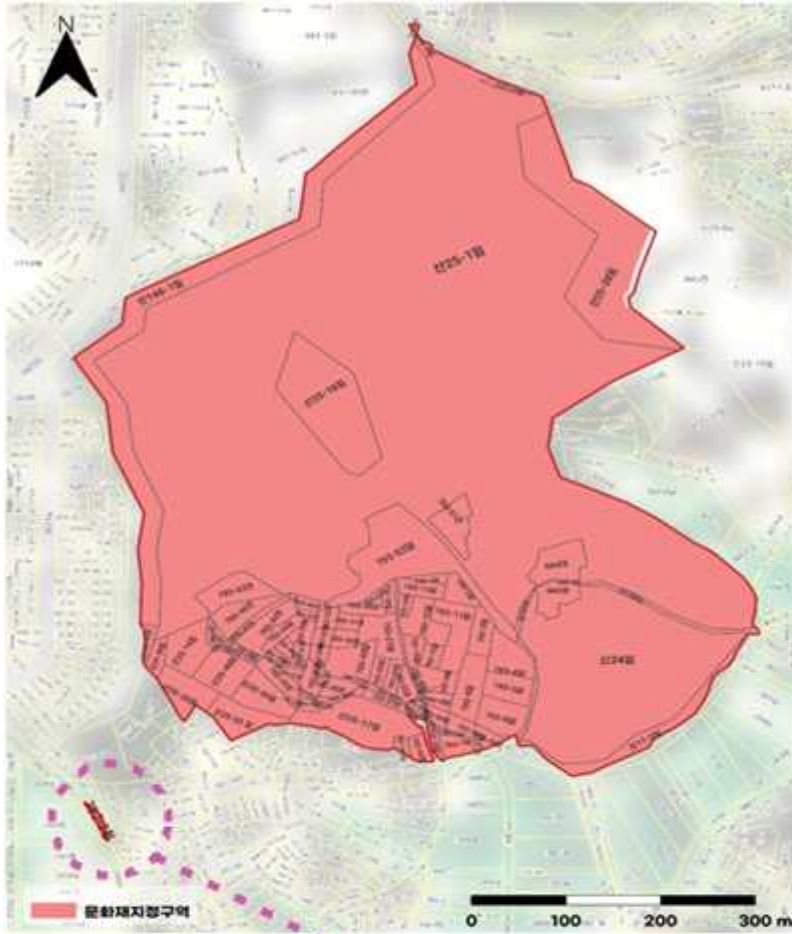


## 6. 해제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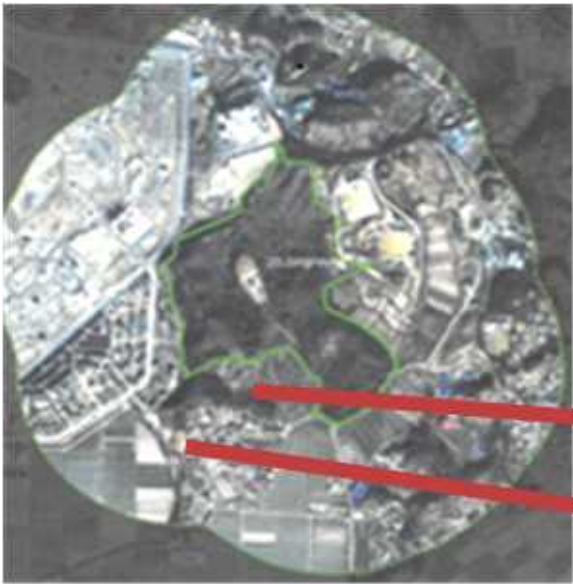
해제면적: 1필지 /231m<sup>2</sup>

(과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231m<sup>2</sup>)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점면적(㎡)	비고	지점이역
단원면 갈현리	664	대	2,340	2,340		1970년 최종 지정
단원면 갈현리	665	전	1,501	1,501		*
단원면 갈현리	신17-2	임	3,868	3,868		*
단원면 갈현리	신24	임	33,719	33,719		*
단원면 갈현리	신25-1	임	287,494	287,494		*
단원면 갈현리	신25-16	임	10,314	10,314		*
단원면 갈현리	신146-1	임	17,036	17,036		*
단원면 갈현리	665-1	도	136	136		1973, 2000년 지정 문화재청고시제2009-26호(관부제14549호, 2000.7.8)
단원면 갈현리	793-51	전	1,944	1,944		*
단원면 갈현리	793-52	임	9,332	9,332		*
단원면 갈현리	793-53	전	2,400	2,400		*
단원면 갈현리	신25-28	임	16,165	16,165		*
단원면 갈현리	신25-43	임	440	440		*
단원면 갈현리	신155	도	1,070	1,070		*
단원면 갈현리	신156	도	1,032	1,032		*
단원면 갈현리	신146-40	도	356	356		*
단원면 갈현리	신146-44	임	413	413		*
단원면 갈현리	신146-49	임	245	245		*
단원면 갈현리	신25-14	임	2,281	2,281		2008년 추가 지정
단원면 갈현리	신25-17	임	5,159	5,159		*
단원면 갈현리	신25-35	임	4,364	4,364		*
단원면 갈현리	신25-36	임	1,091	1,091		*
단원면 갈현리	신25-49	임	281	281		*
단원면 갈현리	신25-50	임	2281	2,281		*
단원면 갈현리	792-1	전	281	281		*
단원면 갈현리	792-7	전	231	231		*
단원면 갈현리	792-14	전	210	210		*
단원면 갈현리	793-63	남	192	192		*
계	104필지		414,427	414,427		



2007년도 파주 장릉 지정 현황



2008년 파주 장릉 추가 지정 현황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과주 장릉 지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연접한 2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계획

- 2023. 8.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예고
- 2023. 9. 문화재구역 해제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및 인근지번 구역 경계에 따라 2구역으로 조정)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2008년 파주 장릉 능제복원 기본계획, 2021년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에 따름.

## 9. 종합의견

- 해제 신청된 필지는 능이 소재하는 파주 장릉 지정구역에서 170여m 이격되어 있으며, 북서측에서 내려오는 임야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능선 끝자락에서 도로로 단절된 곳에 위치하며, 그 반대편은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음.
- 현지조사에서 문화재의 일체성과 장소성을 검토한 바, 지형적으로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으며, 도로, 평탄화된 상황을 볼 때, 일체성과 장소성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또한 알제강점기 지도, 2007년 지정 상황과 2008년 연지 및 우백호 복원 예정지의 추가지정에 따른 필지의 유입 상황을 볼 때,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지정 해제 신청된 필지(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231m<sup>2</sup>)는 문화재에서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2.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4차 소위원회('23.04.26.)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 1975.11.20.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5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3년 소위4차-부결	금회	비고
대지면적	589.00m <sup>2</sup>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49.90m <sup>2</sup> ×2동	49.90m <sup>2</sup> ×1동	
구조	목구조/한식기와잇기	좌동	
최고높이	지상 1층 / 5.51m	지상1층 / 6.01m	
토목	가동터파기(85.30) / 되메우기(36) 수로관 59m,성토 0.5m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04.19./문화재위원 ○○○)
  - 경주 나정 인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재가 직접 인지되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2) 주변 행위허가 허가사항

-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조성(사적분과 3차 소위원회('21.04.28.)/부결)
  - 경주시 탑동 422-8(나정으로부터 228m 이격, 1구역)
  - 건축면적 155.8m<sup>2</sup> / 건물높이 7.15m / 철근콘크리트구조(한식골기와)
- 단독주택 신축(사적분과 3차 소위원회('21.04.28.)/부결)
  - 경주시 탑동 469-1(나정으로부터 85m 이격, 1구역)
  - 건축면적 98.53m<sup>2</sup> / 건물높이 6m / 전통목구조(한식토기와잇기)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3.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감은사지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7차 위원회('22.07.13.)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2년 9차 위원회('22.09.2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3년 6차 위원회('23.06.14.)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감은사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55-1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구길리 산1-1번지, 산1-6번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6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2년 9차		'23년 6차	금회
	가·나·다동	라동	라동	
건축면적	각 42.3㎡ (126.9㎡)	51.3㎡	42.3㎡	42.3㎡ (건물위치 1m 이동)
구조(지붕)	경량철골조(징크판넬)			
높이	4.72m	4.9m	4.72m	좌동
석축	(H=0.9~1.5) L=42m, (H=0.9~2.9) L=137m, (H=2.9) L=86m		(H=0.9~1.5) L=40m, (H=0.9~2.5) L=28m, (H=0.9~2.9) L=79m	좌동
잔디식재	124㎡		-	-
수목식재	대나무 L=205m		대나무 L=105m	대나무 L=102m
콘크리트 도로포장	T=0.2m, 77㎡		T=0.2m, 78㎡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11./문화재위원 ○○○)

- 단독주택 신축하려는 부지는 문화재 1구역에 위치하며, 임야의 경사도가 심하여 대지 조성시 지형의 변화 및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22.07.05./문화재위원 ○○○)

- 감은사지 정면으로 266m 이격된 위치에 단독 주택과 근생 6동을 신축하는 건임.
- 감은사지에서 정면으로 가시되며 2.9m 석축 세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형 훼손이 많고 문화재 경관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4.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7차 위원회('23.07.12.)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 2009.08.24. 지정)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대
-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8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23년 7차-부결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웬스형 목책조명 설치(39개소) 간격 약 6m</li> <li>- 크기 및 채원 : 0.1×0.4m / LED 10W(3000K)</li> <li>- 조명선로 매설(L=289m, 0.6×0.4×0.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조명 철거(산책로 내측 비컨등 21개소 철거) / 0.15×0.3m</li> <li>- 신규 조명 설치(LED 블라드 조명 21개소) / 0.15×0.9m * 크기 및 채원 : 0.15×0.9m / LED 15W(3000K)</li> <li>- 조명선로 매설(L=125m, 0.6×0.4×0.6m)</li> <li>- 신규 분전함 설치 1개소(0.4×0.5×0.2m)</li> <li>- 수목조명 3개소(개소당 2개) * 크기 및 채원 0.2×0.2×0.1m / LED 12W(3000K)</li> <li>- 진흙청 주변 LED 지중조명 설치 1개소(8개) * 크기 및 채원: 0.28×0.28×0.25m / LED 20W(3,000K/방수형)</li> </ul>

##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23.07.27./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난간은 수영성 성곽의 경관을 저해하므로 설치하지 말고, 야간 안전·주의·안내판 보강 어두운 곳의 조명 보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5.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공사를 변경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차 위원회('17.01.11.) 조건부가결
  - '22년 3차 소위원회('22.05.25.)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사업추진 허가기간(2017.1.16.~2021.12.12.) 만료 및 노선구간 일부 변경에 따라 현상변경 재신청
  - '22년 4차 소위원회('22.06.22.) 원안가결
  - '23년 3차 소위원회('23.05.24.) 원안가결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 2009.08.24. 지정)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931
- (3) 신청내용<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소성리{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2m 이격 /1구역(개별검토), 6구역(개별법)}
  - 사업내용

구분	'22년 4차 소위-가결	'23년 3차 소위-가결 (변경 1차)	금회 (변경 2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92km, 신설 2.06km)</li> <li>▷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1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92km, 신설 2.06km)</li> <li>▷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13m)</li> <li>▷ 공법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 : 연장 3.98km (기존도로 덧씌우기 1.92km, 신설 2.06km)</li> <li>▷ 노선계획 : 폭 9.5m, 2차로, 횡단육교 1개소(13m)</li> <li>▷ 공법변경</li> </ul>

구분	'22년 4차 소위-가결	'23년 3차 소위-가결 (변경 1차)	금회 (변경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 : Sta.2-304~515</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보강토 옹벽(1,925 m<sup>2</sup>, H=14.25m)</li> <li>· (변경) 흙쌓기 8,640m<sup>3</sup></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 : Sta.2-304~515</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보강토 옹벽(1,925 m<sup>2</sup>, H=14.25m)</li> <li>· (변경) 흙쌓기 8,640m<sup>3</sup></li> </ul> </li> <li>▷ 부체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 : Sta.2+940~3+040</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존 지방도 접속도로</li> <li>· (변경) 접속도로 외부 부체도로 추가(A=1,080m<sup>2</sup>, L=121.6m, W=3m)</li> </ul> </li> </ul> </li> </ul>
이격 거리	240m	232m	232m 단, 금회 공사구간 이격거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358m</li> <li>- (변경) 343m</li> </ul>
구역	6구역(89,871m <sup>2</sup> )	1구역(812m <sup>2</sup> ), 6구역(89,871m <sup>2</sup> )	1구역(812m <sup>2</sup> ), 6구역(90,951m <sup>2</sup> ) 증1,080m <sup>2</sup>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6.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산 해미읍성 내 호서좌영루 해체보수를 진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실시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선요구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해미읍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번지
- (3) 신청내용<호서좌영루 해체보수>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동헌문루 도리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 기둥교체 4개소(교체부재 고색 단청)
    - 번와보수 : 기와교체율 60%
    - \* 전면기둥 3개소 및 우측기둥 1개소 부식, 지붕기와 노후에 따름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7.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원 만복사지 내외 경사면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만복사지(사적 / 1991.03.30.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사면 정비 및 도로 확장>
  - 위치 :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번지 등(문화재구역, 2구역)
  - 사업내용
    - 1) (북쪽 경사면 정비) 거친돌 1단 석축 설치, 연장 46.7m, 높이 1.4m, 잔디식재 91.1m<sup>2</sup>
      - ※ 문화재지정구역과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에 걸쳐있으며, 일부가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됨.
    - 2) (동쪽 도로 확장) 연장 122m, 폭 1~3m, 판축다짐 280.98m<sup>2</sup>, 잔디 식재 410.18m<sup>2</sup>
      - ※ 현재 도로 너비 : 4~6m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2명 / 제척 1명

## 8.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령 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주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번지 외 29필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3m 이격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19㎡
    - 건축(연)면적 : 99.5㎡
    - 건축규모/ 최고높이 : 지상1층 1동/ 4.55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9.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 (3) 신청내용<건물 증축 및 외부환경 개선 등>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사항)
      - 소월로변 진입로 화단 교목과 관목 추가 식재,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 진입로 확장
      - 소월로변(건물 2~3층) 옥외주차장과 필로티 공간을 유리입면 마감하여 업무시설로 증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사항)
      - 주차램프 상부(옥상부) 휴게공간, 화계 조성, 단차를 이용한 보행데크 설치
      - 층별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구분	기준	변경	비고
층수(최고높이)	84.7m	동일	지하4층/지상20층
총 연면적	57,574.54m <sup>2</sup>	58,649.06m <sup>2</sup>	증 1,074.52m <sup>2</sup> (증축 면적+재산정 바닥면적)



지하1층	4,607.28㎡	4,607.28㎡	주차장→업무시설 변경(40.26㎡) 공개공지→업무공간 사용(271.83㎡)
1층	4,103.24㎡	4,439.92㎡	주차장→업무시설 변경(38.59㎡)
2층	3,135.45㎡	3,882.28㎡	주차장→업무시설 변경(734.22㎡)
3층	3,054.42㎡	3,204.97㎡	주차장→업무시설 변경(773.29㎡)
5층	1,824.57㎡	2,062.50㎡	업무시설 면적증가(237.93㎡)

라. 참고사항(2021년도 사적분과 7차, 9차 심의/'21.07.14, '21.09.08.)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기존 주차장 진입 브릿지를 철거한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증축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층수(최고높이)	지하4층/지상20층(84.7m)	동일	
증축부 높이	27.575m	31.375m	3.8m 증가
2층	3,135.45㎡	3,130.41㎡	감 5.04㎡
3층	3,054.42㎡	3,083.65㎡	증 29.23㎡
4층	2,416.18㎡	2,470.14㎡	증 53.96㎡
5층	1,824.57㎡	2,235.24㎡	증 410.67㎡
6층	1,839.72㎡	2,219.78㎡	증 380.06㎡
7층	1,839.72㎡	2,015.80㎡	증 176.08㎡
계	57,574.54㎡	58,619.51㎡	증 1,044.97㎡

○ 심의결과

- 7차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 9차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차도와 인도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현지조사자 의견('21.07.19.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한양도성 일원의 남산SK빌딩 연접지에 높이 31.375m의 근생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성부에서 보이는 높이가 높지 않고 답을 구성하고 있어 위압감은 없음.
-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 건물의 색상을 고려하여 채도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는 바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10. 제2로 직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성남시 등 12개 시·군 소재 사적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접수 의견

문화재명	제출자	주요 의견	비고
단양 소이산 봉수	단양군	·봉수 유적 아래 마을은 급경사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절·성토, 법면, 석축, 옹벽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공통사항 높이 3m 기준 완화 또는 제외 요청 ·개별심의 지역 축소(100m → 50m)	
	서○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취소, 100m 이내 범위로 설정 ·마을 발전을 위해 지원 요구	
	윤○호	·500m 거리 말고 보호구역 내로 한정 ·마을 발전 기금 지원	
	황○숙 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m만 보존, 아니면 보상을 하고 지정해야	
	오○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 이내로	
	권○국	·봉산마을에는 문화재 자체를 무조건 반대	
	유○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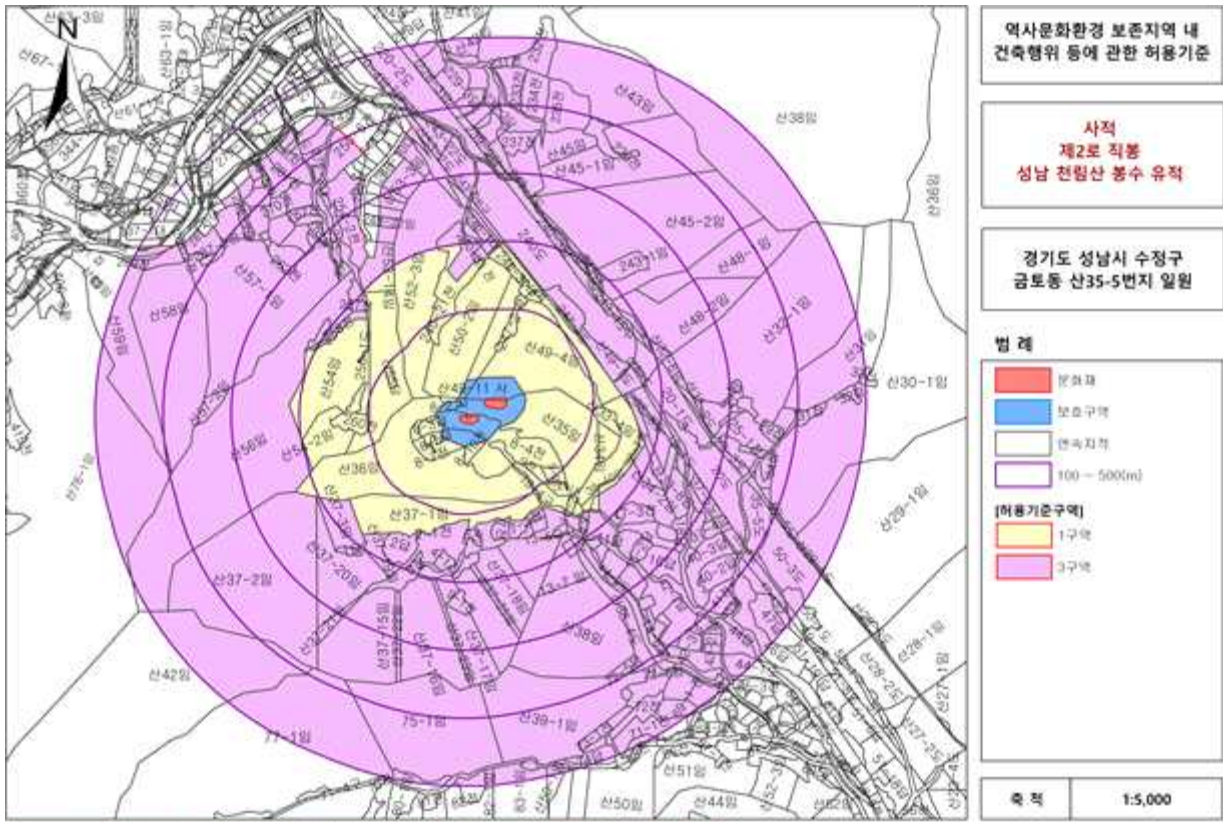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2로 직봉(사적 / 2023.01.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① 성남 천립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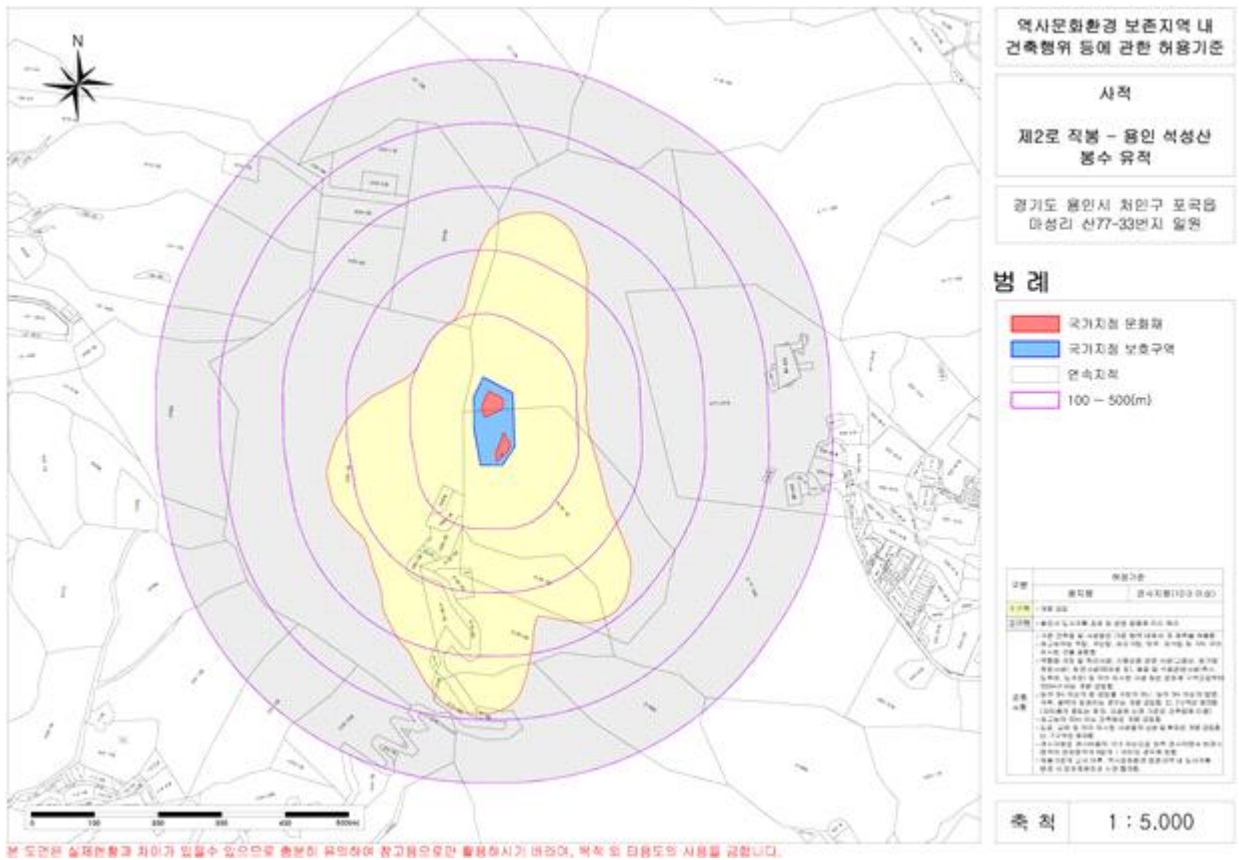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충청남도청과 고대건축물·유산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도를 위해 실사 측량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복제, 배포, 수정, 변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②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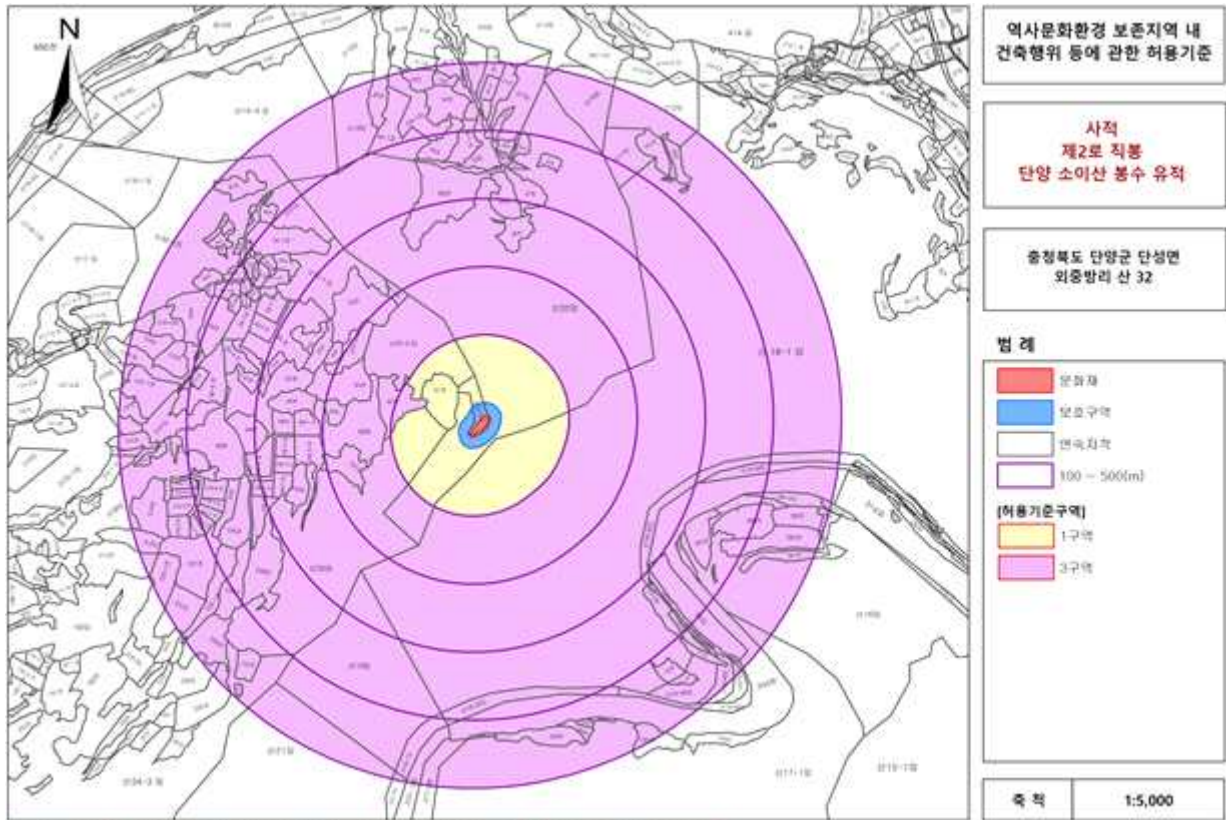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 ③ 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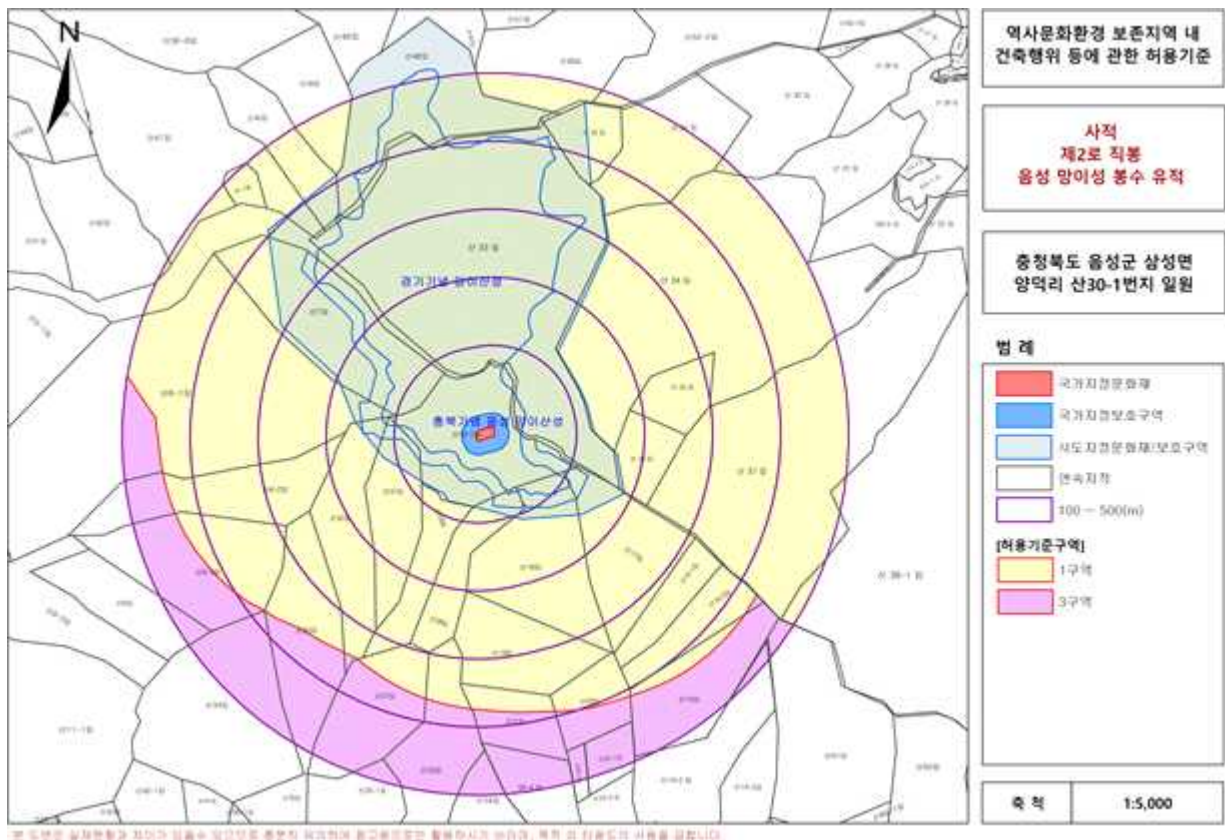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충청문화유산연구원(충청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충청문화유산연구원(충청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 ④ 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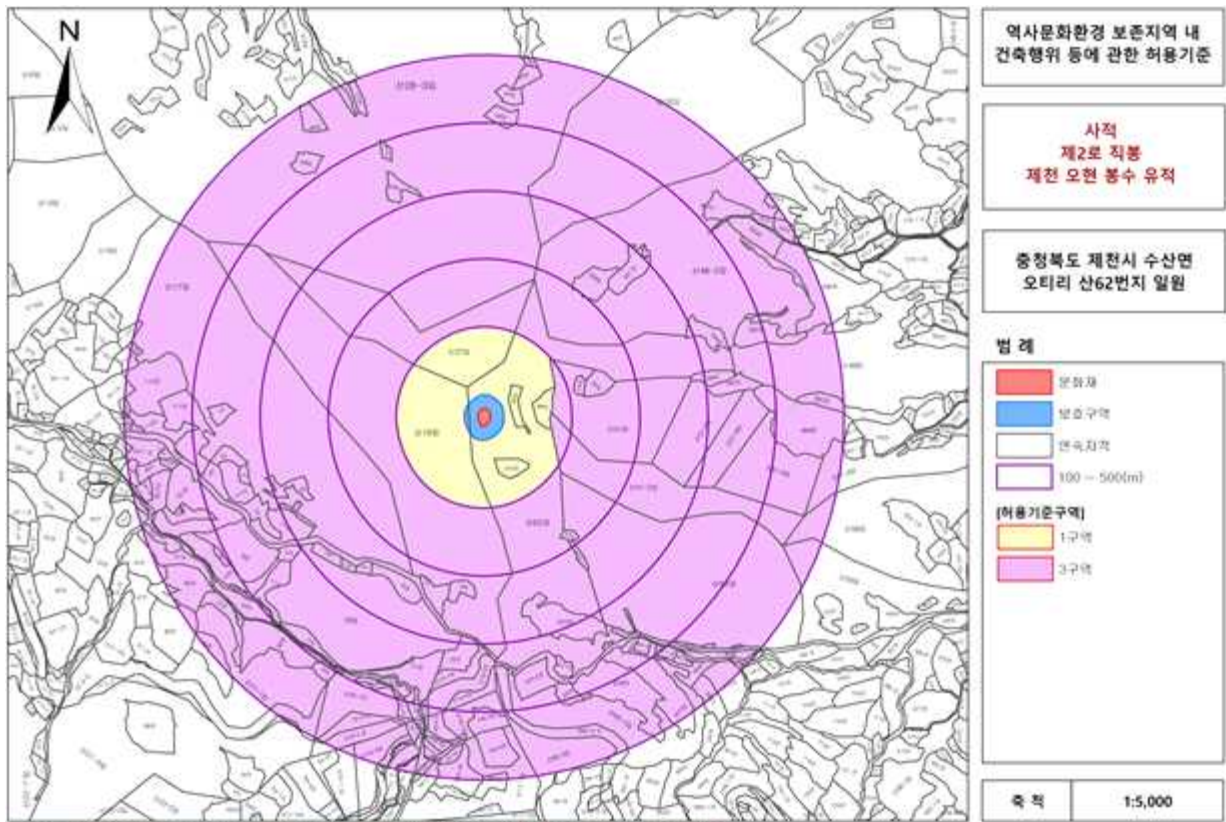
#### ○ 허용기준 도면



⑤ 제천 오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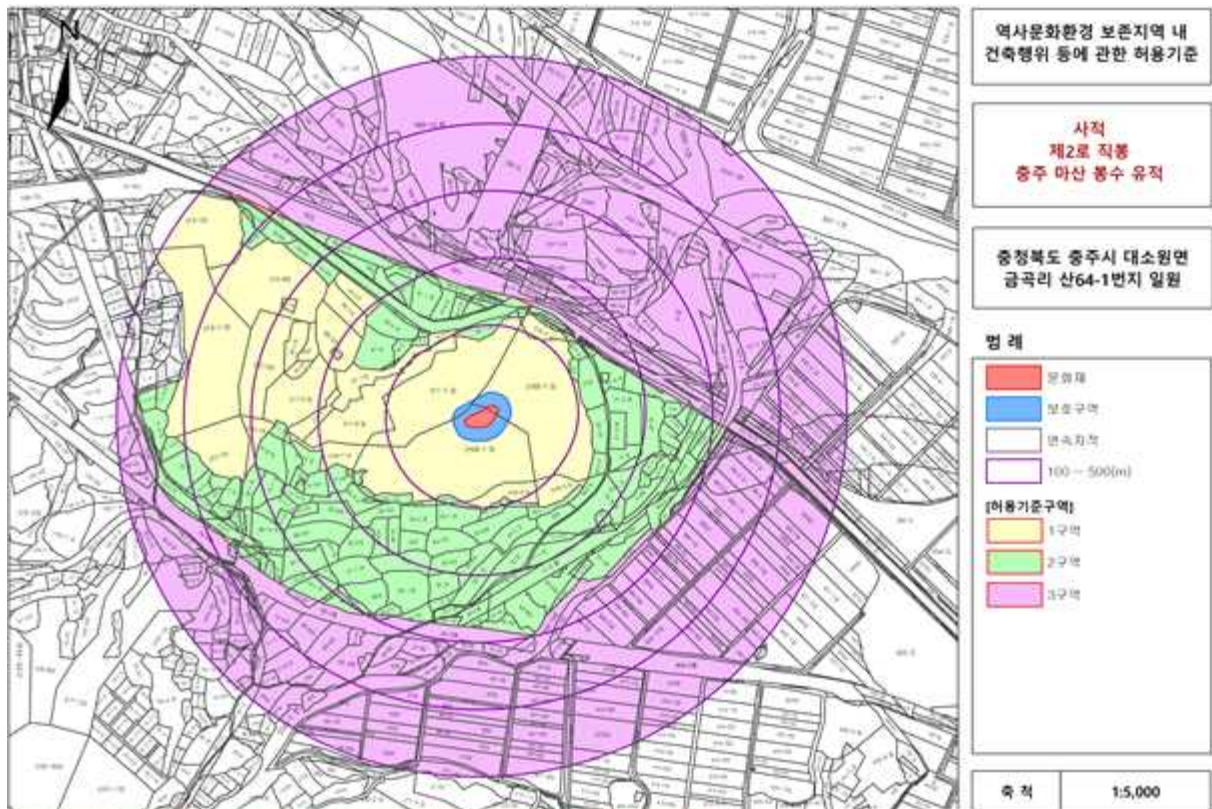




⑥ 충주 마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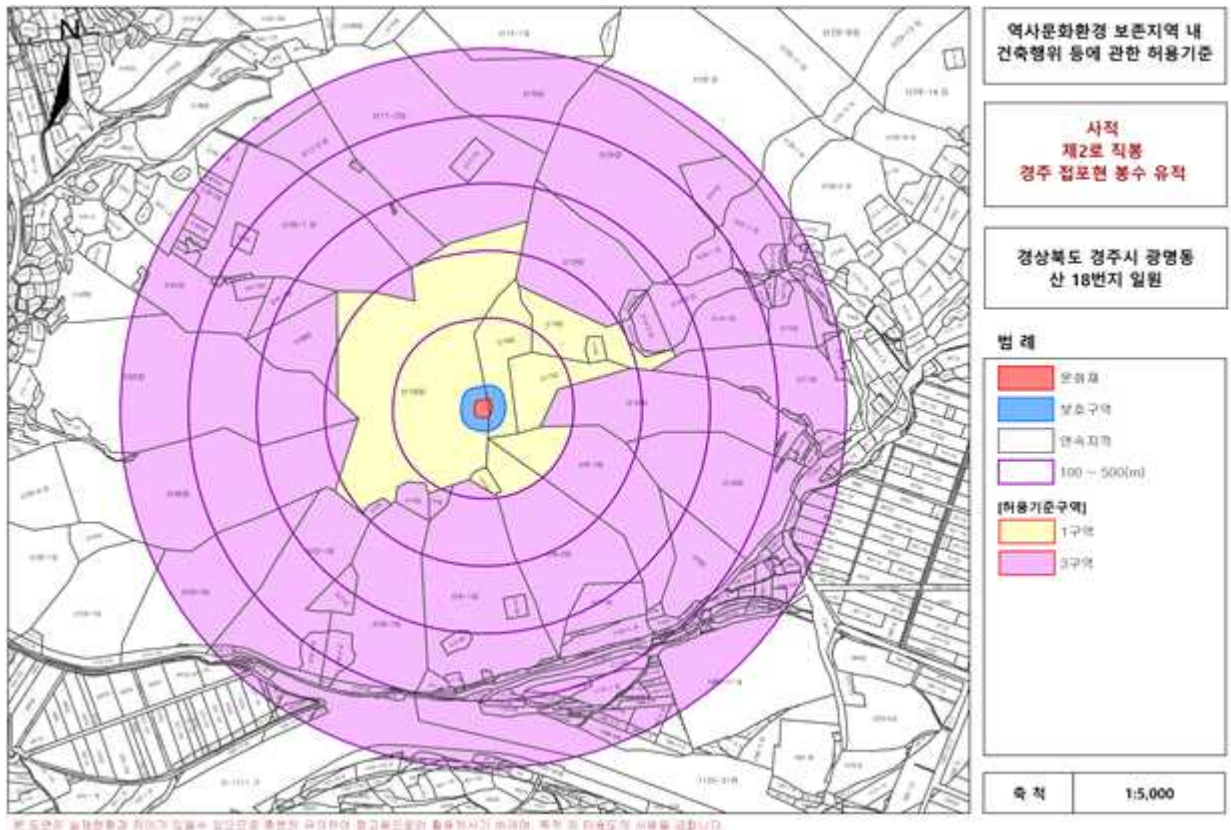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체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행의 유적지대 접근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면도의 이용을 금합니다.

### ⑦ 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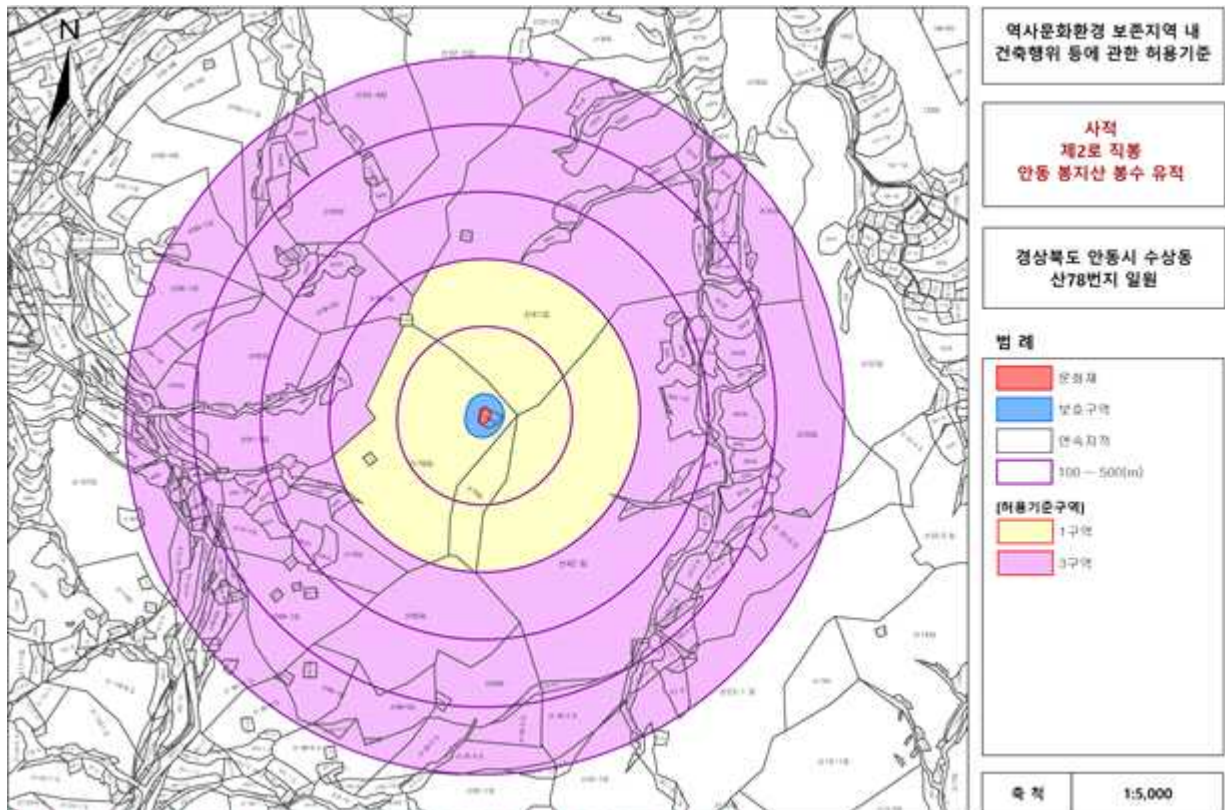


본 도면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⑧ 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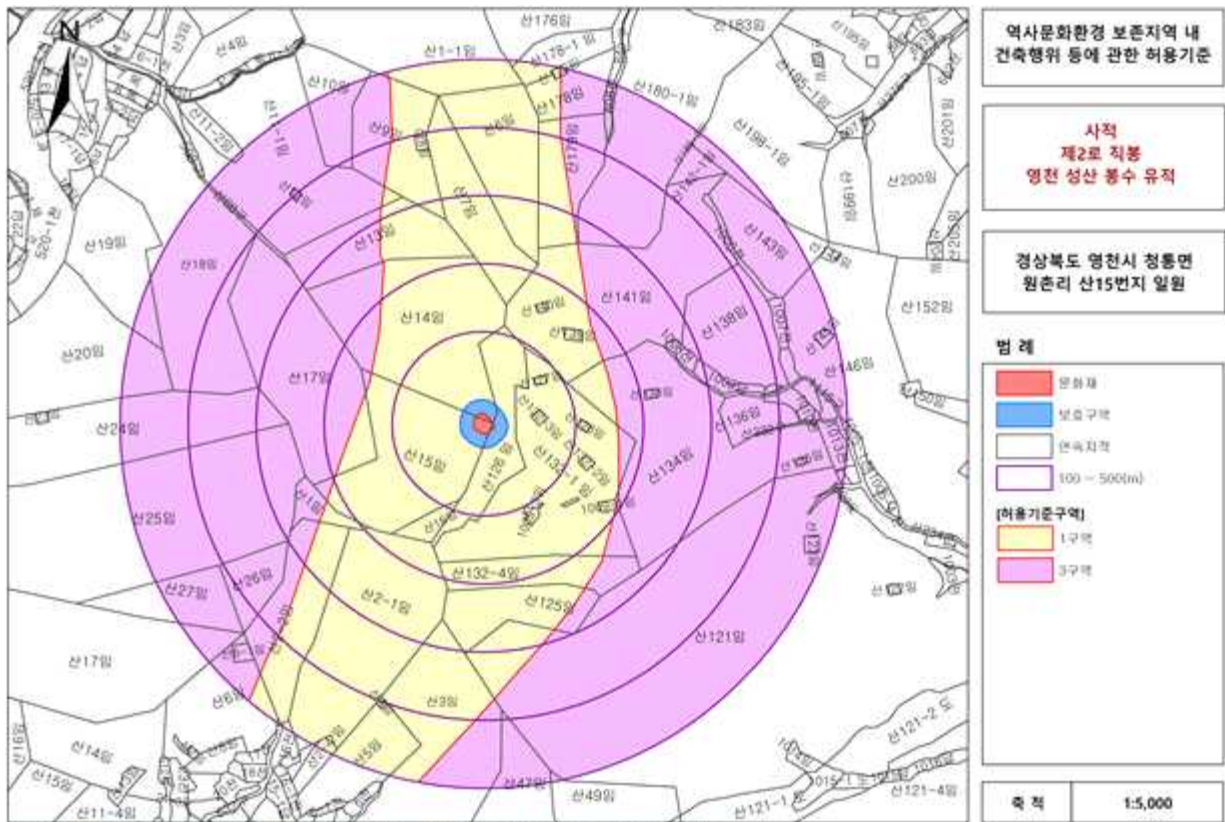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⑨ 영천 성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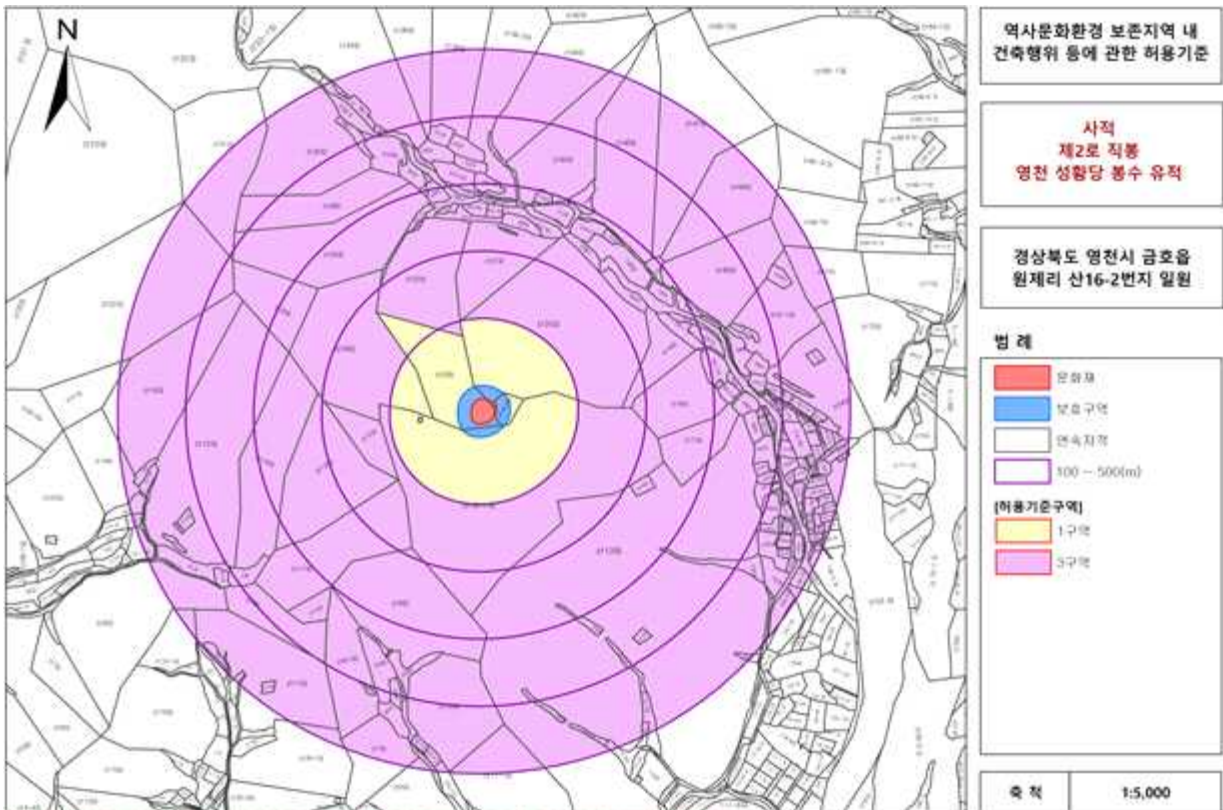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⑩ 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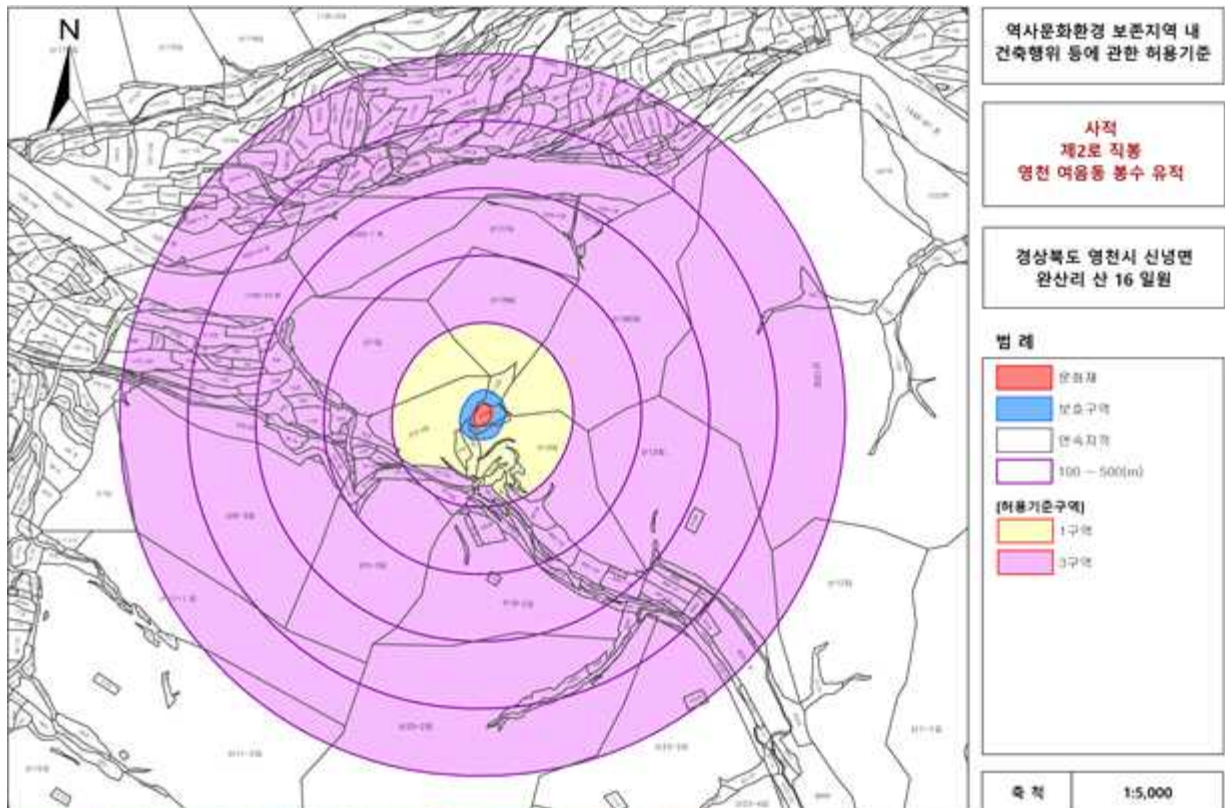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⑪ 영천 여음동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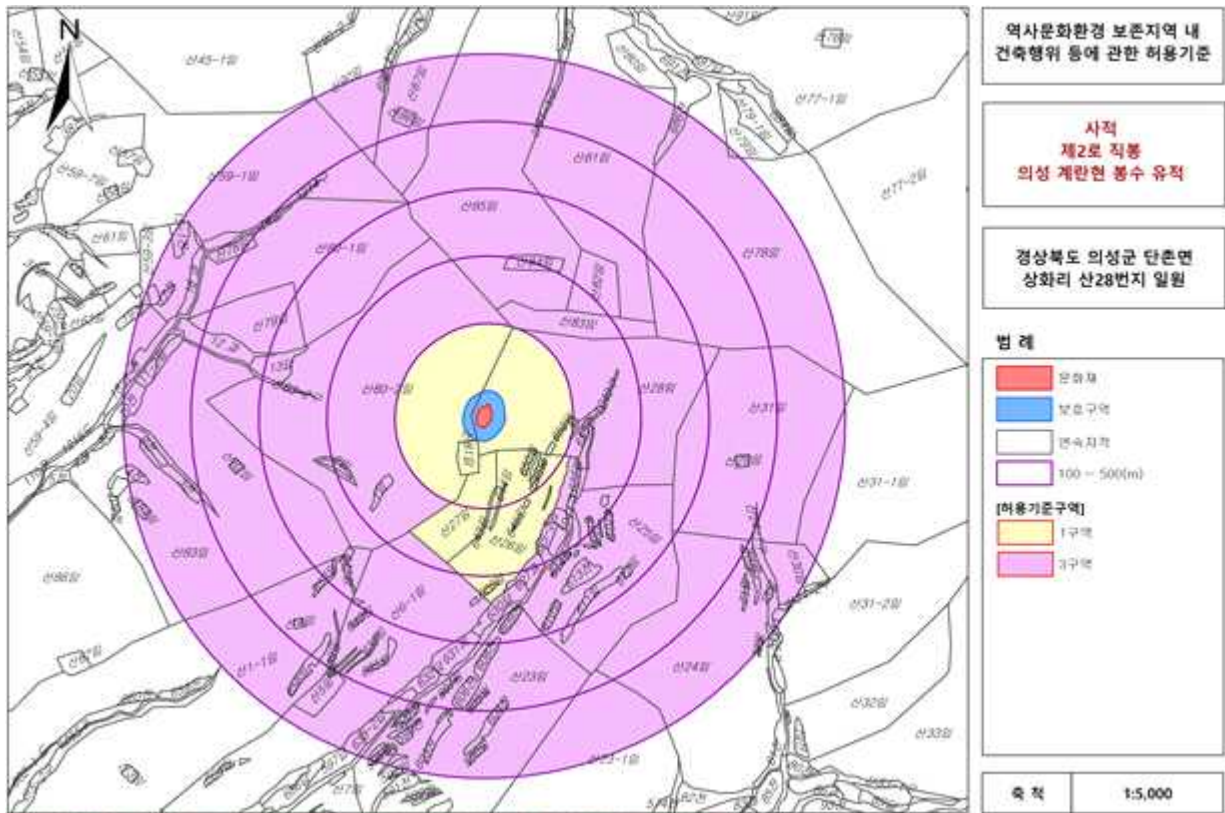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반전 유무의에 참고하여야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사용도장 사유를 금합니다.

⑫ 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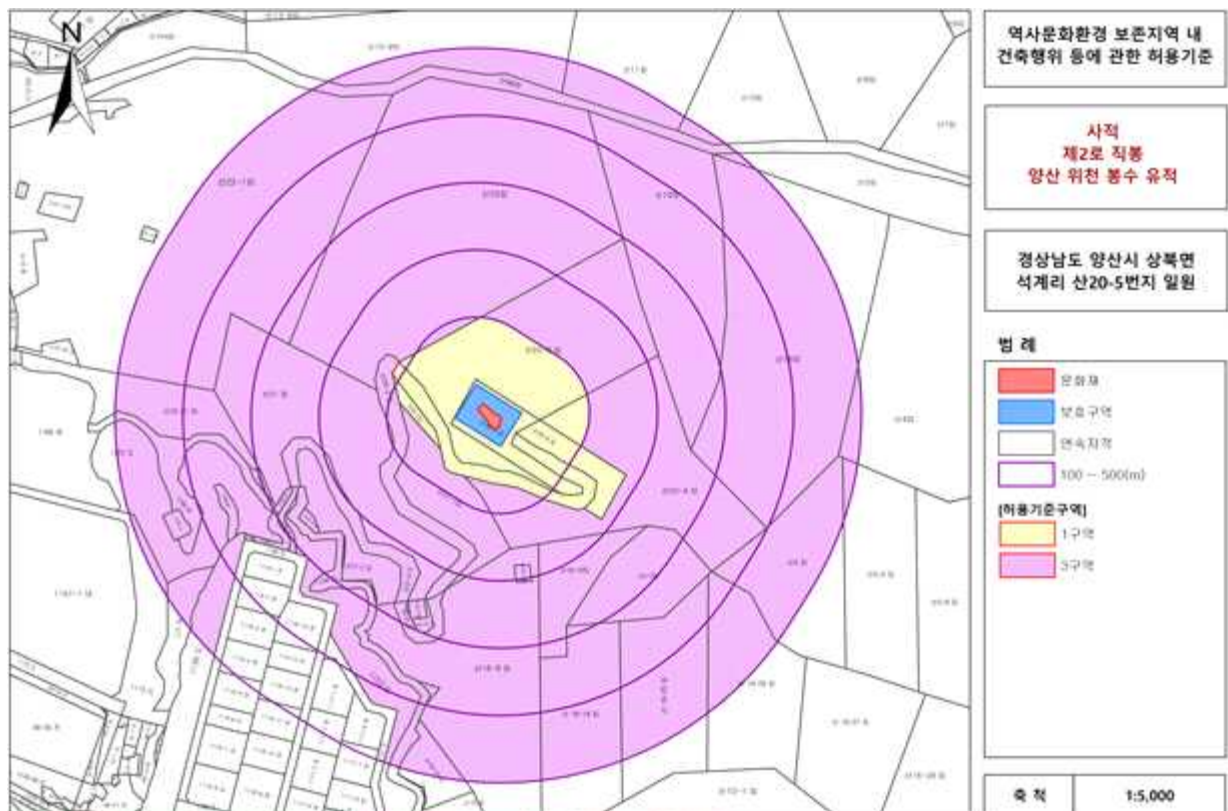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



⑬ 양산 위천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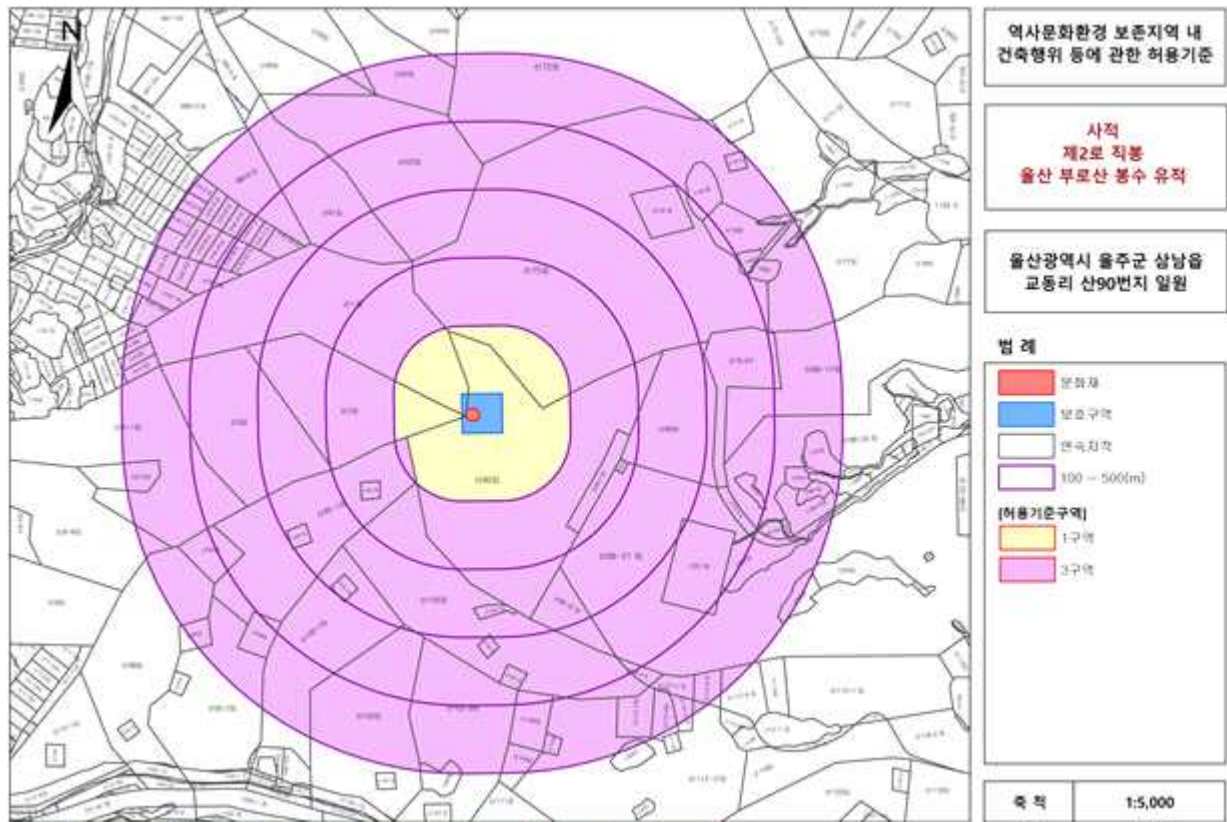




⑭ 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도면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11. 수원 화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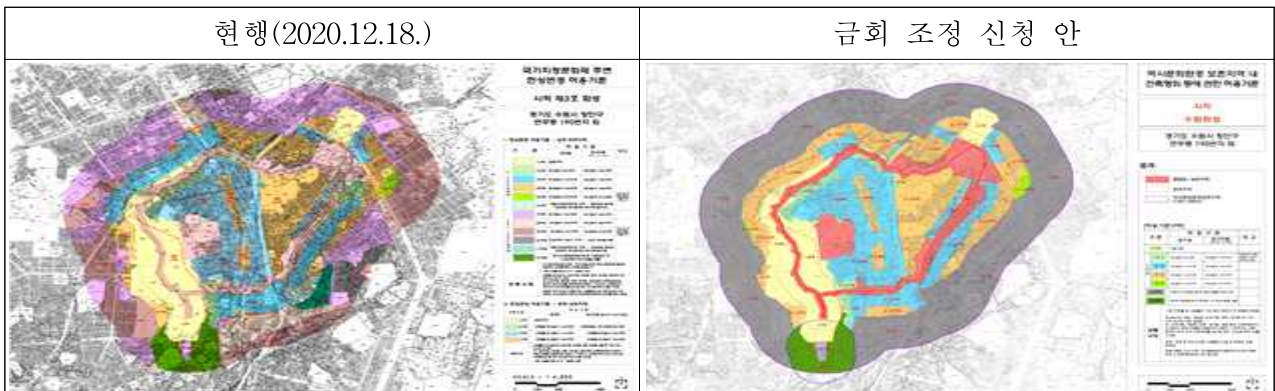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수원 화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 확대('21.01.20.) 등에 따라 변경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1963.01.21. 지정),  
수원 화성행궁(사적/2007.06.08. 지정),  
수원 화서문(보물/1964.09.03. 지정),  
수원 팔달문(보물/1964.09.03. 지정),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보물/2019.08.29. 지정),  
수원 방화수류정(보물/2011.03.03.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 성곽 내부지역			- 성 내·외 공통			
구분	현행(2020.12.18. 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성곽내부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4 구역	○ 최고높이 47m 이하	○ 최고높이 5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성곽 외부지역						
0-200m 이내	1구역	○ 보존구역		공통 사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1m 이하			
	6구역	○ 개별현상변경신청구역-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m - 500 m 이내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1m 이하	
	10구역	○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 개별현상변경신청구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li> <li>○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겹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li> <li>○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li> </ul>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2.0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수원 화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수원 화성의 주요 문지에 해당하는 장안문과 팔달문 밖 200m 범위에서는 진입 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계단형태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위압감이 적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나, 수원 화성 주변의 초 도심화 된 곳과 비교하면 장안문 및 팔달문 주변 개발의 정도가 비교적 적고, 문 주변의 기존 개발 상황이 허용기준에 비해 한 단계 상향된 상황으로 건축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조정 신청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화서문 밖은 성벽과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며, 개발의 정도 및 성벽과의 높이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조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1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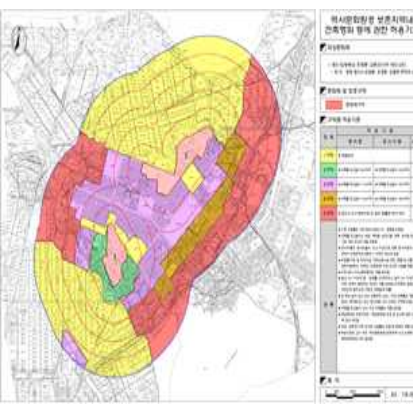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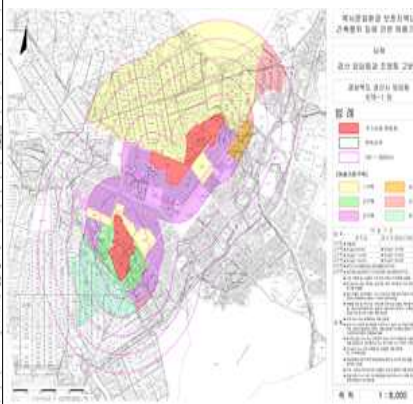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1차 위원회('23.11.08.) 보류 :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현행(2020.12.18.)고시	신청 1안	신청 2안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4.03. 기고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신설>		○ <u>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처리</u>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u>건축물</u> 및 시설물은 <u>기존</u>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관련 시설(<u>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u>), <u>발전 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u>검토</u>함.</li> <li>○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u>검토</u>함.</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u>검토</u>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u>검토</u>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상인 구역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u>검토함(단, 5구역에 한함)</u></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u>검토</u>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라. 참고사항(추진경과)**

- 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위 허가 : '19년 7차 위원회('19.07.10.) 조건부 가결
  - (허가조건) 최종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 시발굴조사를 추진할 것
- 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최종계획안 문화재위원회 보고 : '19년 12차('19.12.11.)
  - 구역별 편입 면적 \*변경없음

구분	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면적(m <sup>2</sup> )	448,532	334,185	16,290	31,038	-	67,019
구성비(%)	100.0	74.5	3.6	6.9	-	15.0

- 토지이용계획

구분	문화재위원회 보고 최종계획안			
	지구 전체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m <sup>2</sup> )	비율	면적(m <sup>2</sup> )	비율
계	1,674,027	100.0	448,532	100.0
주택건설용지	513,094	30.7	65,186	14.5
공동주택	83,527	5.0	-	-
단독주택	407,655	24.4	57,529	12.8
근린생활시설	21,912	1.3	7,657	1.7
공공시설용지	1,160,933	69.3	383,347	85.5
상업·업무	297,278	17.8	84,134	18.8
일반상업	46,540	2.8	-	-
업무시설	44,991	2.7	18,506	4.1
유통시설	21,661	1.3	-	-
복합용지(주상복합)	41,363	2.5	-	-
공공청사	20,899	1.2	7,078	1.6
도시지원시설	121,824	7.3	58,550	13.1
공원·녹지	365,654	22.4	125,197	27.9
공원	243,427	14.5	102,945	23.0
녹지	46,993	2.8	6,581	1.5
광장	9,060	0.5	15	0.0
공공공지	9,069	0.5	-	-
보행자도로	24,870	1.5	5,991	1.3
유수지·구거	41,295	2.5	9,665	2.2

구분	문화재위원회 보고 최종계획안			
	지구 전체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m <sup>2</sup> )	비율	면적(m <sup>2</sup> )	비율
교육시설용지	71,049	4.2	26,972	6.0
유치원	5,343	0.3	2,705	0.6
학교	71,049	3.9	24,267	5.4
도로	367,879	22.0	124,451	27.7
보행자도로	-	-	-	-
주차장	26,410	1.6	4,175	0.9
기타시설용지	23,603	1.4	18,418	4.1
종교용지	3,096	0.2	-	-
주유소	2,095	0.1	-	-
체육시설	10,151	0.6	10,151	2.3
문화시설	8,261	0.5	8,267	1.8

○ 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9호('20.01.03.)

\* 이 고시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에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음.

○ 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위 허가 변경('22.08.02.)

- (변경사유) 면적 오류 정정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위원회 보고 최종계획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변경허가안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448,532	100.0	448,527	100.0
주택건설용지	65,186	14.5	65,186	14.5
공동주택	-	-	-	-
단독주택	57,529	12.8	57,529	12.8
근린생활시설	7,657	1.7	7,657	1.7
공공시설용지	383,347	85.5	383,341	85.5
상업·업무	84,134	18.8	84,134	18.8
일반상업	-	-	-	-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위원회 보고 최종계획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변경허가안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업무시설	18,506	4.1	24,978	5.6
유통시설	-	-	-	-
복합용지(주상복합)	-	-	-	-
공공청사	7,078	1.6	7,078	1.6
도시지원시설	58,550	13.1	52,078	11.6
공원·녹지	125,197	27.9	125,197	27.9
공원	102,945	23.0	102,945	23.0
녹지	6,581	1.5	6,581	1.5
광장	15	0.0	15	0.0
공공공지	-	-	-	-
보행자도로	5,991	1.3	5,991	1.3
유수지·구거	9,665	2.2	9,665	2.2
교육시설용지	26,972	6.0	26,972	6.0
유치원	2,705	0.6	2,705	0.6
학교	24,267	5.4	24,267	5.4
도로	124,451	27.7	124,451	27.7
보행자도로	-	-	-	-
주차장	4,175	0.9	4,175	0.9
기타시설용지	18,418	4.1	18,418	4.1
종교용지	-	-	-	-
주유소	-	-	-	-
체육시설	10,151	2.3	10,151	2.3
문화시설	<b>8,267</b>	1.8	<b>8,261</b>	1.8

○ 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6호('22.12.27.)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허용기준 재조정 2안으로 하며, 구역,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13.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내 가설건축물(농막)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154호 / 1967.03.0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15(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8m<sup>2</sup>(3m×6m)
    - 건물높이 : 3.2m
    - 부대시설 : 펜스설치(H=1.2m, L=139.0m), 지하수 인입, 전기가설
- (4) 신청인 의견
  - 농사를 위한 창고 설치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1.17./문화재위원 ○○○)
  - 옥산서원 문화재구역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어 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적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14.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4차 소위원회('21.04.30.)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 1975.11.20.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42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1년 소위4차-부결	금 회	비고
대지면적	792.00m <sup>2</sup>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155.80m <sup>2</sup> / 136.80m <sup>2</sup>	155.20m <sup>2</sup> / 133.92m <sup>2</sup>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맞배지붕 /한식골기와잇기	철근콘크리트구조/팔작지붕 /한식골기와잇기	
최고높이	지상1층, 7.15m	지상1층, 7.171m	
토목	Con'c 포장 : T=20cm, 수량=654.0m <sup>3</sup> 우수받이 : 510×410×940, 수량=6개소 PE관 : D300mm, 수량=62m	좌동	

###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는 경주 나정 주변 북편에 위치한 농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1.17./문화재위원 ○○○)

- 탐동에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재에서 보여지는 경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21.04.15./문화재위원 ○○○)

- 나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다만, 이 인근에 과거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았음. 다른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곳에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주변 행위허가 허가사항

- 단독주택 신축(사적분과 3차 소위원회 '21.04.28. 부결)
  - 경주시 탐동 469-1(나정으로부터 85m 이격/1구역)
  - 건축면적 98.53㎡ / 건물높이 6m / 전통목구조(한식토기와잇기)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15.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 등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파사성」 내 경관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여주 파사성 내 탐방로 주변 나대지에 관목 및 초화류 등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및 토사유실 방지와 파사산 정상에 정상석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파사성(사적 / 1977.07.21.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 (3) 신청내용<경관개선 등>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파사성 탐방로 주변 나대지 및 파사산 정상
    - 사업면적 : 1,552m<sup>2</sup>
    - 식재수종(수량) : 개나리(800주), 산철쭉(8,053주), 백철쭉(1,433주), 회양목(330주), 조팝나무(366주), 구절초(3,580본)
    - 시설물 : 정상석(화강석, 400×1,200×150mm)
- (4) 신청인 의견
  - 여주 파사성을 찾는 관람객의 사계절 볼거리 제공 및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성곽 탐방로 주변에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람객들의 포토존 마련을 위해 정상석을 설치하고자 함

### 라.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 16.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덕포진(사적 / 1987.09.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5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8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 검토)}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900㎡
- 건축면적/ 연면적 : 18㎡/ 18㎡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 규모/ 높이 : 지상1층/ 2.95m

(4) 신청인 의견

- 농사를 위한 기계 및 도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농막 필요. 사적지에서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예정

### 라. 참고사항

- '23년 3차 위원회('23.03.08.)에서 유사사례(김포 덕포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2동 설치) 조건부 허가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157-11외 1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검토)} \* '다'포대 연접구역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2동 설치(지상1층/2.95m)
- 허가조건
  - 문화재에서 인지되는 면에 차폐식재할 것(보완도서 제출)
  - 3년 경과 후 재심의 받을 것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17.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성 마하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1동) 및 다세대주택(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마하리 고분군(사적 / 2003.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241 등 5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2구역)
  - 사업내용

구분	단독주택(1동/1세대)	다세대주택(2동/12세대)
대지면적	402㎡	1,988㎡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면적/연면적	86.89㎡ / 165.64㎡	165.10㎡ / 990.60㎡
층수 및 최고높이	2층(지하1층) / 8.6m	3층 / 10.9m
L형 용벽	H=1.5~3m, L=33.2m	H=1.5m, L=18m
특이사항	엘레베이터 설치	

### (4) 신청인 의견

- 봉담읍 마하리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 2~3층 건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높이가 증가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1.29./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화성 마하리 고분군과 연결한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인 곳에 단독주택을 지하의 평균높이를 합하여 약 10m정도의 높이(평지붕), 다세대주택은 지하없이 약 11m정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의 개발 상황이 약 7m정도이며 평지로서, 문화재 연결하는 상황 및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역사문화환경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18.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고려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고려궁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3년 1차 위원회('23.01.1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3년 8차 위원회('23.08.09.)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고려궁지(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5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m 이격/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증축 전	증축 후		
		'23년 1차-부결	'23년 8차-부결	금회
신청면적	110㎡	좌동	좌동	좌동
건축면적	39.10㎡	57.42㎡	60.51㎡	좌동
연면적	39.10㎡	107.54㎡	122.95㎡	좌동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지상 2층(1동)	지상 2층 1동 (지하 1층 포함)	좌동
최고높이	3.954m(평지붕) - 계단 1.4m 미포 함의 경우 3.4m	8.457m(평지붕) - 난간 1.3m 포함 - 계단 1.4m 미포 함의 경우 8m	6.85m(평지붕) - 난간 제외 - 계단 1.4m 미포함	6.5m(평지붕) - 난간 제외 - 계단 1.4m 미포함
건축구조	연와조	연와조, 일반철골조	연와조,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1.29./문화재위원 ○○○)

- 강화 고려궁지에 인접한 2구역에서 행해지는 현상변경행위이나 사업부지에 연접한 구역에 이미 더 높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증축(총 높이 6.5m)을 하더라도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축물보다 오히려 높이가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12명

## 19.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사업내용<강화여고 기숙사동 신축 및 교사동 증축 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6번지 등 19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 /1, 3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0,416㎡
    - 건축면적/ 연면적 : 기존(2,919.76㎡/ 8,612.96㎡)→신축 및 증축후{5,134.9㎡ (증 2,215.14㎡=기숙사동 2,070.24㎡+교사동 144.9㎡)/ 16,617.91㎡(증 8,004.95㎡=기숙사동 7,570.25㎡+교사동 434.7㎡)}
    - 건축규모
      - 기숙사동 : (기존-철거)지하 1층, 지상 3층→(신축)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기존-철거)13.6m→(신축)19.8m
      - 교사동(수평증축) : 지상 4층/ 최고높이 16.0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 부대시설 : 주차장(2,027.53㎡), 휴게공간(654.98㎡), 소운동장(723.41㎡)

- 토목공사

- 토 공 : 절토(H=6.3m) 3,629.1m<sup>3</sup>, 성토(H=4.75m) 2,533m<sup>3</sup>
- 구조물공 : L형 옹벽(H=1.2~6m, L=422.5m), 역L형 옹벽(H=1.2~6m, L=65.8m)
- 우 수 공 : 원형맨홀(D900) 6개, 집수정(700×700) 4개,  
측구수로관(300×300) L=312.1m, U형플룸관(B300) L=81m,  
우수관(D300) L=176.6m, 우수연결관(D200) L=20m
- 오 수 공 : 원형맨홀(D900) 4개, 우수관(D200) L=77.7m
- 포 장 공 : 아스콘 포장(T=45cm) A=2,163.1m<sup>2</sup>, 인조화강블록포장(T=30cm)  
A=1,536.8m<sup>2</sup>, 마사토 포설 및 다짐(T=20cm) A=692.3m<sup>2</sup>

(4) 신청인 의견

- 현재 강화여고 학생들은 노후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기숙사와 교사동과의 거리가 멀어 치안과 범죄에 취약하고 대다수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함.
- 이에, 기숙사를 별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원거리 학생들에게 학업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1.29./문화재위원 ○○○)

- 강화산성 성벽의 남쪽에 인접한 부지에 13.6m 되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19.8m의 기숙사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전체는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 3구역에 해당하나 건축물 신축과 증축 지점은 3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 현 사업부지 북쪽으로 더 높은 위치에 양궁장 건축물이 있고 기존에 13.6m 건축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입지상 본 사업으로 인해 경관상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 신축 기숙사동 전면으로 높은 옹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경관상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부지 표고를 낮추어 기숙사동 전면 옹벽 높이와 건축물 표고가 낮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교사동 증축은 현 교사동과 동일한 높이 수준으로 수평 증축하는 사업이므로 경관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20. 김포 덕포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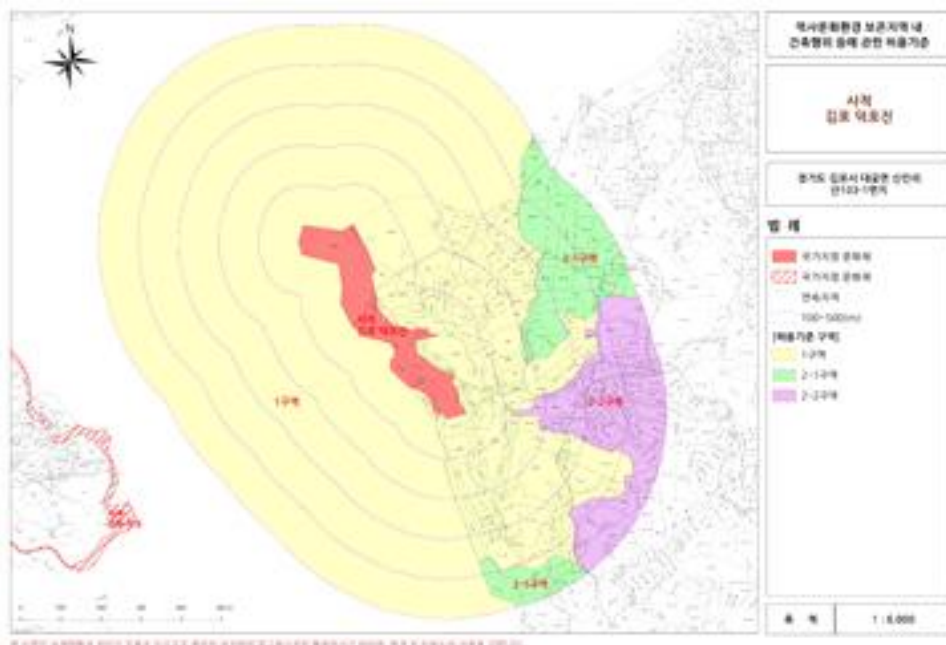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덕포진」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포 덕포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0.24.~11.12.(20일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덕포진(사적 / 1981.09.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존(2019.7.9.)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지침 준용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등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등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삭제		고도제한 높이를 고려하여 규모 제한 삭제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구분	기존(2019.7.9.)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존구역에서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 삭제		불필요한 권장 조항 삭제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1. 김포 문수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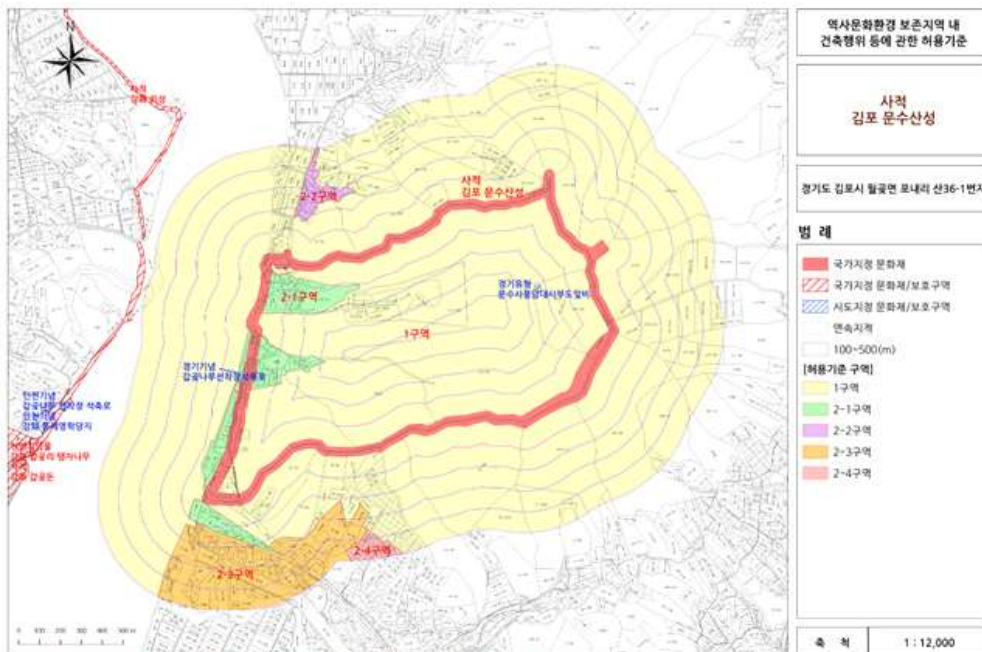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문수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포 문수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음('23.10.24.~11.12.(20일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문수산성(사적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준(2021.12.2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 최고높이 7.5m 이하	개별검토 용어수정, 층수제한 규제삭제
2-2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3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층수제한 규제삭제
2-4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 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개·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제2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 공사 시 발굴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사항 제외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함.		○ 삭제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필요사항 선택 적용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신설>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구분	기존(2021.12.2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신설>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2. 이천 설봉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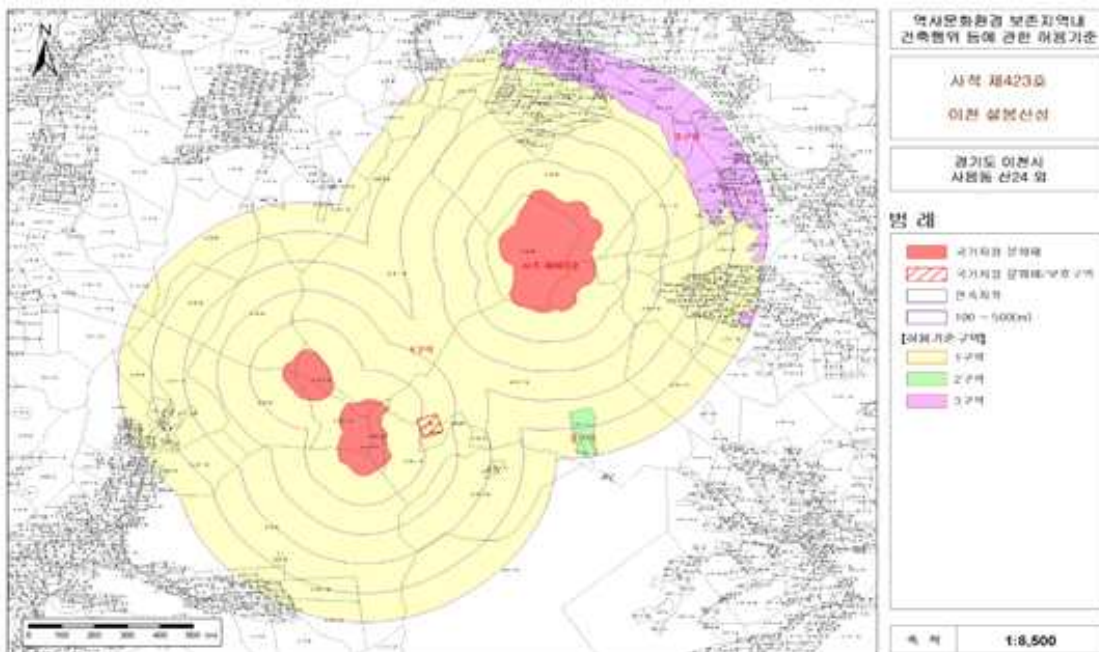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이천 설봉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이천 설봉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조정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었음('23.10.26.~11.14.(20일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 2000.09.1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기존(2016.12.3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보물 제822로 영월암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보물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지정번호 삭제
3구역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 기준 명시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		용도범위 관련 법령을 명시,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토지·임야의 형질변경은 개별심의 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대상 명확히 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시설물 통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삭제		타법에서 처리할



구분	기존(2016.12.30.)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에 따라 처리함.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고시된 사항은 그에 따름	○ 삭제			불필요한 권장 조항 삭제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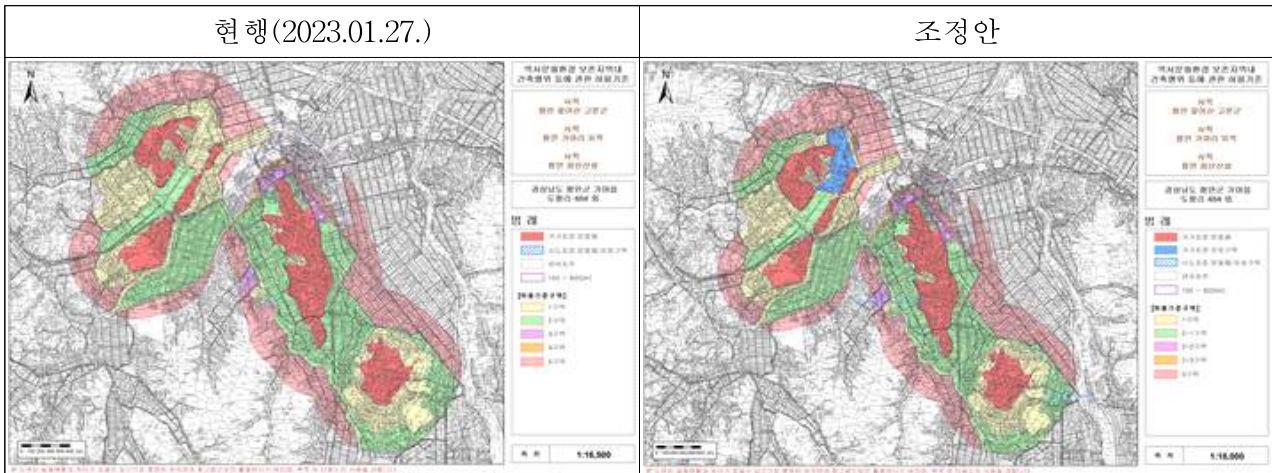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가야리 유적」, 「함안 성산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함안 가야리 유적의 사적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2023.03.17.)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9.10.21. 지정),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 / 2011.07.28. 지정),  
함안 성산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도항리, 광정리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표(문구조정)

구분	허용기준 조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 개별검토		
<u>2-1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u>2-2구역</u>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u>2-3구역</u>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u>3구역</u>	○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b>건축물(→건축물 및 시설물)</b>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p> <p>○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 <del>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del>(삭제)</p>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4.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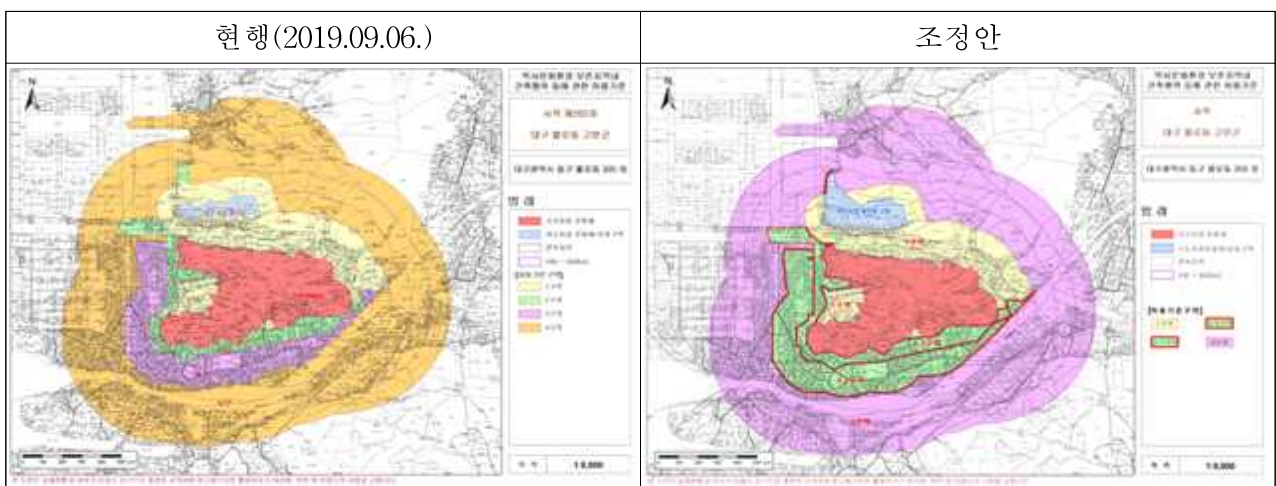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 불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9.~'23.11.07.)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9.0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u>2-1 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u>2-2 구역</u>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3구역</u>	○ <u>좌동</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li> <li>○ 32m 10층 이상의 건물신축 시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시설은 면적 20㎡미만으로 설치 가능.(2-1, 2-2구역 적용)</li> </ul> </li> <li>○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1, 2-1, 2-2구역 적용)</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1, 2-1, 2-2구역 적용)</li> </ul>		

구분	현행(2019.09.0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li> </ul>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5.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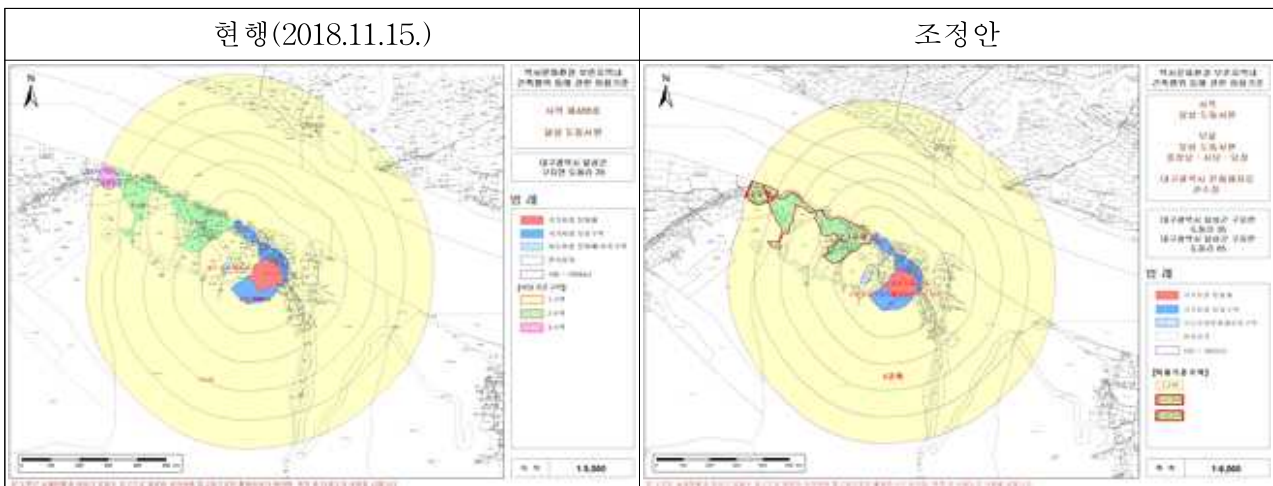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사적 「달성 도동서원」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달성 도동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달성 도동서원(사적 / 2007.10.10.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11.15.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u>2-1 구역</u>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u>2-2 구역</u>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li> <li>○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u>발전시설(태양광등)</u>,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6.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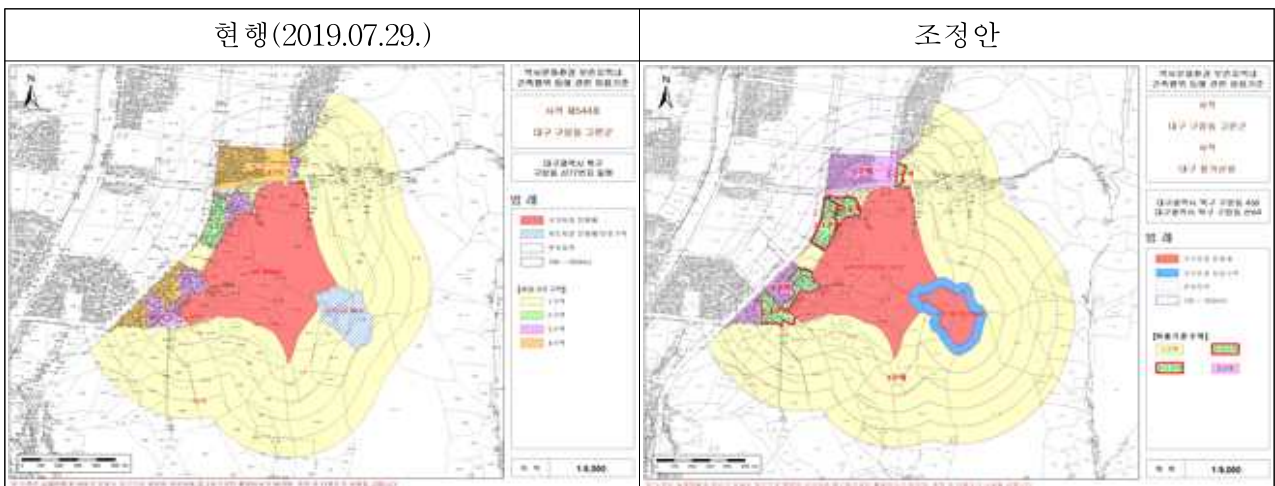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등 2건 주변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 구암동 고분군, 대구 팔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사적 / 2018.08.07. 지정),  
대구 팔거산성(사적 / 2023.06.27.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북구 구암동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7.29.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u>2-1</u>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u>2-2</u> 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3</u> 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li> <li>○ 32m 10층 이상의 건물신축 시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는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li> </ul> </li> <li>○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7.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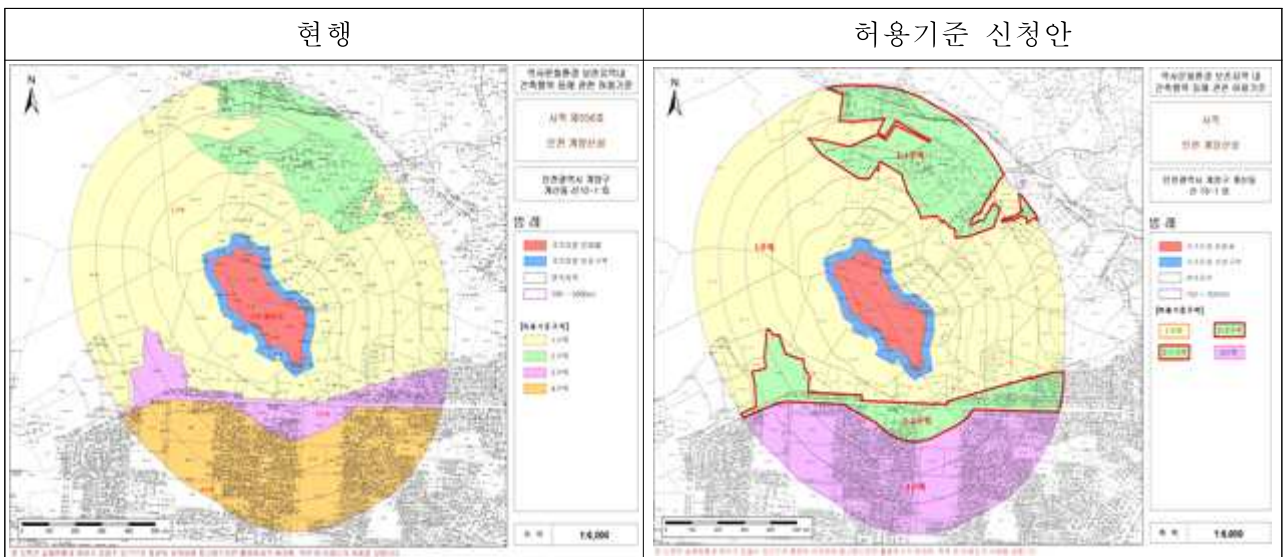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사적 「인천 계양산성」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25.~'23.11.13.)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계양산성(사적 / 2020.05.2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 10-1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20.12.29.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1 구역	○ 좌동	○ 좌동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2-2 구역	○ 좌동	○ 좌동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u>개별검토</u>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u>함.</li> <li>○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li> <li>○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u>개별검토</u>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u>개별검토</u>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삭제(법령중복)</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u>개별검토</u>함.</li> <li>○ 좌동</li> </ul>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28.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량성 등 7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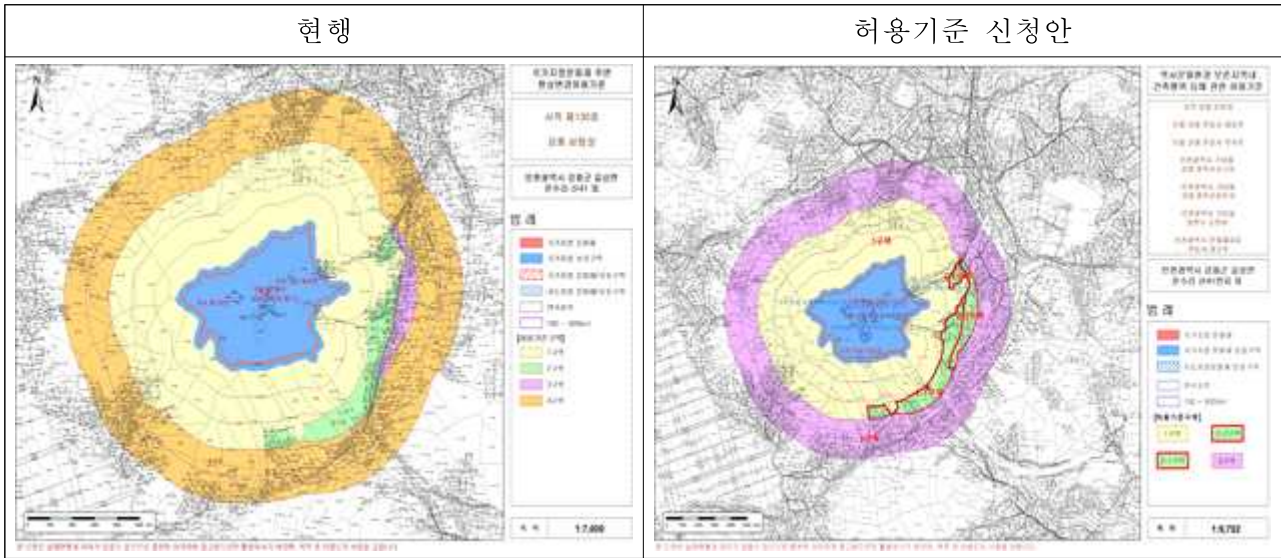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량성(사적 / 1964.06.10. 지정),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 1963.01.21. 지정),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 1963.01.21. 지정),  
강화 정족산사고지(시기념물 / 2014.04.16. 지정),  
강화 정족산성진지(시기념물 / 2014.04.16. 지정),  
양헌수 승전비(시기념물 / 1995.11.15. 지정),  
전등사 대조루(문화재자료 / 1995.03.0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등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5.01.23. 기고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삼랑성		- 대상문화재: 강화 삼랑성, (보물)강화 전등사 대웅전·강화 전등사 약사전, (시도기념물)강화 정족산사고지·강화 정족산성진지·양현수 승전비, (문화재자료)전등사 대조루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u> 관련시설, <u>발전시설</u>(태양광 등), 동물 및 <u>식물</u>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li> <li>○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li> <li>○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li> <li>○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li> </ul>
--	--

**라. 참고사항**

**(1) 관련부서 검토의견('23.12.08./유형문화재과)**

-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안은 사적분과 심의결과에 따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29.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및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 9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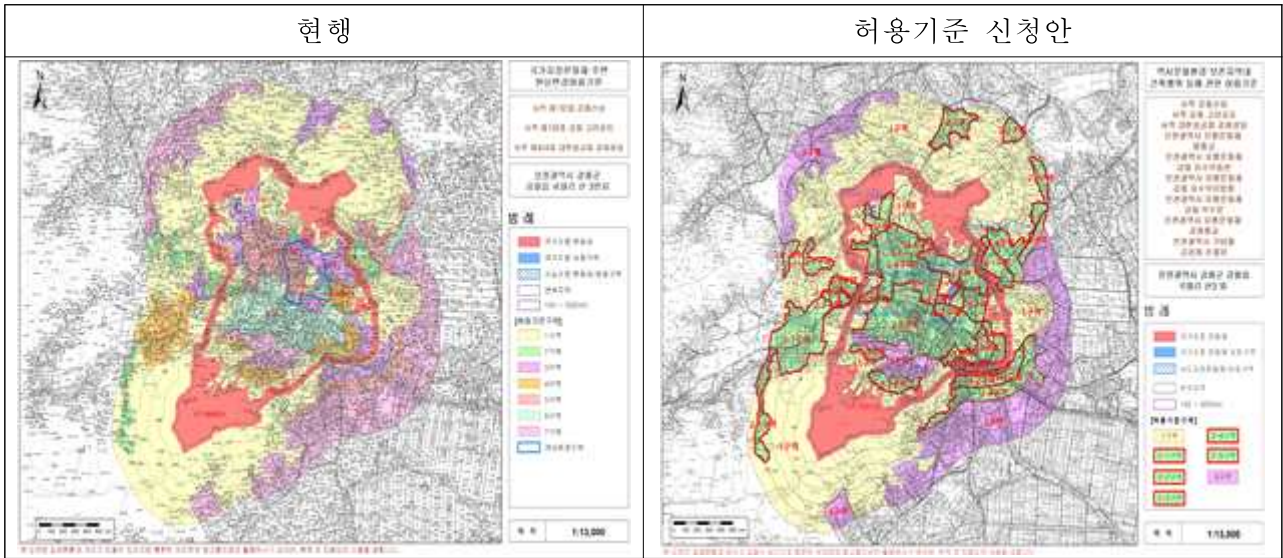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강화 고려궁지(사적 / 1964.06.10. 지정),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 2001.01.04. 지정),  
용흥궁(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동헌(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이방청(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 석수문(시유형문화재 / 1995.03.02. 지정),  
강화향교(시유형문화재 / 1995.11.15. 지정),  
김상용순절비(시기념물 / 1995.11.1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5.05.1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대상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대상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시유형문화재)용흥궁·강화유수부동헌·강화유수부 이방청·강화 석수문·강화향교, (시기념물)김상용 순절비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4 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2-5 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사항	○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삭제(법령중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li> <li>○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ul>
---	---

**라. 참고사항**

(1) 관련부서 검토의견('23.12.08./근대문화재과)

-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안은 사적분과 심의결과에 따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0.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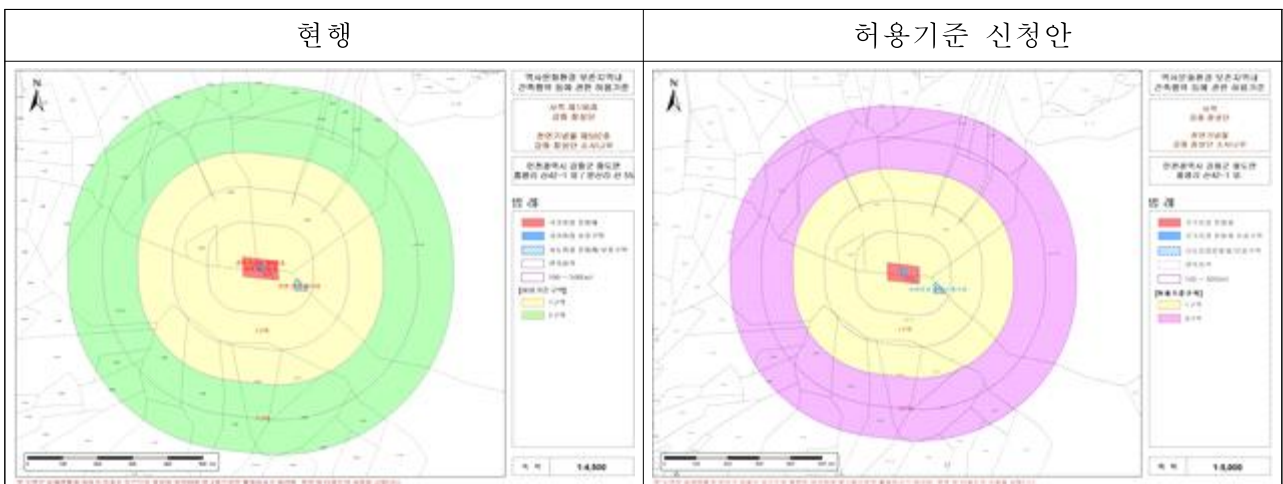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참성단」 및 천연기념물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참성단 및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 1964.07.11. 지정),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천연기념물 / 2009.09.16.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42-1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u>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송전탑, 통신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li> <li>○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함</u>.</li> <li>○ 송전탑, 통신시설은 <u>개별검토함</u>.</li> <li>○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li> <li>○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li> <li>○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li> </ul>	

라. 참고사항

(1) 관련부서 검토의견('22.12.04./천연기념물과)

-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안은 사적분과 심의결과에 따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1.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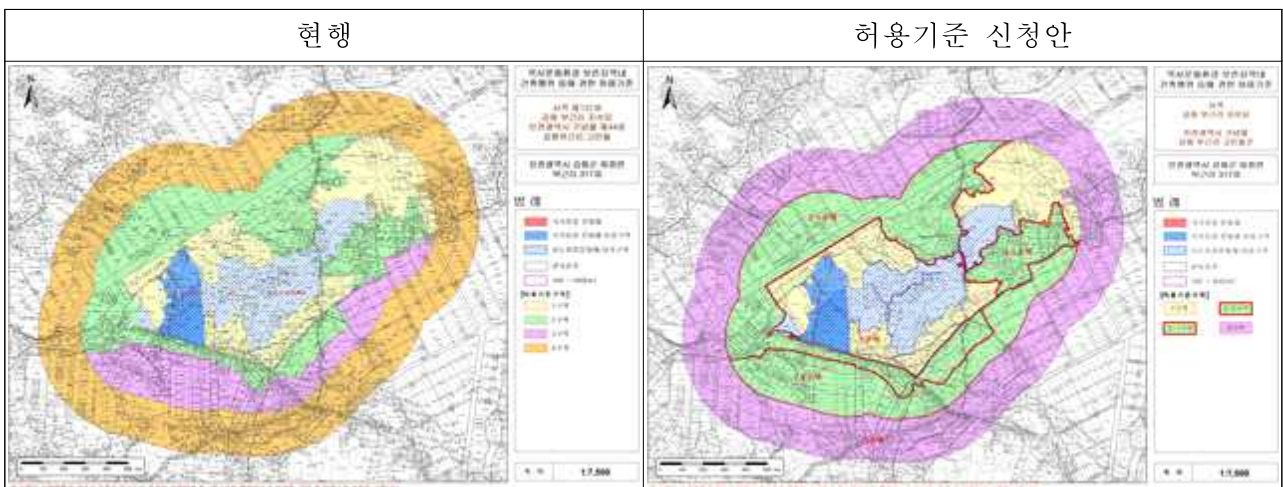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시기념물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부근리 지식묘 및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 1964.07.11. 지정),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시기념물 / 1999.04.26.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20.04.10.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u>개별검토함.</u>(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u>개별검토함.</u>(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삭제(법령중복)</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u>개별검토함.</u></li> <li>○ 좌동</li> <li>○ <u>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u></li> </ul>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2.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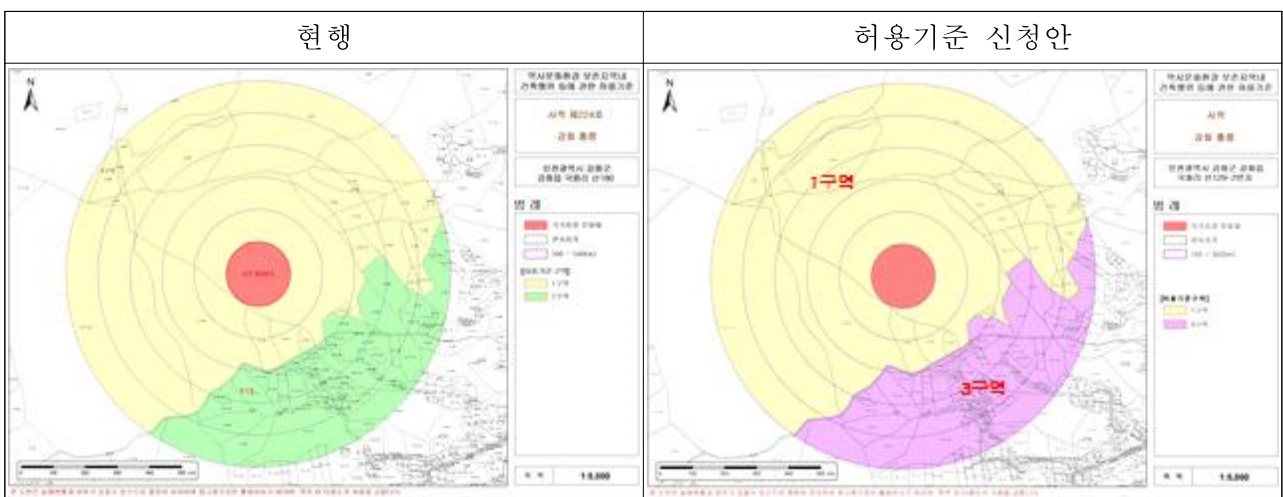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홍릉」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홍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홍릉(사적 / 1971.12.29.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29-2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u>
공통 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p> <p>○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p> <p>○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u>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u>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p> <p>○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함.</u></p> <p>○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p> <p>○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p>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3.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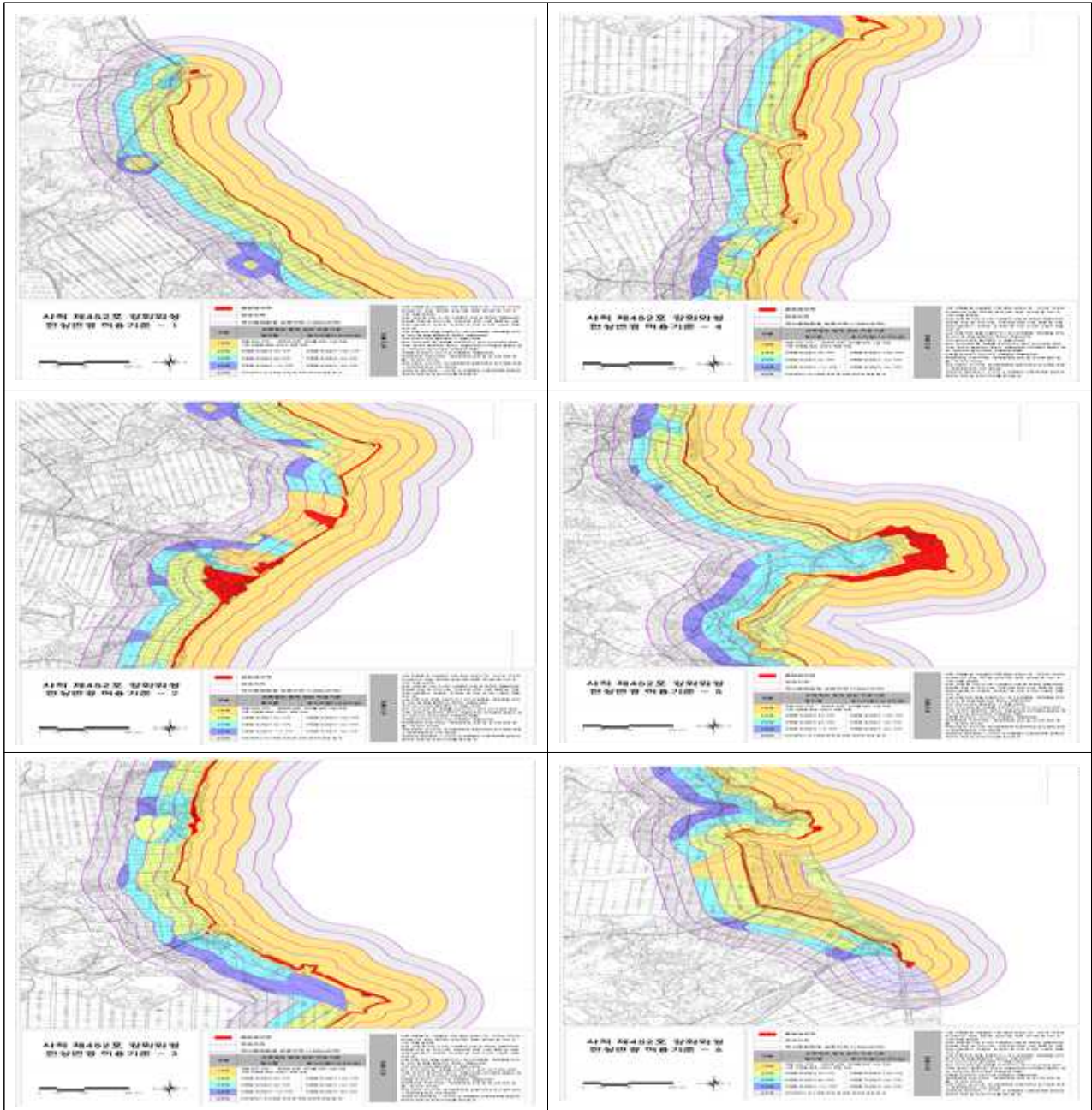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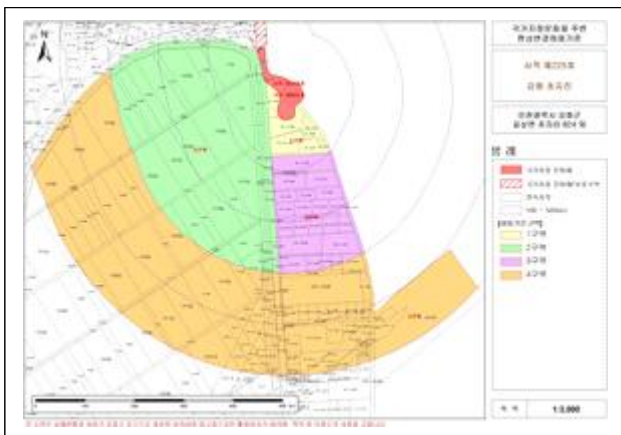
- 강화 외성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통합안)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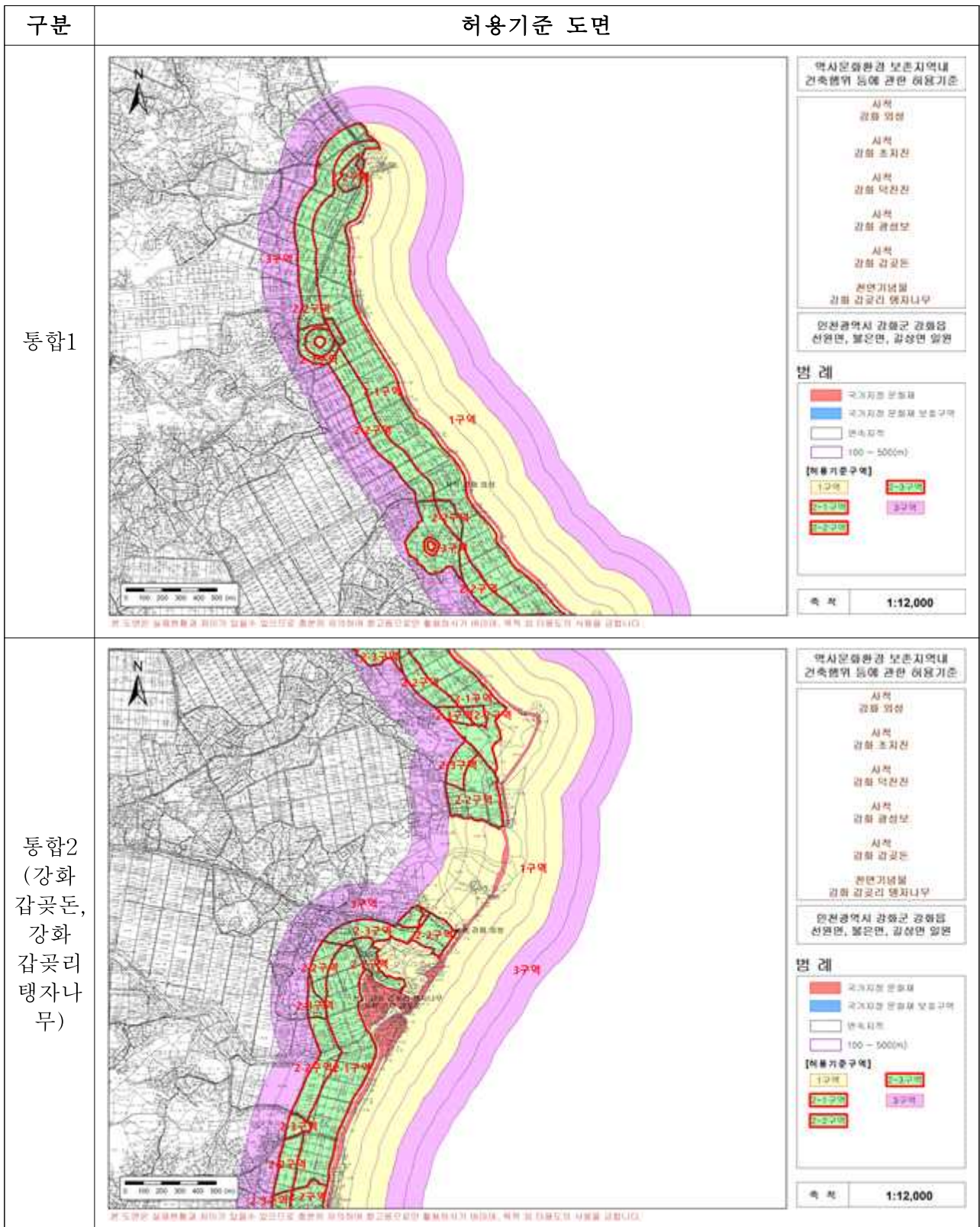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강화 초지진(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덕진진(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광성보(사적 / 1971.12.29. 지정),  
강화 갑곶돈(사적 / 1984.08.13. 지정),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천연기념물 / 1962.12.07.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강화읍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 허용기준 도면(현행)
    - 강화 외성,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 강화 초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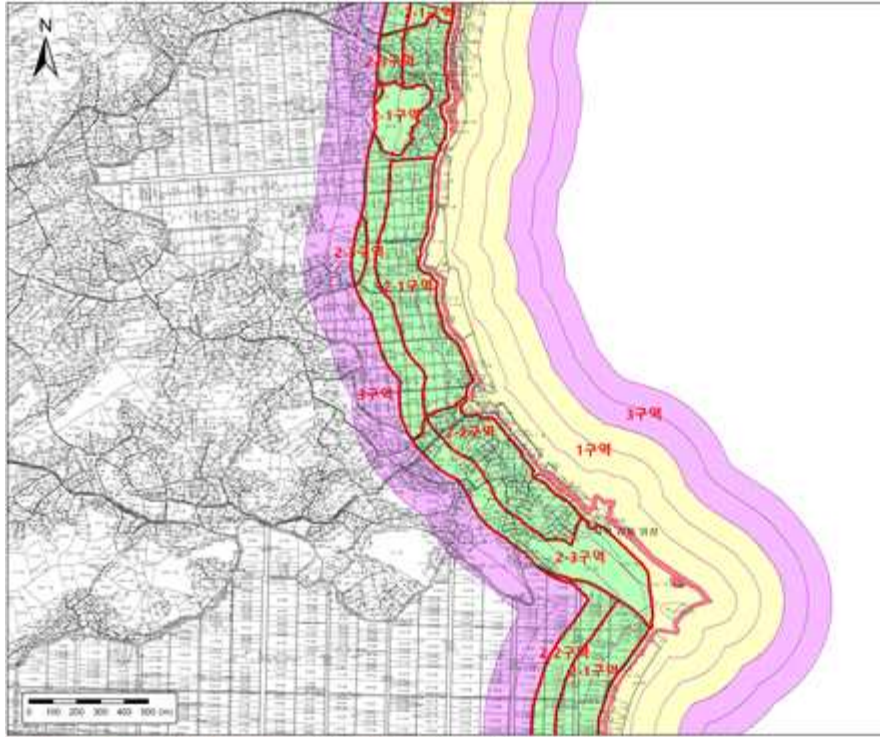
○ 허용기준 통합 도면(변경 후)



구분

### 허용기준 도면

통합3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경류 외형
- 시적 감회 초지선
- 시적 감회 덕진선
- 시적 감회 곡선보
- 시적 감회 감곡선
- 관면기념물 감회 감곡리 땡치나무

안전광역시 관해군 관해읍 선원면, 불은면, 갈성면 일원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면적지표
- 100 - 50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12,000

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장에 당황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단면도의 사물을 금합니다.

통합4



역시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경류 외형
- 시적 감회 초지선
- 시적 감회 덕진선
- 시적 감회 곡선보
- 시적 감회 감곡선
- 관면기념물 감회 감곡리 땡치나무

안전광역시 관해군 관해읍 선원면, 불은면, 갈성면 일원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면적지표
- 100 - 50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 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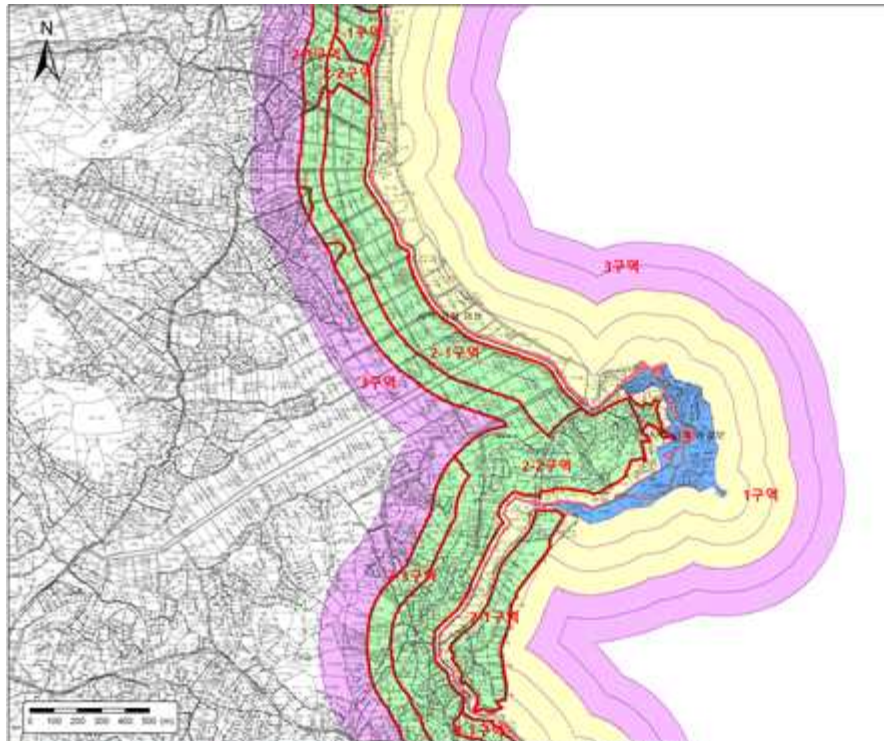
축척 1:12,000

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현장에 당황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단면도의 사물을 금합니다.

구분

### 허용기준 도면

통합5  
(강화  
광성보)



역시문화관광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광물 외형
- 시적 강화 초지진
- 시적 강화 덕진진
- 시적 강화 경향보
- 시적 강화 김교은
- 경연기념물 강화 김교은 행차나무

연천광역시 강화군 경희읍 선영면, 불은면, 갈상면 일원

**방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한국리계
- 100 -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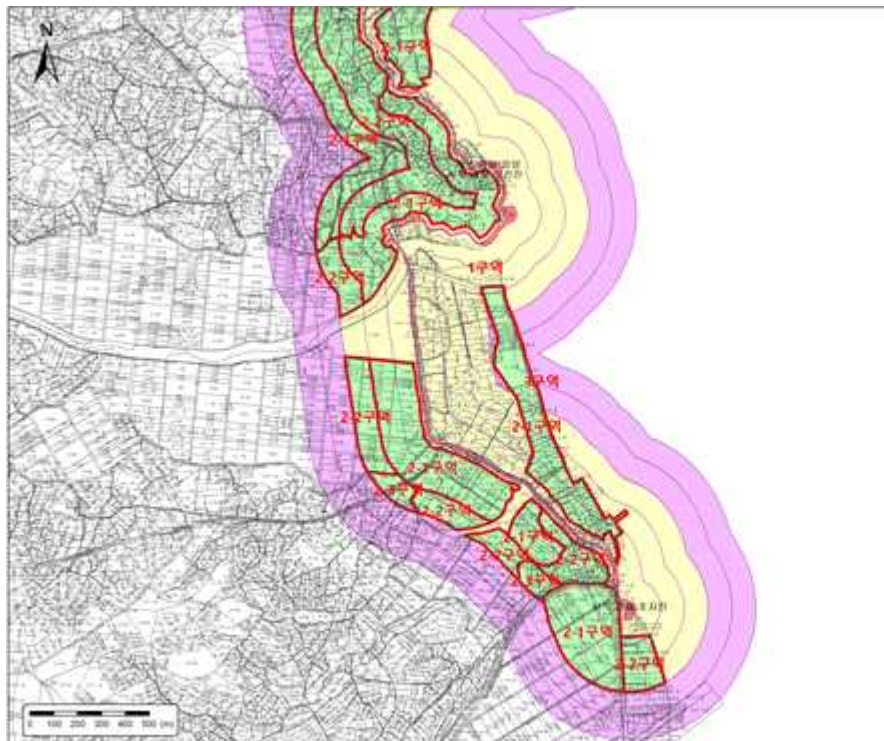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12,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축척에 의거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척 및 적용도장 사용을 금합니다.

통합6  
(강화  
덕진진,  
강화  
초지진)



역시문화관광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시적 광물 외형
- 시적 강화 초지진
- 시적 강화 덕진진
- 시적 강화 경향보
- 시적 강화 김교은
- 경연기념물 강화 김교은 행차나무

연천광역시 강화군 경희읍 선영면, 불은면, 갈상면 일원

**방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 한국리계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척 1:12,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축척에 의거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척 및 적용도장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 비교표

- 강화 외성

구분	현행: 2018.06.26.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강화 초지진,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천연기념물)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li> <li>○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 강화 외성 밖의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재·개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법령중복)</li> <li>○ 좌동</li> <li>○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li> <li>○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li> </ul>
---	---

- 강화 초지진

구분	현행: 2015.01.23.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초지진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등 6곳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설>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지진 북측은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li>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통합고시 할 경우 불필요)</li>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li> <li>○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li> <li>○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li> <li>○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li> <li>○ <u>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u></li> <li>○ <u>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u></li> </ul>
---	--

-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구분	현행: 2021.03.23.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통합고시	
	- 대상문화재: 강화 덕진진, 강화 광성보, 강화 갑곶돈			- 대상문화재: 강화 외성 등 6곳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li>○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li> <li>○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li> </ul>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u>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u></li> <li>○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li> <li>○ <u>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u></li> </ul>		

	<신설>	○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
	<신설>	○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
	<신설>	○ <u>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u>
	<신설>	○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
	<신설>	○ <u>1~2구역 내 건축물 신축(개·재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u>
	<신설>	○ <u>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u>

라. 참고사항

(1) 관련부서 검토의견('23.12.04./천연기념물과)

-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안은 사적분과 심의결과에 따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4.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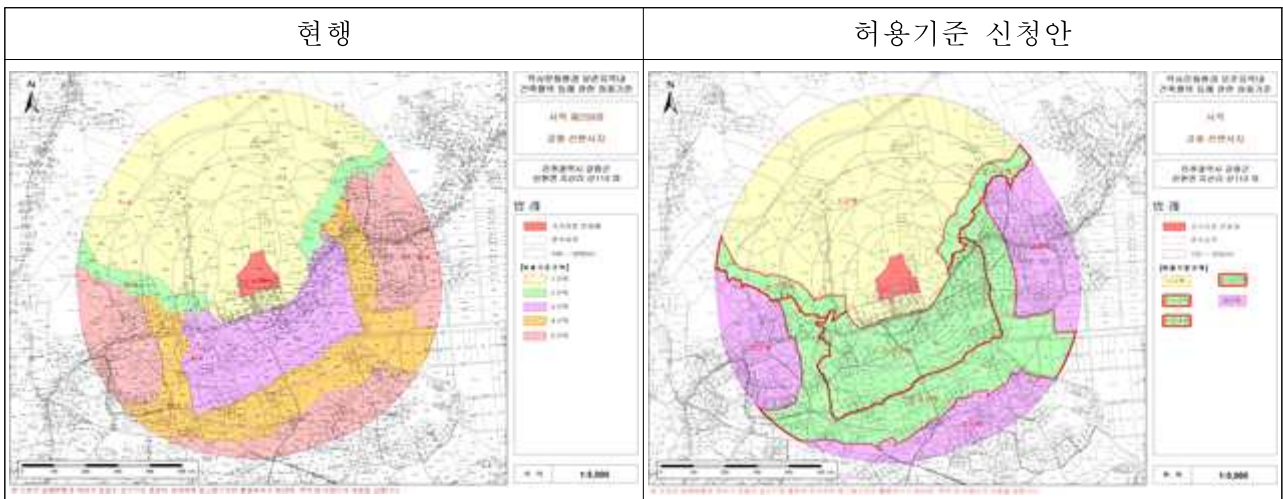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선원사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선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선원사지(사적 / 1977.11.29.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20.04.22.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 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좌동</u>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소음·진동·약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u>함.</li> <li>○ 삭제(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의 문화재에 적용 할 사항)</li> <li>○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u>개별검토</u>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u>개별검토</u>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삭제(법령중복)</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u>개별검토</u>함.</li> <li>○ 좌동</li> </ul>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5.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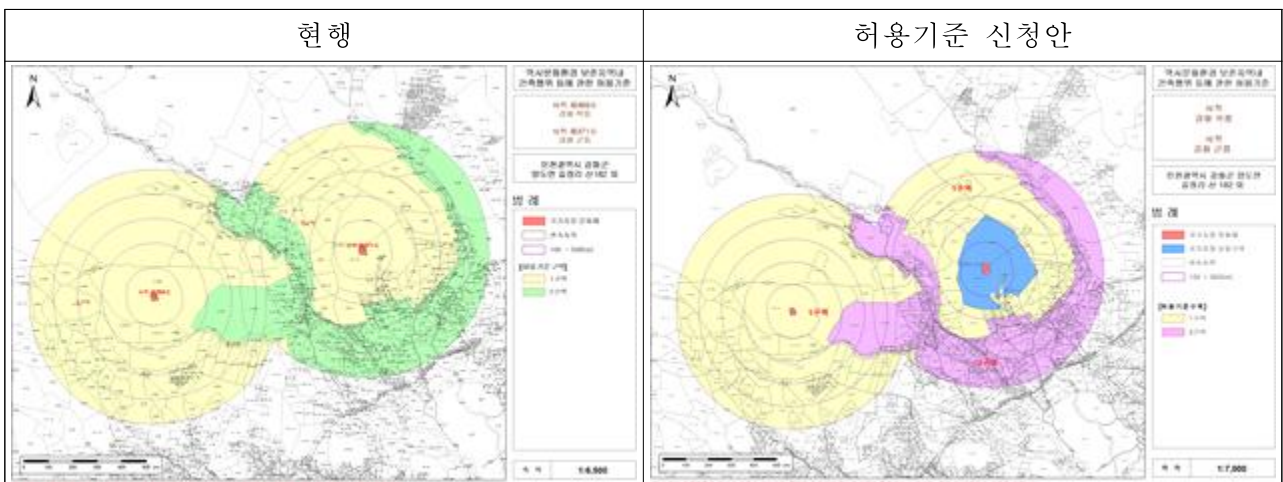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석릉 및 강화 곤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석릉(사적 / 1992.03.10. 지정),  
강화 곤릉(사적 / 1992.03.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좌동</u>
공통 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p> <p>○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p> <p>○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u>개·재축</u>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u>발전시설(태양광 등)</u>, 동물 및 <u>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u>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u>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p> <p>○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함.</u></p> <p>○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p> <p>○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p>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6.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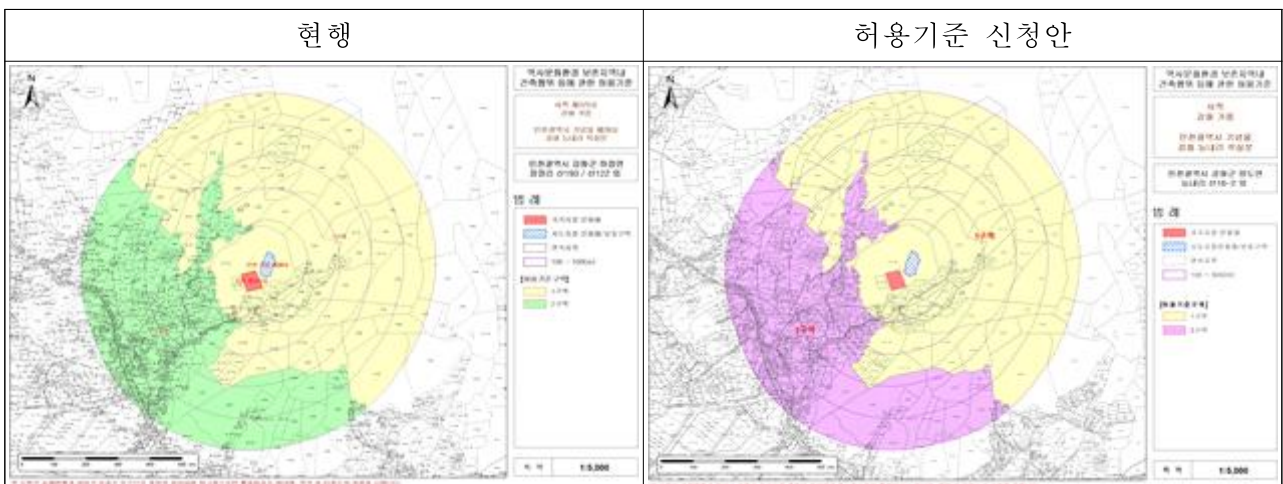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가릉」 및 시기념물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가릉 및 강화 능내리 석실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계○○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가릉(사적 / 1992.03.10. 지정),  
강화 능내리 석실분(시기념물 / 1995.03.0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2016.12.28. 기고시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u>개별검토</u>
2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u>좌동</u>
공통 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p> <p>○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p> <p>○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u>개별검토함.</u></p> <p>○ <u>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u></p> <p>○ <u>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u></p> <p>○ <u>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는 개별검토함.</u></p> <p>○ <u>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u></p> <p>○ <u>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u></p>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구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7.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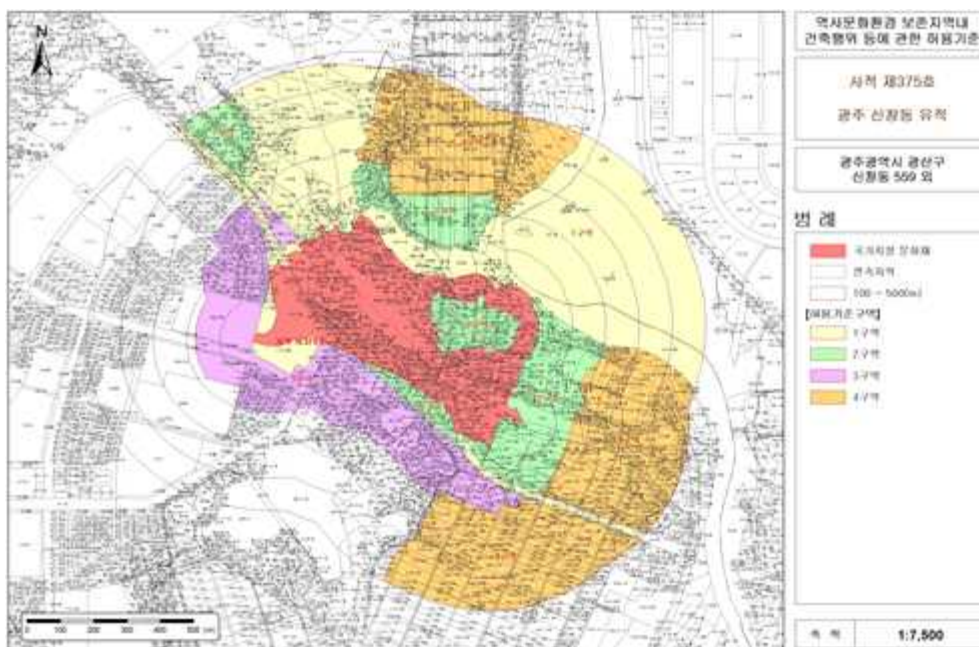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 : '23.10.20.~11.09.(20일간) /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 1992.09.09. 지정)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9.09.16.)고시		금회 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재축 시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으로 함 - 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제외		○ 개별검토 - 개·재축 시 경사지붕으로 함 - 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제외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경사지붕 높이조정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자구수정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자구수정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자구수정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 기준추가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발전시설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절성토 내용추가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태양광, 야간조명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빛공해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삭제>		중복내용 삭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		<삭제>		타법에서

구분	현행(2019.09.16.)고시		금회 신청 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처리할 사항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b>검토</b> 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8.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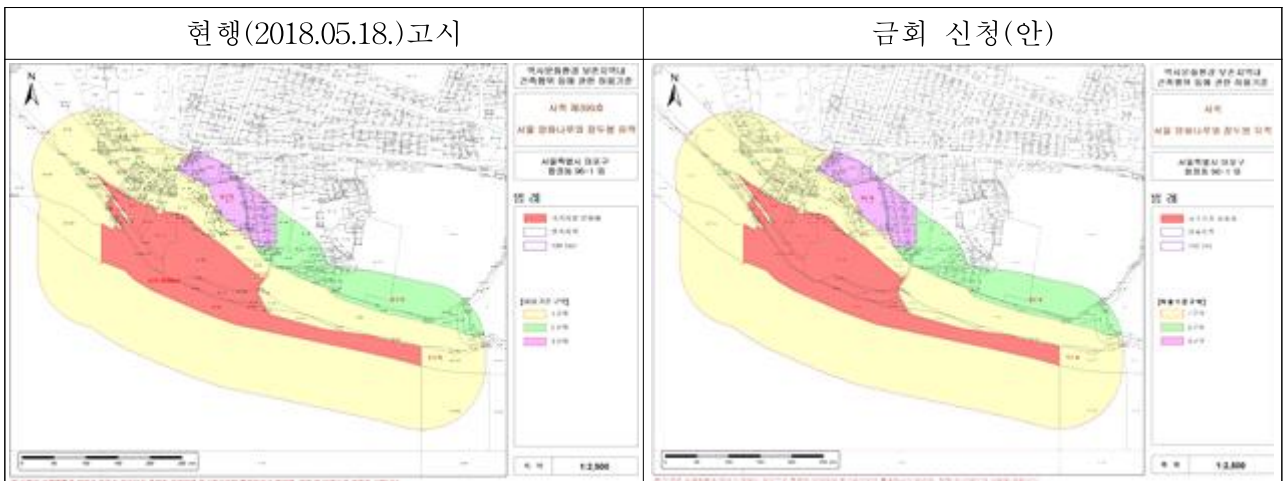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사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17.~11.06.)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사적 / 1997.11.1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6-1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05.18.)고시		금회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 <b>검토</b>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b>시설물</b> 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b>최고높이</b> 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39.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30.~11.18.)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사적 / 2005.03.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70-1번지 외, 중구 남대문로 9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현행(2008.06.17.)고시	금회 신청(안)
<p>보통밀차</p>	<p>보통밀차</p>
<p>수원밀차</p>	<p>수원밀차</p>
<p>오전수원차</p>	<p>오전수원차</p>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8.05.18.)고시	금회 신청(안)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조건을 선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개발시에는 동 문화재의 원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함.</li> </ul> </li> <li>○ 서울청계천유적과 홍인지문(보물 제1호), 보신각(서울특별시기념물 제10호)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범위가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현행 양각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함.</li> <li>- 사적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개발시에는 동 문화재의 원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함.</li> </ul> </li> </ul>
공통사항	<신설>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신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li> </ul>
	<1구역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조정>	○ 서울 청계천 유적과 홍인지문, 보신각터 주변의 허용기준이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40.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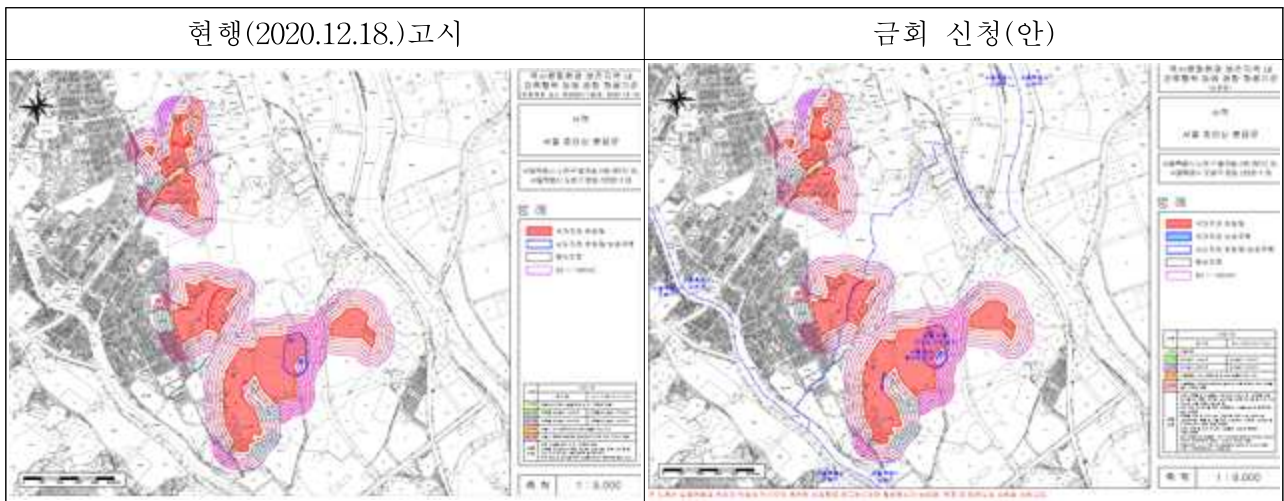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초안산 분묘군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노원구 '23.10.05.~10.25. / 도봉구 '23.11.09.~11.29.)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초안산 분묘군(사적 / 2002.03.09.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8-3 외, 도봉구 창동 산202-1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20.12.18.)고시		금회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별 <b>검토</b>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양각 27도선 적용		○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b>시설물</b> 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b>최고높이</b> 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문화재청 별도 심의		<삭제>	
	<신설>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41.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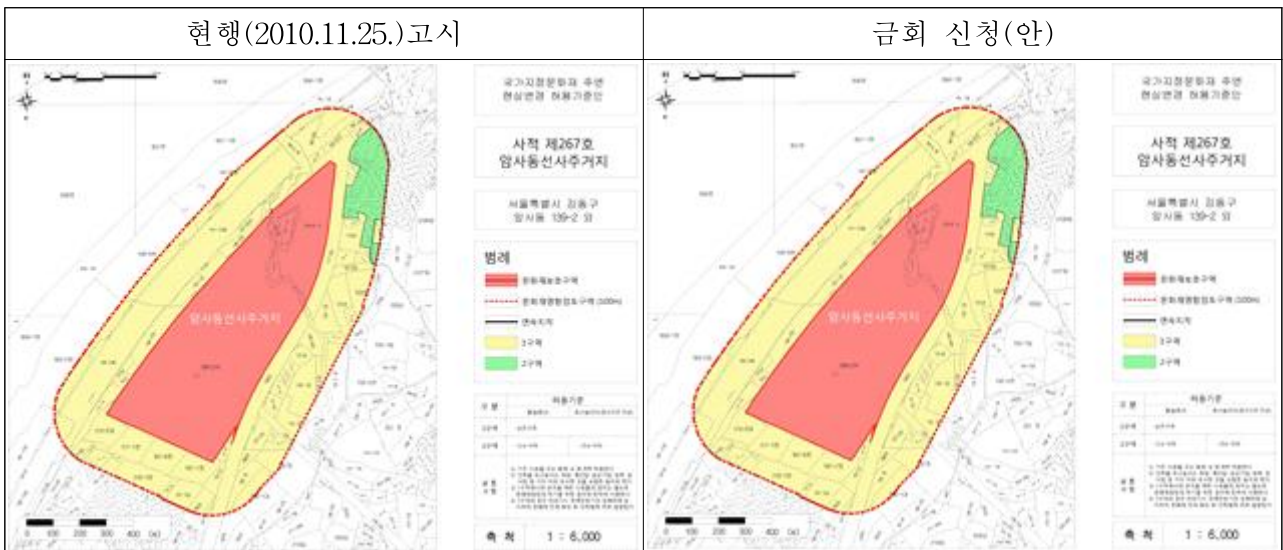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사적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31.~11.20.) : 의견 있음(1건)
  - (이○○) 공통사항 중 동물관련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 1979.07.26.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155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1.25.)고시		금회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평지붕 높시오기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삭제>		
	○ 2구역의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삭제>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주민의견 검토필요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2구역 오기 내용 정정할 것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42.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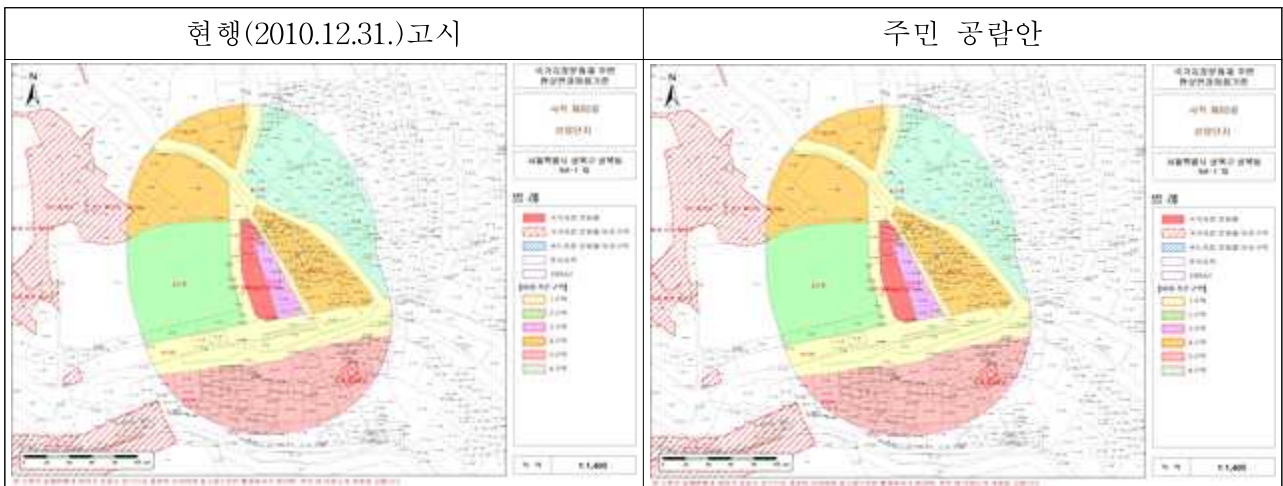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서울 선잠단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선잠단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실시('23.10.05.~10.25.) : 의견 있음(1건)
  - (채○○) 문화재지정구역 내 2필지(성북동 63-1, 63-9) 지정해제 요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선잠단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64-1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2.31.)고시		금회 신청 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보존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심의구역		○ 개별검토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3구역 3층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 3구역 최고높이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검토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43

1.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관련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 외 12필지
-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당초 : 지정구역 13필지 62,412㎡ / 보호구역 없음
  - 신청 : 보호구역 50필지 113,024㎡ 신규 지정
  - 조정 후 : 지정구역 13필지 62,412㎡, 보호구역 50필지 113,024㎡

< 문화재구역 신청현황 >

구분	지정구역	보호구역	증감
기존	13필지 62,412㎡	-	
신규	-	50필지 113,024㎡	보호구역 신규 지정
조정 후	13필지 62,412㎡	50필지 113,024㎡	

(4) 신청사유

- 익산 백제왕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궁성(宮城)을 방어하는 관방유적인 익산 토성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경관적 가치를 확보하여 고도와 당해 문화유산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1.03./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진입 동선의 확보, 오금사지, 마룡지와 이어지는 역사축의 확보, 고도 보존육성지구 지정을 통한 역사경관 조성 차원에서 제안한 보호구역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단, 허용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 허용기준 범위를 준용하고 높이 기준을 제안한 대로 1구역(개별검토), 2구역(평지붕 5m / 경사지붕 7.5m), 3구역(고도육성법), 4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익산 토성(益山 土城)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11.3.(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익산 토성(益山 土城)
- 익산 토성의 연접 지형과 금마저 방향의 일체화된 경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은 없음.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익산 토성(사적/1963.1.21.지정)은 행정구역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0-3 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 오금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발 120m 내외의 봉우리를 포함하여 남쪽의 곡간부를 감싼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690m 내외이고 북쪽에는 대둔산에서 뺏어내려 온 미륵산이 자리잡고 있음
-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보덕성이라는 이름은 고구려 유민인 안승(安勝)이 670년 익산에 자리잡은 뒤 684년까지 세운 보덕국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보덕성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
- 익산 토성 주변에는 용샘과 마룻지, 서동생가터와 같은 백제 무왕과 관련된 설화가 깃든 유적이 있으며,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기와류와 토기류 등의 유물과 석축 저온저장고 등 생활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음.
- 주변으로 대부분 경작지 및 자연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보임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 백제 말기 축성된 것으로 확인, 조선시대 문헌에는 보덕성이라 명칭

익산 토성에 대한 창건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보고서와 문헌 기록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백제 말기인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이외에도 익산 토성은 마한시대 축조설, 백제 서동 축조설, 보덕국 안승 도읍설 등 다양한 연혁이 전해지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이와 연관하여 보덕성(報德城)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이후 일제강점기 들어 조선총독부에 의해 여러 차례 고적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40년에는 고적 제 127호로 지정고시(조선총독부 고시 제808호)되었고, 1941년 익산 토성의 석표를 설치

하기 위한 도면과 약도가 제작되기도 하였음.

한편,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명칭인 익산 토성은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토성이 아닌 석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익산 토성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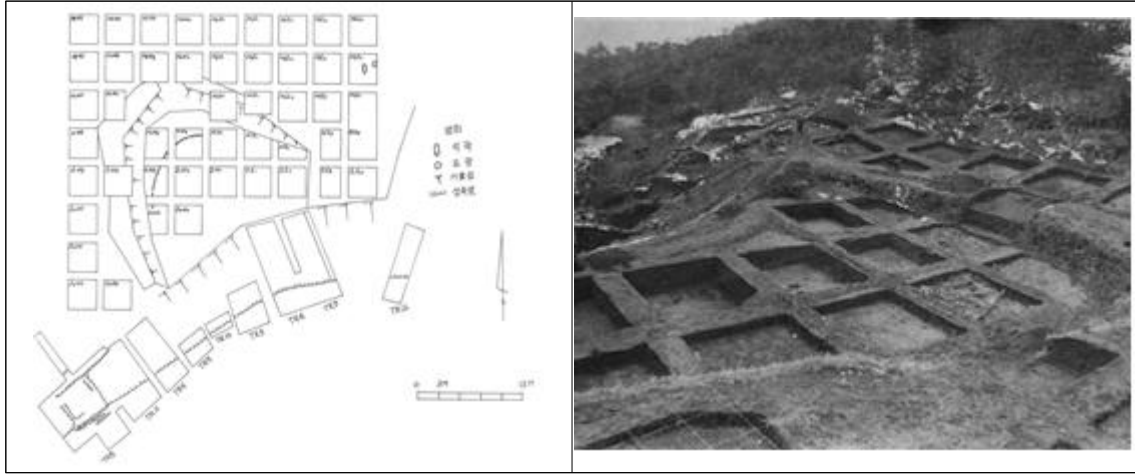
연 도	내 용	비 고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	익산 토성 축조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 보덕성이라 지칭됨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1917년	일제강점기 야쓰이 조사단이 익산 오금산성 기록	『익산 고적조사 목록』
1940~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익산토성 석표 설치 기록	『익산토성석표건립요도』
1963년	문화재 지정(사적 제92호/1963.01.21.)	문화재청
1980년	1차 발굴조사(성벽, 남문지, 수구지)	『보덕성발굴약보고』
1984년	2차 발굴조사(남문지, 판축토루, 성벽)	『익산 오금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2016년	토성 내 시굴조사	『익산토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년	1차 학술발굴조사(서성벽 구조 조사)	『익산 토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보고서』
2016~2017년	2차 학술발굴조사(서성벽 및 내부 확장조사)	
2017년	3차 학술발굴조사(서성벽 확장조사 및 구조 파악)	
2018년	4차 학술발굴조사(서문지 초축·개축 성벽조사)	
2020년	익산토성 종합정비계획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2021년	익산 토성 문화재 발굴조사(1차)	『익산토성(Ⅲ-1·2구역)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22년	익산 토성 문화재 발굴조사(2차)	

가. 학술 고증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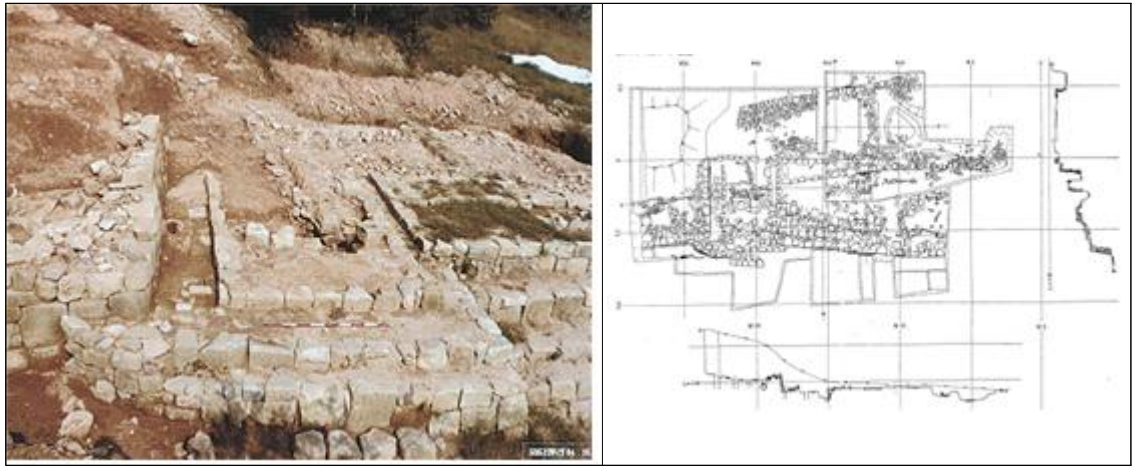
■ 발굴조사 경과

익산 토성의 발굴조사는 1980년 남문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최초로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4년 남문지 발굴조사 이외에도 성벽 트렌치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음.

2016년도부터는 익산 토성 정비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해 내부 성벽 내 시굴조사를 비롯하여 2016년 11월~2018년 12월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도 2021년 3월~2023년 3월까지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음.



▲1980년 익산 토성 남문지 일원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보덕성발굴약보고, 1981)



▲1984년 남성벽 및 남문지 일원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오금산성 발굴조사보고서, 1985)

1980년 발굴조사에서 잘 다듬은 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으로 쌓은 남성벽과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지점에서 남문지가 확인되었으며, 1984년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조사를 통해 성의 전체적인 구조 및 축조방법은 물론 대략적인 성의 규모 등을 확인함.

조사결과, 익산토성은 성벽과 성벽 외부에 물을 채우지 않은 마른 해자인 황(隍)을 갖추고 있는 이중적 구조이며, 일정 두께의 흙을 킁킁이 다져서 쌓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자연경사가 완만한 지역과 능선에는 성벽 밖으로 해자를 두르고 자연경사면이 급한 지점에는 성벽 밖으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축조하였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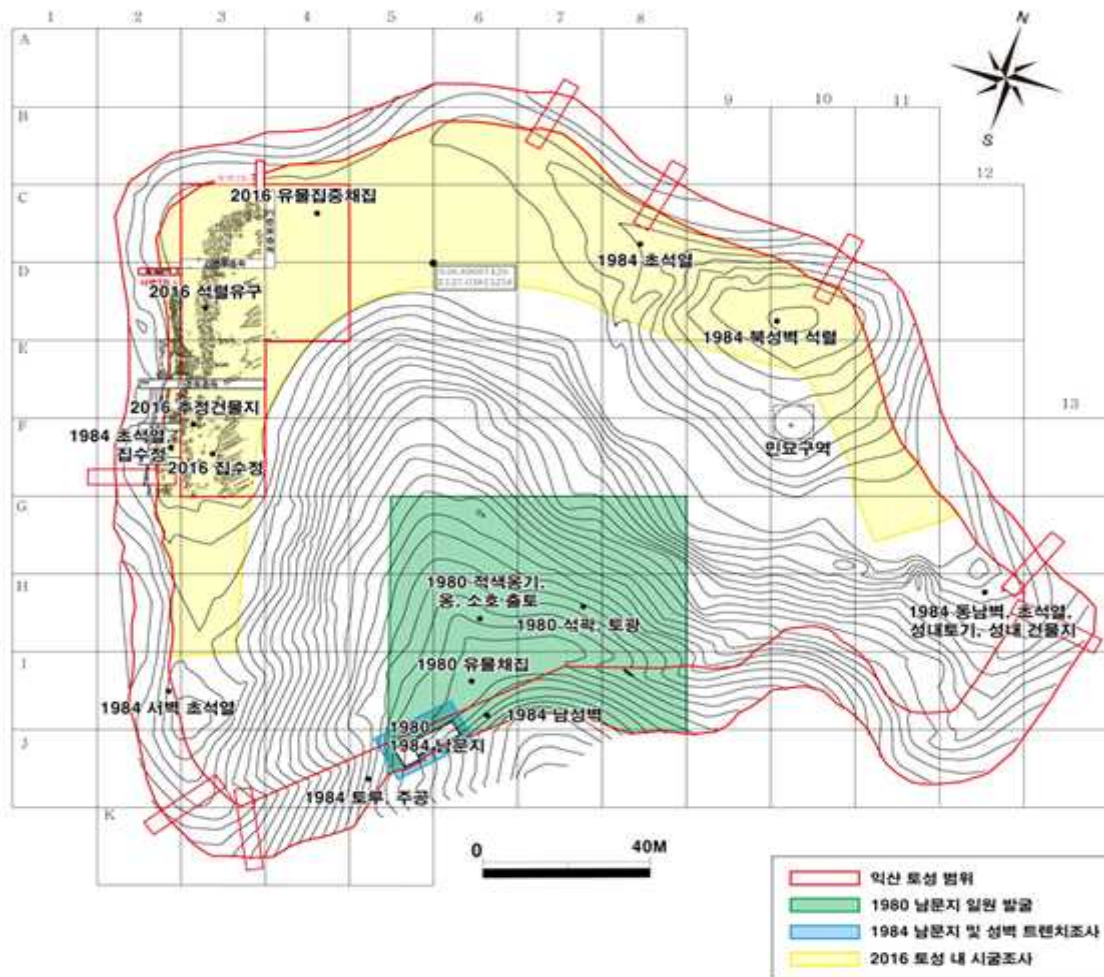
1984년 남성벽과 남문지 일대의 조사에서는 백제시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이후 성벽을 개축하면서 성벽을 절개하고 석재를 이용하여 남문을 축조하였는데, 문지의 폭은 약 4.3m 정도이며, 문지의 동-서벽 아래에는 배수시설이 확인되었고 문지에는 동-서 양쪽에 문짝 기둥을 끼우는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 2개와 전면의 계단시설 등을 확인함. 또한 성벽 앞으로는 관축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웠던 흔적인 영정주(永定柱)가 확인됨.

2016년 8월 1일~10월 5일까지 실시된 시굴조사는 익산토성 내 26,400㎡ 중 별목을 통해 유구가 부존될 가능성이 높은 토성 내부의 평탄지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면적은 문화재위원회 실사를 거쳐 7,800㎡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결과 적심, 초석, 석렬 등 건물지 관련 흔적들이 확인되었으며 ‘북사(北舍)’명 토기편을 비롯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다량의 토기편 및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음.

▼1980~2016년도 익산 토성 시·발굴조사 내용  
(자료 : 익산시,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2020)

연도	조사 범위	조사 내용	비고
1980	남문지 일원 및 수구안 테라스상 광장	남문지, 수구석벽렬	보덕성발굴약보고 (1981)
1984	남문지 확장, 성벽 구조 조사	남문지, 토루, 호석렬, 서벽, 북벽 외, 성둘레 690m	익산 오금산성 발굴조사보고서 (1985)
2016-2017	토성 내부(26,400㎡)	적심, 초석, 석렬 등 건물지 흔적 및 서문지	익산 토성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 1980~2016년도 익산 토성 발굴조사 범위  
(익산시,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2020)



2016년~2018년까지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에서는 북성벽 및 서성벽의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지상 건물지와 연관이 있는 적심과 초석을 비롯하여, ‘수부(首府)’명 명문와를 비롯한 다수의 인장와가 출토되었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2021~2023년 북성벽 및 남동성벽 지역의 발굴조사의 경우, 서성벽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내성벽이 확인되었고, 뒤채움석으로 길이 1m 내외의 장대석을 이용해 서로 짜 맞추는 남동성벽의 축조 방식은 다른 구간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발굴조사 내용

(자료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토성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외 재구성)

연도	차수	조사 내용
2016-2018	1-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조사결과 북성벽·서성벽 구조 확인, 성격 미상의 석렬 유구 및 적심·초석 확인</li> <li>2차 조사결과 서문지의 석렬 및 구조 확인, 서성벽 내벽으로 판단되는 석렬 안쪽으로 석렬 확인</li> <li>3차 조사결과 서성벽에 대한 확장조사로 1~8단의 성벽 잔존 확인</li> <li>4차 조사결과 서문지의 구조 및 북쪽 방향의 서성벽 확인</li> </ul>
2021-2023	1-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산토성 북서모서리 및 북성벽 구간(Ⅲ-1구역)과 남동성벽 구간(Ⅲ-2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진행</li> <li>서성벽으로부터의 초축성벽이 북성벽으로 연결되는 양상 확인</li> <li>서성벽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내성벽이 북성벽 구간에서 확인</li> <li>북성벽 구간에서 성벽 앞으로 반원형 및 부정형의 주공열 확인</li> <li>북서모서리 구간과 북성벽 일부에서만 개축시설 확인, 그 외 구간 미확인</li> <li>북성벽 일원에서 백제시대 기와편 출토</li> <li>남동성벽의 특징적인 축조방식 확인, 통일신라시대 이후 기와편 주로 출토</li> </ul>



▲ 2016년 1차(좌-서성벽 트렌치) 및 2차(우-북서측 모서리 부분) 발굴조사 (익산시,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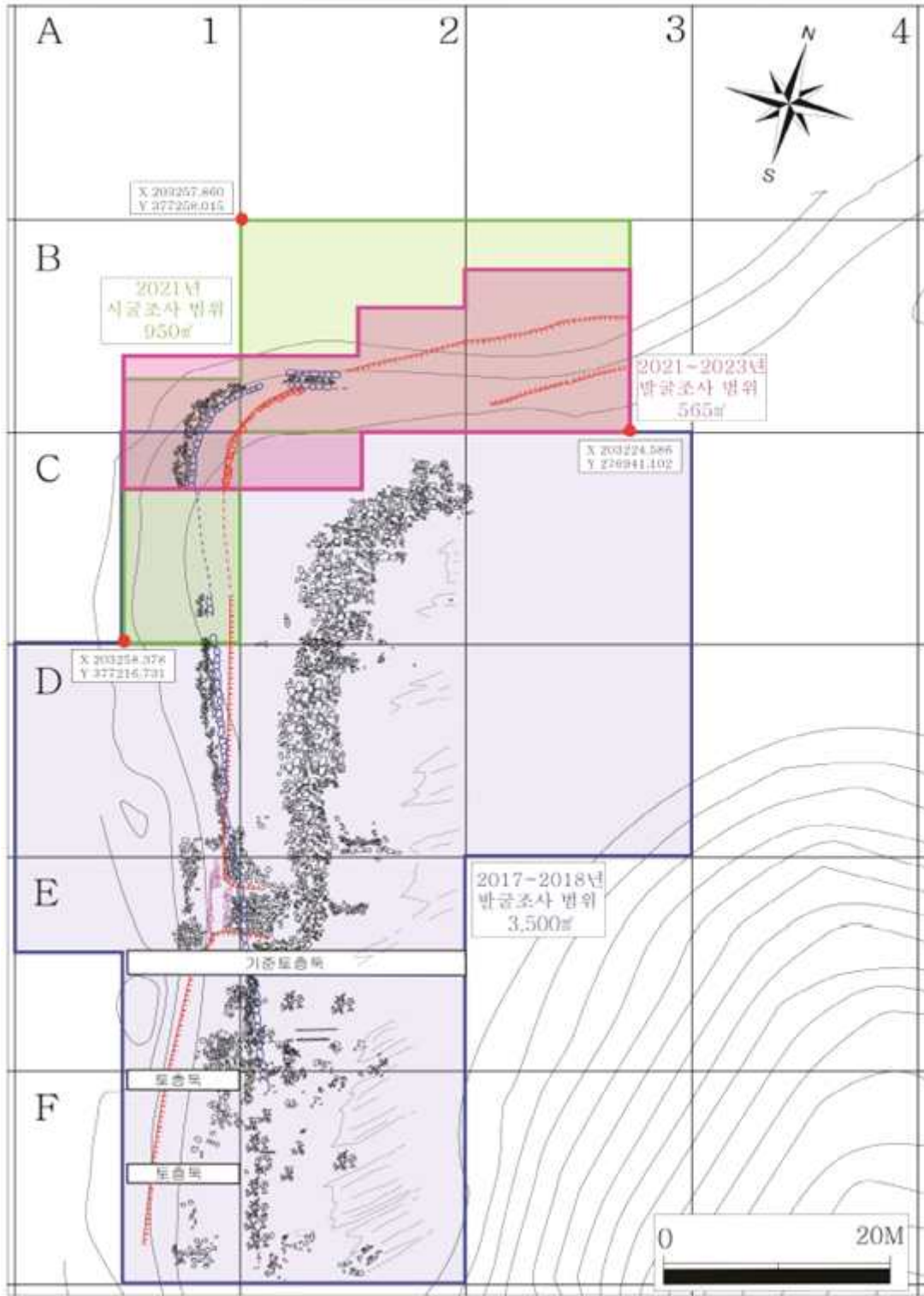
▲ 2017년 3차(좌-서성벽 전경) 및 2018년 4차(우-서문지 우측면) 발굴조사 (익산시,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2020)



▲ 북서모서리구간 조사전경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토성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23)



▲ 북성벽 전경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토성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23)



▲ 2016~2023년도 익산 토성 발굴조사 범위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토성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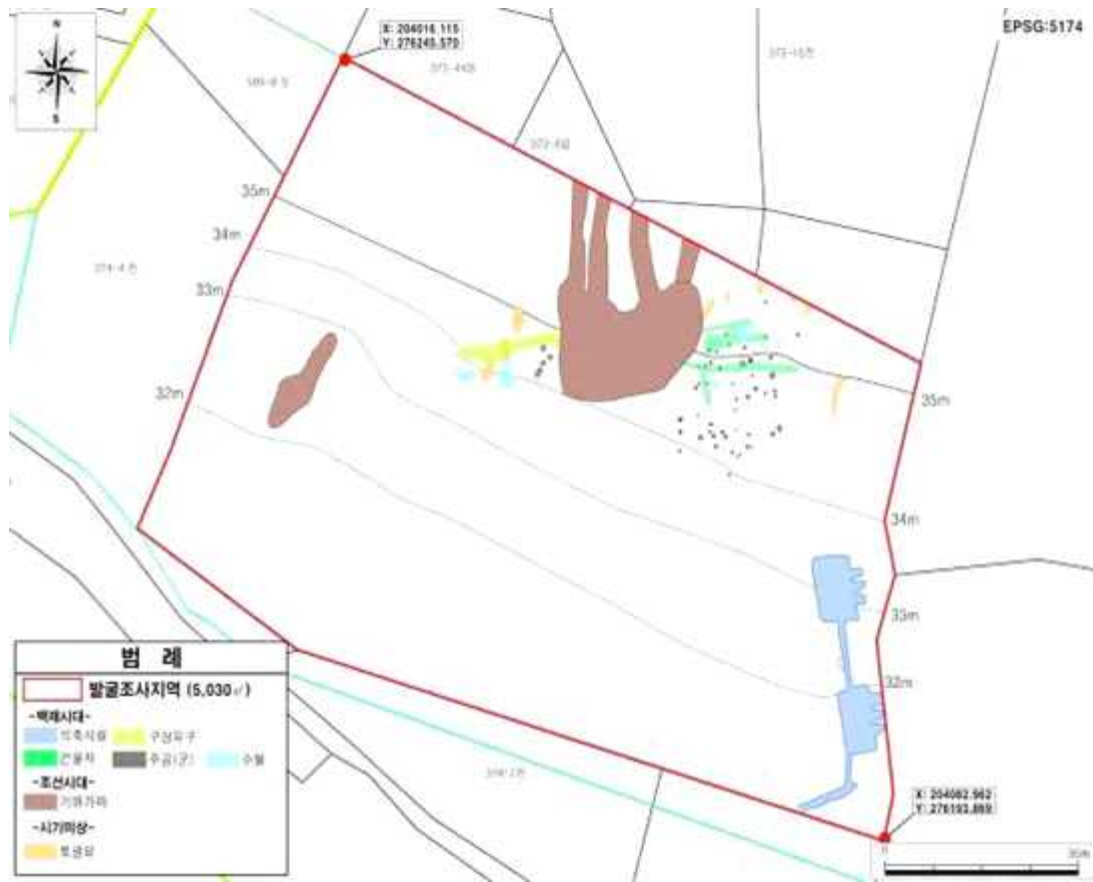
한편 익산 토성 주변에는 남쪽 하단 곡간부 끝에 용샘과 마룻지, 서동 생가터 등 백제 무왕과 관련된 설화가 깃든 유적이 있으며 1980년대 도로 주변에 주유소 등을 건립하기 위해 이 일대에서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백제 기와편과 초석이 확인된 바가 있음.

마룻지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익산군 산천조에서 “마룻지는 오금사 남쪽으로 100여보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서동대왕 어머니의 축실처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권역이 백제 무왕대와 깊은 연관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또한 최근 익산시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기존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만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대형 석축 저온저장시설 2기가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의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익산토성 전경 및 주변유적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익산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2020)



▲익산 傳 서동생가터 유적 유구 분포도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23.03.24.))



▲익산 傳 서동생가터 유적 전경(좌), 傳 서동생가터 유적 내 석축 저온저장고 전경(우)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23.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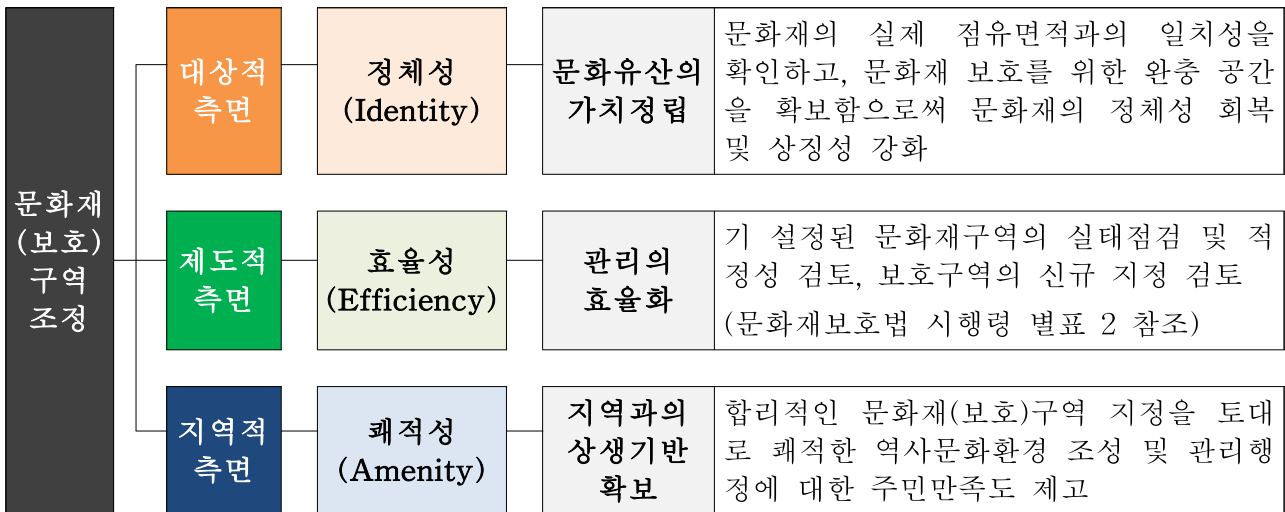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체계적 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익산 토성’이 가진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와 함께 문화재 주변의 환경 개선 및 그 주변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지역 상생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익산 토성’의 내부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도 우수 및 난개발(농막, 비닐하우스 등) 등으로 인한 유적 훼손 우려가 있는 바, 장기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등을 통해 향후 다양하고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기대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따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를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세계유산 및 고도 핵심 유적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익산 토성 보호구역 조정 기본 방향>



### 가. 문화유산의 가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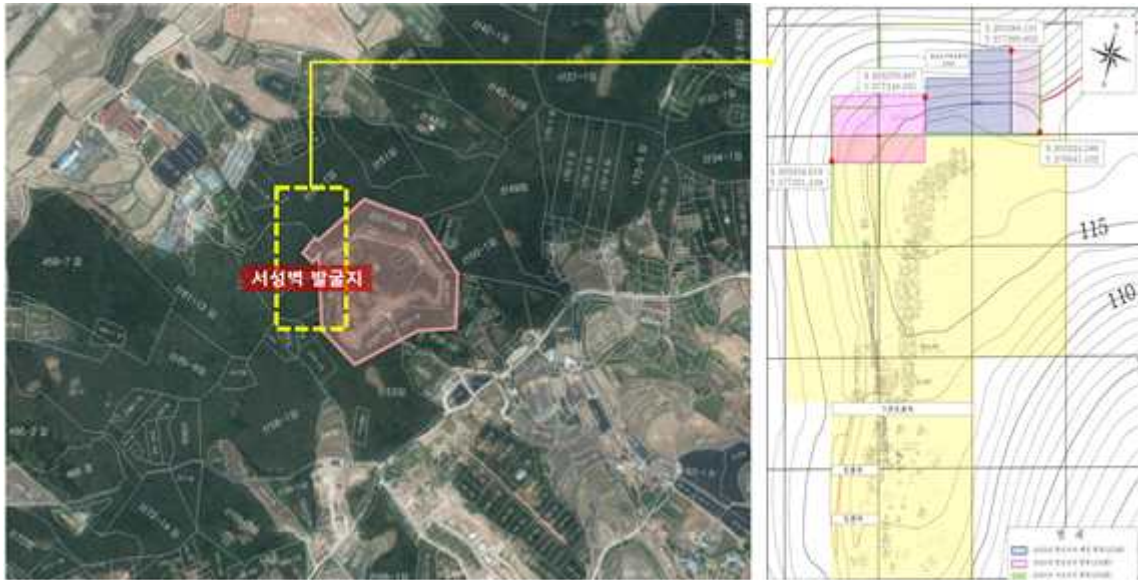
#### ■ 문화재 점유면적과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일치 검토

익산 토성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된 가운데, 2008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재구역이 명시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6년 익산 왕궁리 유적 주변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익산 토성 또한 백제왕도에 자리 잡은 핵심 관방유적으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종합정비 등 보존관리계획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서성벽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재구역 고시도면과 발굴지 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년 진행된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익산 토성 이외에도 인근의 오금사지 및 마룽지와 같은 백제왕도

유적지와와의 일체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통합 보존·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익산 토성

#### 나. 효율적인 관리제도의 마련

##### ■ 법률적 기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보호구역 설정 도모

익산 토성은 지정 분류상 사적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국방과 연관이 있는 성터에 해당됨. 성터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 50m 이내의 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조물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까지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이 해당되고 있음.

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지구 확장 추진 계획으로 인해, 향후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지침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경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의 변경 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21.07.31.WHC/ .21/ 01)

조문	내용
경계의 소폭 변경	<p>163. 소폭 변경이란 유산의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변경을 일컫는다.</p> <p>164. 당사국이 이미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에 대한 소폭 변경을 요청하려면 부록11의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해 2월1일까지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이를 접수해야 한다. <b>사무국은 해당 내용을 소폭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자문기구에 평가를 요청한다.</b> 이후 사무국은 해당 자문기구의 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b>위원회는 변경안을 승인하거나, 해당 경계의 변경이 상당히 경계의 대폭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신규 등재신청 절차가 적용된다.</b></p>
경계의 대폭 변경	<p>165. 당사국이 이미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를 대폭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신규 신청(잠정목록 사전포함 요건 등, 63,65 참조)처럼 제출해야 한다. 재신청 서류는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168항에 제시된 절차와 일정에 따라 1년 6개월의 평가주기에 걸쳐 평가를 받는다. 본 조항은 유산의 확장 뿐 아니라 축소에도 적용된다.</p>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587호, 2020.12.08., 일부개정)

조문	내용
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p>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b>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b>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b>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b>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b>관할 시·도지사</b>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b>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b>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b>하여야 한다.</p>



■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일체적인 관점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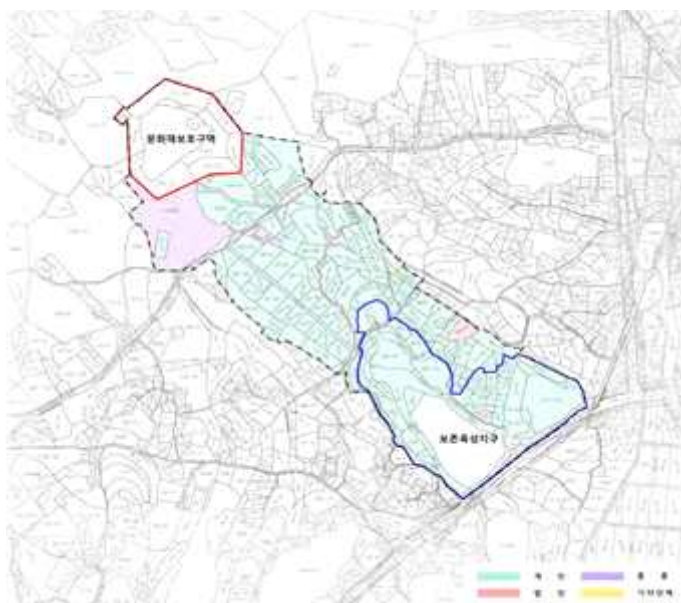
2015년 7월 4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위원회의 39차 회의에서 8곳의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익산 왕궁리유적, 익산 미륵사지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백제역사지구의 확장등재를 위해 익산 토성을 비롯한 인근 문화재의 보존정비계획이 진행되었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익산 토성 보존정비계획은 익산 토성의 발굴조사, 식생정비 뿐만 아니라 서동 생가터와 오금사지, 용샘, 마룽지 등의 분포지역을 특별보존지구로 구별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한편, 익산 고도영역의 역사문화환경의 축을 형성해 왔던 익산 토성의 역사적 가치 규명 등의 깊이 있는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재 복원과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구역의 실태점검 차원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시설 연계, 문화 네트워크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함.

▼ 익산 토성 토지매입 계획

(자료 : 익산시, 익산 백제왕도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6, p.231.)

구분		소유자	필지 수	면적	공시지가
단기	문화재구역	개인	2	988.6	5,773,423
중기	고도지구 (특별보존지구)	개인	111	139,059.0	2,816,746,142
		법인	3	3,729.0	94,550,679
장기	지정구역 외	개인	76	130,166.0	2,067,323,502
		기타단체	1	483.8	4,610,614
		법인	19	2,825.6	42,173,209
		중중	2	2,293.1	33,816,529
	토성 주차장 쪽	개인	34	80,794.3	567,915,258
		중중	1	311,225.5	149,388,000
합계		-	249	391,461.9	5,782,297,356



다. 정체성 회복 및 상징성 강화

■ 백제역사지구 편입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인

현재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운데, 익산 토성은 금마도토성과 더불어 백제 왕궁 인근의 관방유적으로서 익산 고도영역의 역사문화환경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

현재까지 연구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경찬(2015) 등은 크게 익산 왕궁리 유적을 정궁으로 한 “중궁제형”과 금마면을 정궁으로 하는 “북궁제형”으로 구분하여 도성구조를 추정하고 있고 도성의 추정범위는 동측으로 제석사지, 서측으로 익산쌍릉, 남측으로 왕궁리 우물유적, 북측으로 금마도토성 등의 지역까지 추정되고 있음.



▲ 익산 고도범위 추정안 (국토연구원)

▼ 익산 도성의 추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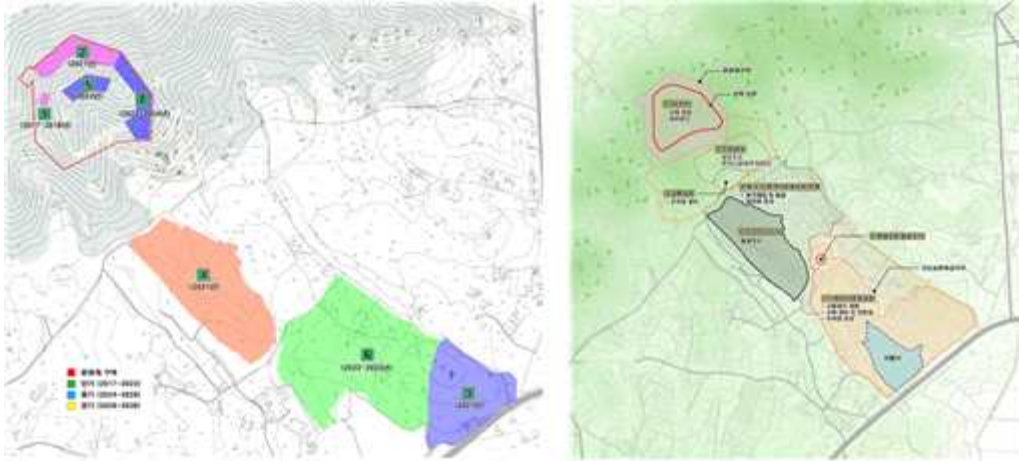
(자료 : 이신호, 백제의 고도, 익산의 조성과 왕궁, 2018, p61, 재편집)

연구자	도성범위	나성
○○○	동-제석사지 서-익산토성, 익산쌍릉 남-왕궁리 우물유적 북-금마도토성, 미륵사지, 사자사지, 연동리사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	동-왕궁 동측 2km(제석사지 포함) 서-왕궁 서측 2km(쌍릉 제외) 남-왕궁 남측 2km(고지형분석결과) 북-익산토성, 금마도토성 앞	축조 가능성 없음
○○○	동-용화산의 시대산, 제석사지 일대 서-미륵산의 오금산, 익산쌍릉 구릉 남-익산천과 부상천 합류지점(공장 남측 2km) 북-금마산과 시대산 연결능선	-

또한 기존에 지정된 익산의 백제역사유적 2개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익산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운데, 크게 1번국도 선형변경 혹은 지하화 사업과 단순정비, 복원정비, 활용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시행계획 참고)

특히, 1번 국도의 노선계획은 18년부터 현재까지 검토된 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회의결과(2020.05.13.)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 협의되고 있음.

따라서, 단일유적의 성격보다 용화산, 미륵산 등의 자연환경을 포함한 광역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옛 백제 도성의 범위와 최대한 일체되는 관점에서 익산 토성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옛 고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해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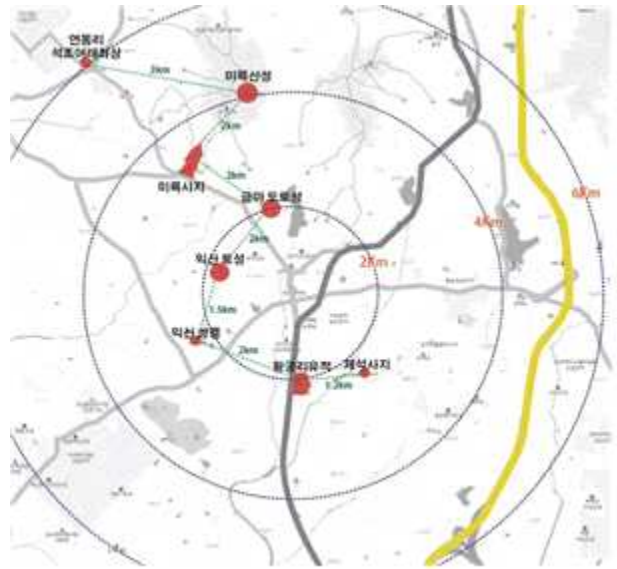


▲ 익산 토성 향후 계획(우: 종합정비계획, 좌: 발굴조사계획)

■ 고도의 영역 내에서 연속적이고 일체적인 경관환경 연계

익산 토성은 인근의 왕궁 유적인 익산 왕궁리유적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 익산 쌍릉, 제석사지 등과 함께 익산 고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도보존육성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와 정체성 규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무엇보다 고도사업의 성패는 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주변 경관과 문화재에 연계된 보호구역의 설정이 요구됨.



▲ 세계유산 및 익산 고도영역 핵심유적 현황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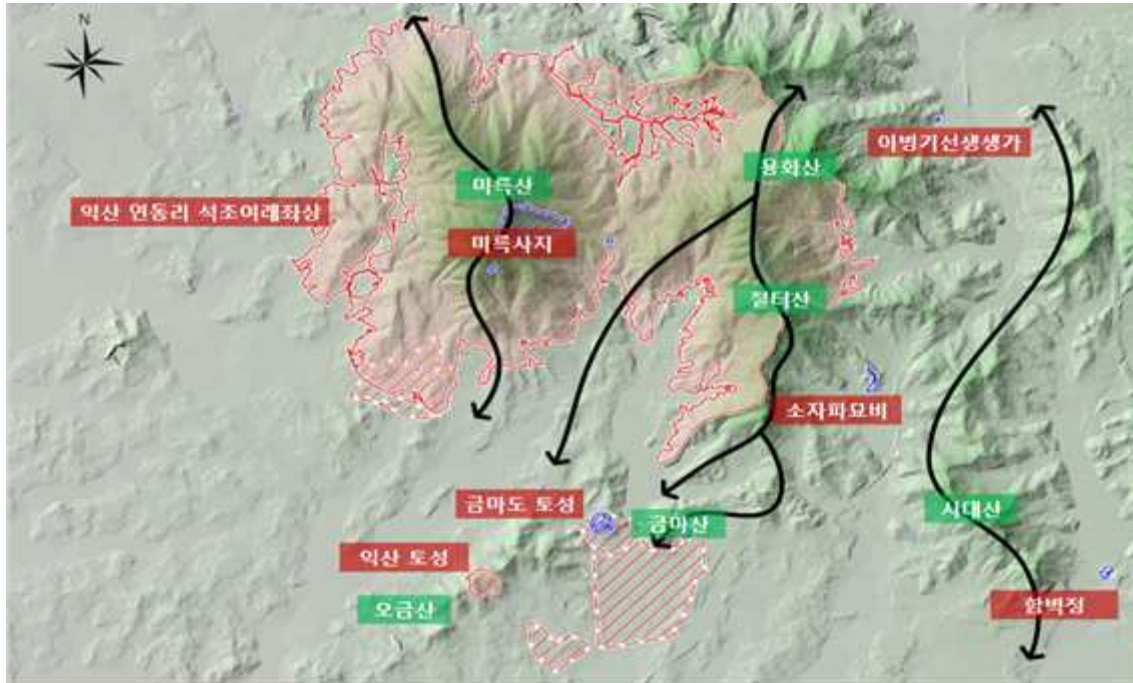
지정면적: 50필지 /113,024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1	금마면 서고도리	536-1	대	515	515		
2		536-2	대	12	12		
3		536-3	대	7	7		
4		536-4	대	150	150		
5		537-1	답	575	575		
6		537-2	도	149	149		
7		537-3	답	1,015	1,015		
8		537-4	전	545	545		
9		537-5	대	298	298		
10		537-6	임	249	249		
11		537-7	임	400	400		
12		537-8	임야	1,323	1,323		
13		537-9	임야	330	330		
14		542	대	927	927		
15		542-1	답	309	309		
16		542-2	대	690	690		
17		542-3	답	1,500	1,500		
18		542-4	답	1,298	1,298		
19		543	답	5,333	5,333		
20		544-12	전	12	12		
21		544-16	임	528	528		
22		596	도	754	754		
23		50-1	임	19,734	5,482		
24		50-3	임	8,572	8,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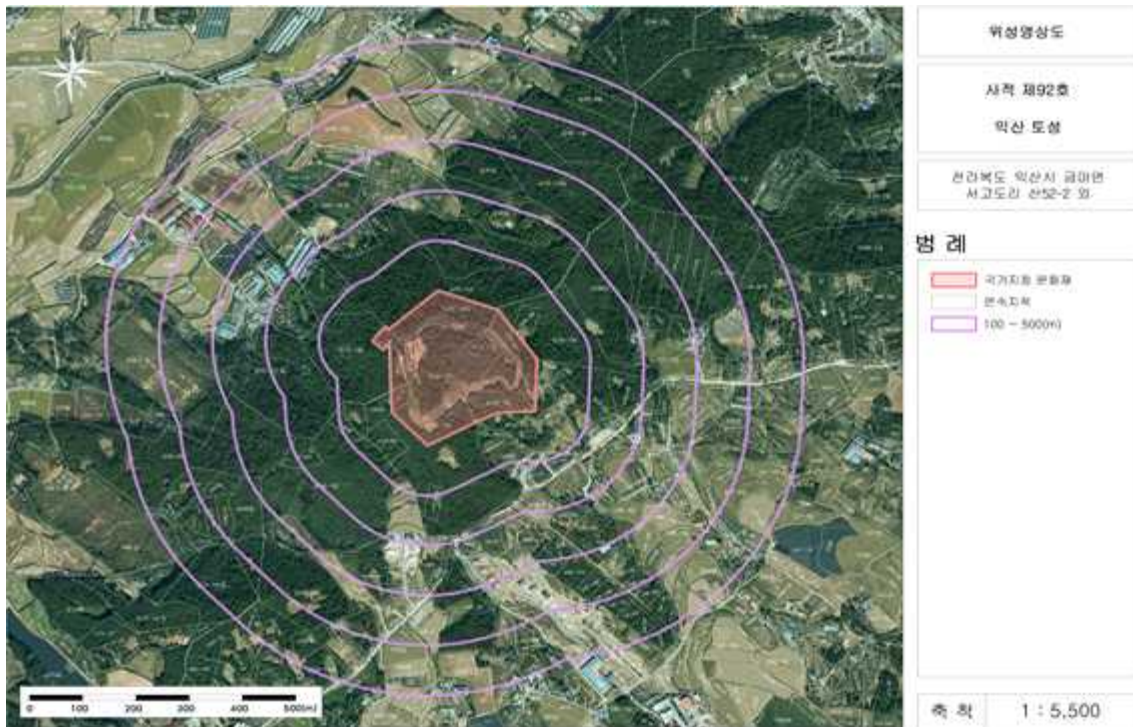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5		50-5	임	6,039	6,039		
26		50-6	임	1,983	1,783		
27		50-10	임	150	150		
28		50-11	임	150	150		
29		50-12	임	1,653	1,653		
30		50-14	임	798	798		
31		50-15	임	667	667		
32		50-16	임	2,348	2,348		
33		50-20	임	131	131		
34		50-21	임	1,033	1,033		
35		50-22	임	421	421		
36		50-23	임	261	261		
37		50-24	임	224	224		
38		50-25	임	1,173	1,173		
39		50-26	임	764	764		
40		50-27	임	661	661		
41		50-28	임	395	395		
42		53	임	30,591	30,591		
43		53-2	임	1,652	1,6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44		53-3	임	3,307	3,307		
45		53-4	임	1,159	1,159		
46		54	임	2,487	2,487		
47		109	구	473	473		
48	금마면 용순리	51	임	14,083	889		
49		57-1	임	48,818	13,586		
50		59-1	임	21,499	9,256		
합계					113,024		

□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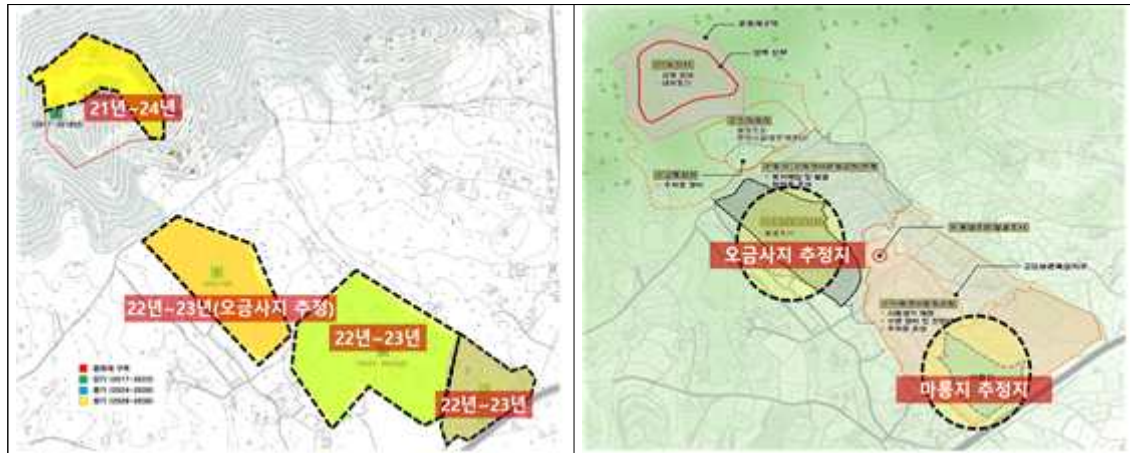


□ 익산 토성 문화재구역



익산 토성 문화재구역(안)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안)



▲ 익산 토성 발굴조사 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6)



가. 항공사진(드론촬영)



익산 토성 근경-1



익산 토성 근경-2(직상)



익산 토성 전경-1(남동측 방향)



익산 토성 전경-2(서측 방향)



익산 토성 원경-1(남동측 방향)



익산 토성 원경-2(남동측 방향)

나. 현황사진



익산 토성 진입로 부근 전경



익산 토성 성벽 상세(진입로 부근)



익산 토성 남서측 성벽 전경



익산 토성 북동측 성벽 및 탐방로



익산 토성 남동측 성벽 및 탐방로



익산 토성 북동측 탐방로 부근 석표



익산 토성 남동측 서동생가터 역사공원(주차장)



서동생가터 마룻지

다. 보호구역 신청지역 포장현황 : 대부분 경작지 및 묘지로 포장도로 형성



보호구역 내 포장도로



보호구역 내 주택지-1



보호구역 내 비닐하우스



보호구역 내 묘지



익산 토성 진입부



익산 토성 주차장 진입부



익산 토성 탐방로-1(남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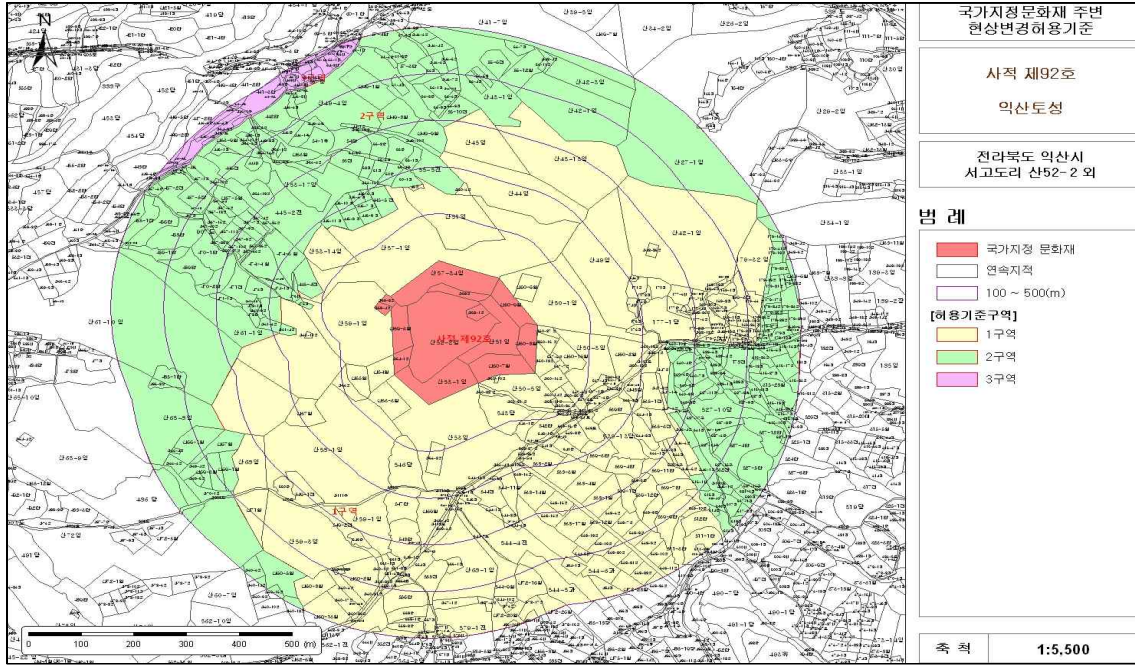
익산 토성 탐방로-2(동측)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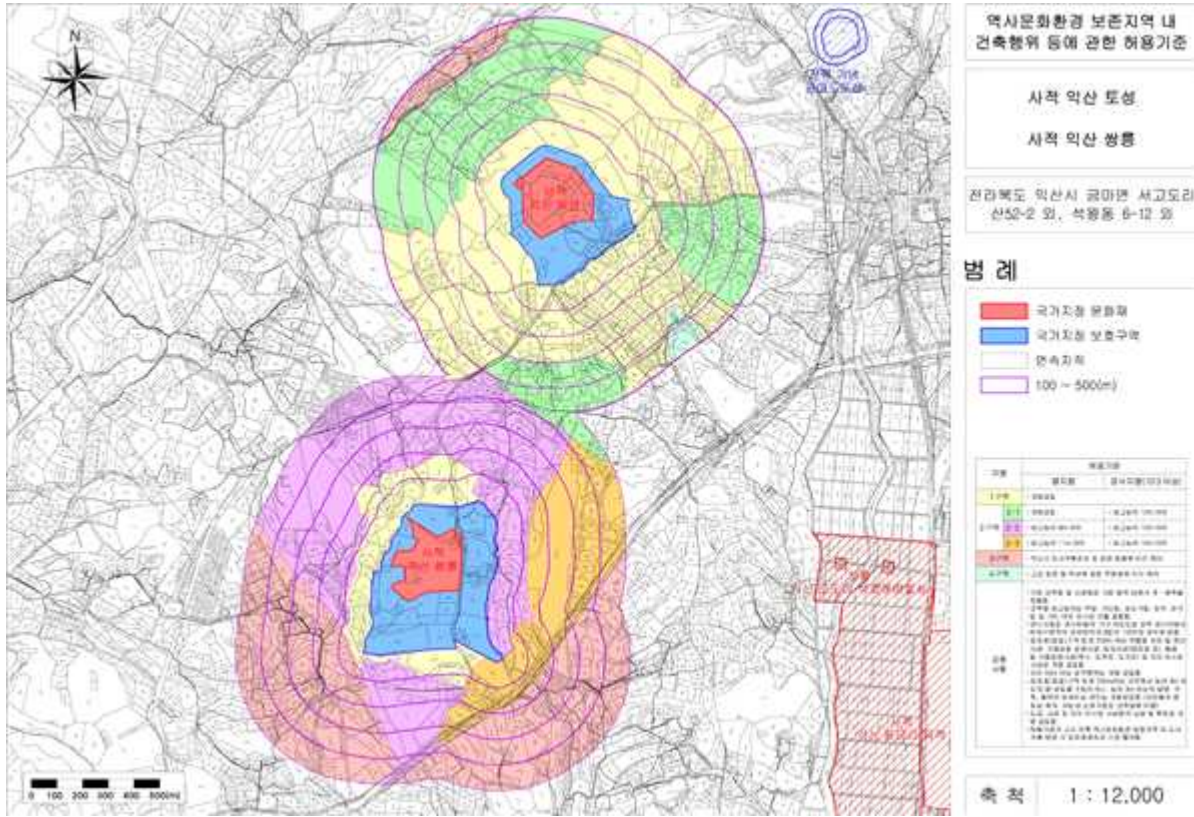
■ 검토의견 : 연접한 국가 사적의 통합고시는 적정하며, 지형과의 일체성이 적은 곳은 일부 허용기준을 완화한 것도 적정한 정도로 판단됨.

○ 익산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문화재청 고시 제2018-139호/18. 10. 19)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는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익산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기본구상

-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 2020.05)

익산 토성은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전반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으로 익산 백제 왕도의 관방유적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으며, 토성의 앞쪽으로는 오금사지로 추정되는 곳과 용샘, 마룻지, 축실지(무왕의 생모 주거지) 등 무왕과 무왕의 어머니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유적지가 있으므로 이들 문화재와 연계된 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익산 토성의 아래쪽에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적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미발굴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익산 토성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이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을 중심으로 정비하되,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주차장)과 진입로 구간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고층 및 정비계획을 진행함.

### 나. 보존 · 관리계획

- 토지매입

현재 익산 토성의 아래쪽에는 다수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원주택들의 존재가 유적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내 2개 정도의 필지는 사유지로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문화재구역 이외에도 문화재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외부 필지에 대한 매입 검토가 필요함.

다만 오금산 정상부 능선을 기준으로 남쪽 및 진입부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이미 민묘(民墓)가 조성되어 있거나 주택이 들어서 있어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그 외에도 익산 토성 남쪽에 위치한 주거지 및 농지의 경우에도, 문화재구역 및 진입로 주변 경관회복을 위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함.

#### ▼ 토지매입 범위

(자료 : 익산시청,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2020)

구분	소유자	필지 수	면적(m <sup>2</sup> )	공시지가(원)
문화재구역	개인	2	988.6	5,773,423
토성 주차장 쪽	개인	4	8450.0	95,093,439
합계	-	6	9438.6	100,866,862





익산 토성 발굴조사 계획도

전라북도 익산시 서고도리 산50-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 토성은 이미 1980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토성 남문지와 성 내부 일부 구간에 대해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익산토성이 백제 무왕대 축조되었으며, 남문지를 비롯한 성벽의 구조 및 축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익산 토성의 남성 벽 부근에서 발견된 무문 수막새기와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그 연관성에 대한 학술 연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익산 토성은 과거 보덕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는데, 이는 고구려의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안승이 현재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에 자리 잡은 뒤 세웠던 보덕국에 속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므로 구체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후대의 기록에서 현재의 익산토성을 보덕성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보덕국과 익산 토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후에도 익산 토성 내 정비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북성벽, 서성벽의 구조 및 연결 양상과 서문지의 구조, 북성벽 내의 내성벽의 존재들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축성기법을 비롯하여 북성벽과 동성벽의 구조 및 문지 유무, 남문지 계단 시설 및 배수시설 여부, 성내 평탄지 건물지 유구 등의 발굴조사가 미진하거

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굴조사가 추 후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백제 왕도의 중요한 관방 유적으로서 익산 토성의 가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성곽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이외에도 이를 밝히기 위한 관련 학술대회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사업기간 : 2020년~2030년
- ▶ 조사면적 : 문화재 지정면적 62,412㎡ 및 주변

▪ **정비 계획**

유적지는 현재 내부와 일부 외곽의 대나무 및 잡목의 밀식으로 인해 지형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적 보존을 위한 수목정비를 비롯하여 원활한 탐방을 위한 유적지 내·외부의 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함.

< 유적지 내 정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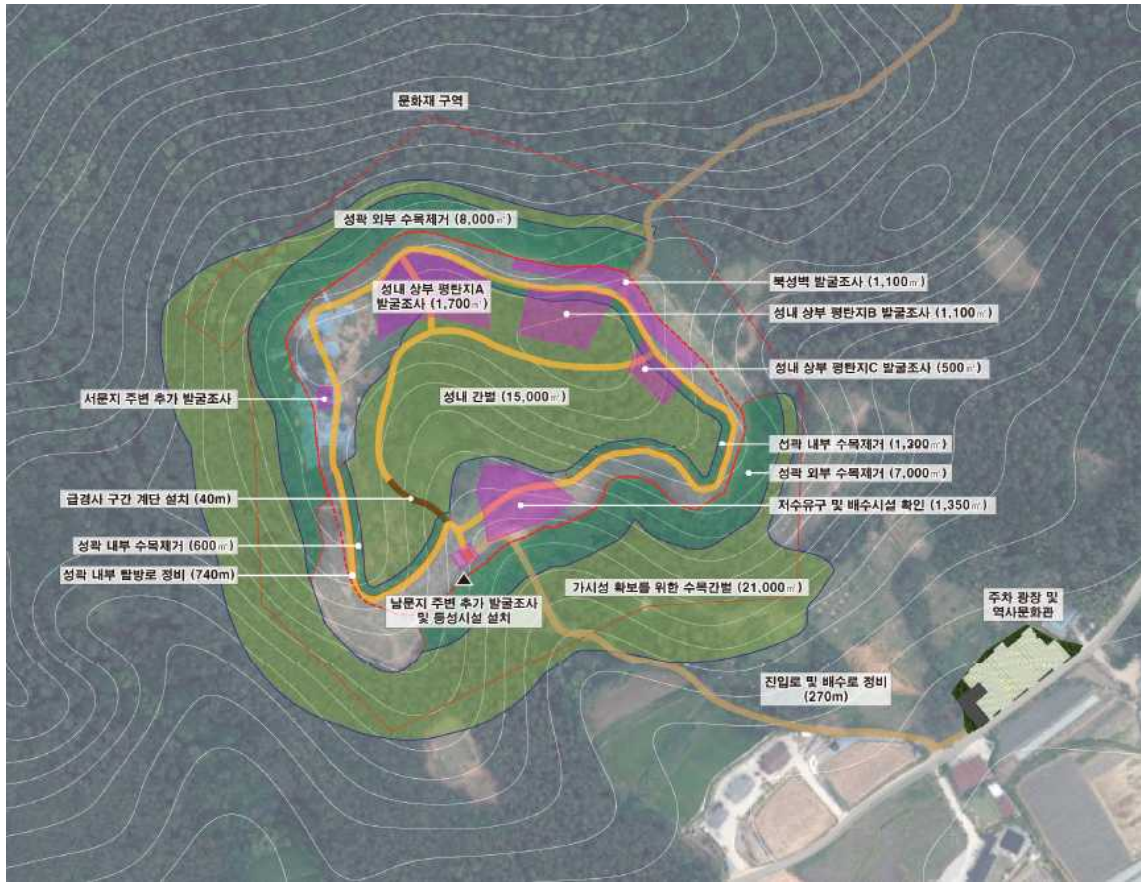
- 유적을 보존을 위해 성벽과 그 주변에 자생하는 수목 및 이끼류 제거
- 노출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조치
- 일부 성벽은 성곽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노출
- 진입로 내 배수로 설치 및 훼손된 탐방로 정비
- 남문지 중심으로 등성시설 설치 및 잔존 성벽 중심으로 탐방로 정비

< 유적지 외 정비 >

- 문화재 안내판 정비
- 현재 주차장 위치에 소규모의 역사문화관 건립
- 주차광장 및 방문객 센터를 비롯한 기타 편의시설 정비

▼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시간적 범위

1단계 정비	2단계 정비	3단계 정비
유적의 보존 및 가치 제고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학술 조사 연구 집중	발굴지 정비 및 활용과 관련된 편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문지 등 추가 발굴조사</li> <li>- 성벽 보존을 위한 수목 정비</li> <li>- 가시권 확보 → 성벽 외부 간벌</li> <li>-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성벽 및 서문지 추가조사</li> <li>- 성내 상부 평탄지 발굴조사</li> <li>- 북성벽 발굴조사</li> <li>- 익산 토성 학술연구 → 국제학술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벽 노출 정비</li> <li>- 남문지 정비</li> <li>- 탐방로 정비</li> <li>- 편의시설 및 안내·방재 시설 정비</li> <li>- 발굴지 정비</li> </ul>



익산 토성 종합정비계획



익산 토성 역사문화관 계획안

## 9. 종합의견

- 본 건은 익산 토성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익산 토성은 남측으로 금마를 향하고 좌우로 임야의 지형이 현재도 연결되어 있다.
- 현 상황에 익산 토성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사유지를 통과하여 진입하며, 남측 능선으로 이어진 임야는 개발의 압력이 있다.  
금마를 향한 경관 축에는 오금사지 추정터가 있으며, 서동의 생가터라 추정되는 마룻지가 있다.
- 현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구역은 익산시에서 익산 토성의 발굴조사, 식생정비 뿐만 아니라 서동 생가터와 오금사지, 용샘, 마룻지 등의 분포지역을 고도특별보존지구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익산은 고도로서 도성의 범위는 동측으로 제석사지, 서측으로 익산쌍릉, 남측으로 왕궁리 유적, 북측으로 금마도 토성 등의 지역까지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옛 백제 도성의 범위와 최대한 일체되는 관점에서 익산 토성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선제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이렇게 볼 때, 현 지정 신청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2. 고성 송학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13호분에 연접한 「고성읍 기월리 417-2」 1필지, 390㎡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 : 「고성읍 기월리 417-2」 (1필지, 390㎡)

기존 지정면적		금회 추가		조정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59,012㎡	8,313㎡	390㎡	-	59,402㎡	8,313㎡	

- (4) 추가 사유
  - 송학동 고분군 13호분 조사 및 정비·복원 공사를 통해 해당 고분의 실제 범위가 지정된 문화재구역보다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 417-2번지는 13호분 봉토조성을 위해 축조된 고분 기저부의 일부로서 확대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1.1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 중 13호분이 연접 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송학동 고분군의 특성상 고분 주변으로 분구가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1부.

## 고성 송학동 고분군(固城 松鶴洞 古墳群)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11.14.(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固城 松鶴洞 古墳群)
- 현 고성 송학동 고분군(固城 松鶴洞 古墳群)의 추가지정 구역은 고분에 연접한 일체화된 지형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지정 명칭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固城 松鶴洞 古墳群)”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성만과 당항만이 들어오던 중심부에 위치한 고성분지, 현재 고성읍의 중심에 위치한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소가야시기 중심 고분군으로 총 18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5세기~6세기 가야후기에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며 4~5세기대의 목곽묘도 확인된 점으로 들어 그 이전부터 소가야세력의 중심 묘역으로 추정된다.  
고분은 봉분을 축조한 뒤 상부를 굴토하여 석곽(석실)을 구축하는 분구묘형식이며 1999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축조양식과 유물을 통해 고분축조세력이 후기 가야 대외교류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상구역은 고성 송학동고분군 13호분 동쪽 구릉부로 고분군의 지형의 일부가 현재 개인필지인 고성읍 기월리 417-2번지로 과거부터 민가와 인접한 구간으로 필지의 일부가 송학동 13호분 기저부 및 지형의 연장선상이다. 현재 지정구역이 아니며 최근 집중호우로 지속적인 토사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난을 대비한 별다른 정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분 지형의 대부분(390㎡)이 개인소유지로 지속적인 매입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1999년~2021년까지 3차례 발굴조사하였는데, 봉토를 먼저 성토 후 이를 굴착하여 매장 시설을 구축한 분구묘형식으로 내산리·울대리고분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묘제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 중심세력의 고분축조법으로 추정된다.
- 고분군은 누에고치모양의 주구(잠형주구 혹은 단절형주구 등으로 불림)를 두르고 정지층을 다진 뒤 그 상부를 서로 성분이 다른 점토덩어리를 규모나 출토 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소가야권의 최상위 집단에 의해 축조

된 것으로 보이며 신라·백제·왜 등과 다양한 교류 관계 속에서 해상의 관문이며 소가야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고성 송학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 일대가 오래전부터 도굴로 인하여 유적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유적 파괴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9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삼강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총 3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고분(1호분)의 조성 이전단계의 소수 목곽묘, 다곽식 구조를 갖춘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묘 등을 매장시설로 고자국으로 비정되는 고성 중심지역의 장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어 사람들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 □ 특징

- 1) 가야권역 유일한 ‘분구묘’의 축조방식을 보인다.
- 2) 다곽식 묘제로 수혈식석곽에서 횡혈식 석실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
- 3) 소가야의 전형적인 토기들 외에도 백제 지역과 대가야, 아라가야, 신라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토기 그리고 왜계 유물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인적·물적 교류를 수행하며 발전한 고자국 혹은 고자미동국 등으로 비정되는 소가야 정치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경남 고성읍 송학리와 기월리 일원에 분포하는 사적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로 비정되는 고성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왜계석실 및 백제, 신라, 대가야계 유물등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 삼국시대 소가야연맹체의 핵심정치체 중 하나인 고자국의 지배층 고분군으로, 소가야 연맹체(고자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체)의 핵심적인 역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 고성군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고성 송학동고분군 13호분 조사 및 정비복원에서 사적 지정구역보다 실제 고분 분포범위가 넓은걸 확인하였으나 과거에 지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확대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해당구역은 13호분 봉토조성을 위해 축조된 고분 기저부의 일부로서 반드시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하여 유적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당구역은 민가와 인접한 구간으로서 경관, 정비복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히 2023년 6~7월사이의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침출) 등이 확인되어 고성 송학동고분군 13호분 봉분과 인접 민가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 해당구역은 개인 필지로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토사의 유출에 대한 경사면 정비 등)가 어려워 2013년도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재까지 예초 등의 기초적인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해당구역은 2구역으로 건축 등의 제한을 받아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들로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하며, 확대지정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민들의 행복권 추구, 나아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활성화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1필지/3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기월리	417-2	전	390	390		
계				390	390		

위 치 도



지형도면 (고성 송학동 고분군)



지정구역 추가 지정 요청구역(서→동)



항공사진 원경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 대상구역(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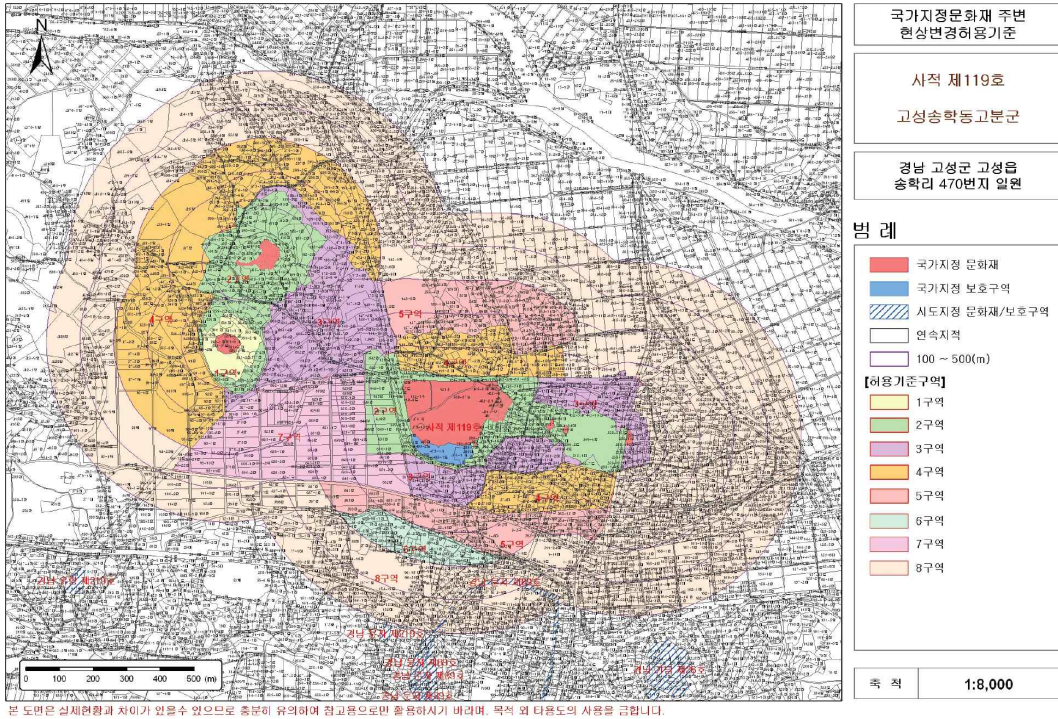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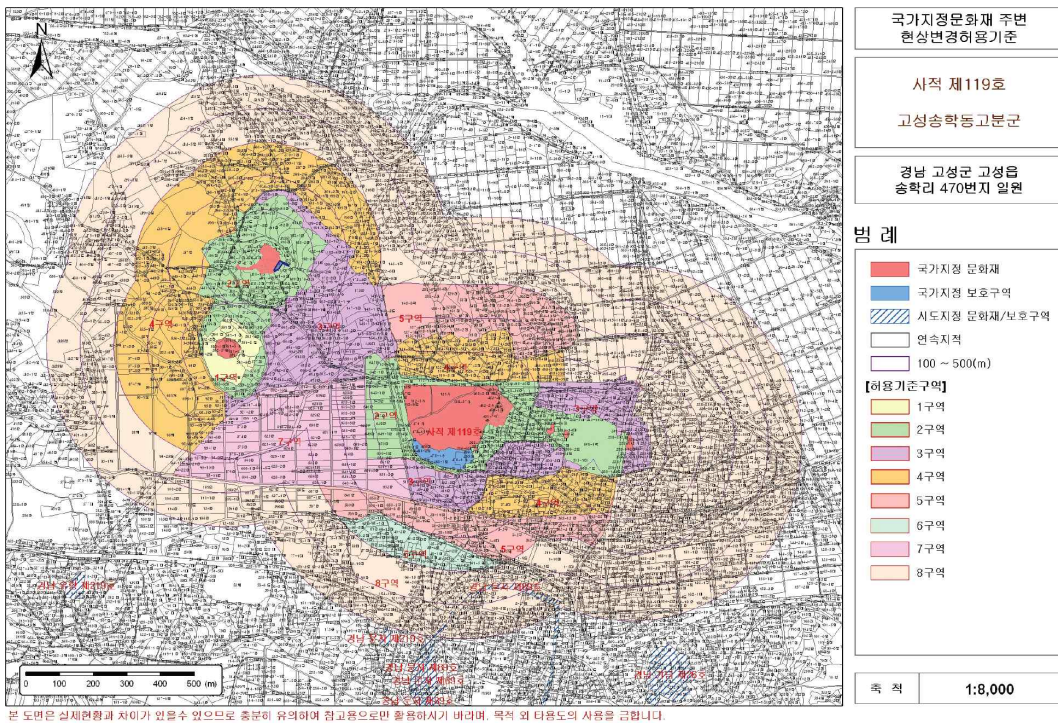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현 송학동 고분군 13호분이 2구역에 연접하므로, 문화재구역이 늘어나더라도 연접 2구역을 유지하여 허용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현) 고성 송학동 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구역 추가 지정 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정비·활용 계획(안)																																																																																																			
사업개요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 고성 송학동고분군 종합정비 사업</li> <li>○ 위 치 : 경남 고성군 송학리 470번지 일원</li> <li>○ 면 적 : 67,325㎡(46필지)</li> <li>○ 사업기간 : 종합정비계획 문화재청 협의 중(인가 대기중)</li> <li>○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부지매입, 전시관 건립, 유적·탐방로·식생정비등</li> <li>○ 사 업 비 : 종합정비계획 문화재청 협의 중(인가 대기중)</li> </ul>																																																																																																		
그간 보존·정비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 ~ 2023 현재 : 토지매입 33필지(64,298㎡)</li> <li>○ '15. 12. : 종합정비계획 수립</li> <li>○ '18. 05. : 확대지정 추가 2필지(625㎡)</li> <li>○ '19. 01.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잠정목록 등재</li> <li>○ '20. 10.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시작</li> <li>○ '23. 04. : 확대지정 추가 11필지(2,402㎡)</li> <li>○ '23. 09. : 종합정비계획 인가</li> </ul>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 송학동 고분군	보호구역																																																																																																	
	현 문화재 지정 구역	보호구역 지정 후 대상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 보호구역으로 관리계획																																																																																																	
종합정비계획 안에 따른 문화재 학술조사, 정비계획	현 문화재 지정구역 내 문화재 학술조사 계획 없으며, 유구·식생·탐방로 등 정비 계획 수립 완료	토지매입 완료 후 문화재 시굴조사 및 사면부 복원정비 예정																																																																																																	
문화재 활용 및 홍보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활용방안(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자원으로의 기능 강화</li> </ul> </li> <li>주변 자원과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가야왕도 복원(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 동외동패총, 고성 만림산토성, 남산토성 등)을 통한 중요 유적 등과 연계하여 소가야 역사·환경 탐방코스 마련</li> </ul> </li> <li>기타 연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소가야왕도 탐방 활성화</li> </ul> </li> </ol>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단기 및 장기)	<p style="text-align: center;"><b>■ 사업비 총괄표</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사업기간</th> <th>사업구분</th> <th>수량</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단기계획 (2024-2028년)</td> <td>학 술 조 사 (시·발굴조사)</td> <td>4식</td> <td>749,849</td> <td>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 계산</td> </tr> <tr> <td>토 지 매 입</td> <td>4식</td> <td>10,846,972</td> <td>7호분 및 14호분 주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등</td> </tr> <tr> <td>고 분 정 비</td> <td>3식</td> <td>4,336,200</td> <td>기존 시설이 설치된 경우 일부 항목만 설치</td> </tr> <tr> <td>유 적 정 기 정 비</td> <td>3식</td> <td>2,520,000</td> <td>조사 후 매년</td> </tr> <tr> <td>교 육 시 설</td> <td>1식</td> <td>7,290,000</td> <td>노출전시관</td> </tr> <tr> <td>휴 게 시 설</td> <td>1식</td> <td>5,493,600</td> <td>14호분 주변 역사유적공원</td> </tr> <tr> <td>방 제 시 설</td> <td>3식</td> <td>1,188,000</td> <td></td> </tr> <tr> <td>배전설비 이중화공사</td> <td>1식</td> <td>2,037,450</td> <td></td> </tr> <tr> <td><b>소계</b></td> <td></td> <td></td> <td><b>34,716,766</b></td> <td>경관조명 설치 등</td> </tr> <tr> <td rowspan="6">장기계획 (2029-2033년)</td> <td>토 지 매 입</td> <td>1식</td> <td>2,627,915</td> <td></td> </tr> <tr> <td>고 분 정 비</td> <td>1식</td> <td>1,920,600</td> <td></td> </tr> <tr> <td>유 적 정 기 정 비</td> <td>5식</td> <td>7,000,000</td> <td>매년</td> </tr> <tr> <td>교 육 시 설</td> <td>1식</td> <td>5,000,022</td> <td>방문자센터</td> </tr> <tr> <td>휴 게 시 설</td> <td>1식</td> <td>5,493,600</td> <td>15·16호분 주변</td> </tr> <tr> <td>방 제 시 설</td> <td>1식</td> <td>396,000</td> <td></td> </tr> <tr> <td>고분 활용프로그램 개발</td> <td>1식</td> <td>245,344</td> <td>매년</td> </tr> <tr> <td><b>소계</b></td> <td></td> <td></td> <td><b>22,683,481</b></td> <td></td> </tr> <tr> <td><b>합계</b></td> <td></td> <td></td> <td><b>57,400,247</b></td> <td></td> </tr> <tr> <td>설계비</td> <td></td> <td></td> <td>4,018,017</td> <td>공사비의 7%</td> </tr> <tr> <td>감리비</td> <td></td> <td></td> <td>1,722,007</td> <td>공사비의 3%</td> </tr> <tr> <td><b>총합계</b></td> <td></td> <td></td> <td><b>63,140,271</b></td> <td></td> </tr> </tbody> </table>		사업기간	사업구분	수량	금액	비고	단기계획 (2024-2028년)	학 술 조 사 (시·발굴조사)	4식	749,849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 계산	토 지 매 입	4식	10,846,972	7호분 및 14호분 주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등	고 분 정 비	3식	4,336,200	기존 시설이 설치된 경우 일부 항목만 설치	유 적 정 기 정 비	3식	2,520,000	조사 후 매년	교 육 시 설	1식	7,290,000	노출전시관	휴 게 시 설	1식	5,493,600	14호분 주변 역사유적공원	방 제 시 설	3식	1,188,000		배전설비 이중화공사	1식	2,037,450		<b>소계</b>			<b>34,716,766</b>	경관조명 설치 등	장기계획 (2029-2033년)	토 지 매 입	1식	2,627,915		고 분 정 비	1식	1,920,600		유 적 정 기 정 비	5식	7,000,000	매년	교 육 시 설	1식	5,000,022	방문자센터	휴 게 시 설	1식	5,493,600	15·16호분 주변	방 제 시 설	1식	396,000		고분 활용프로그램 개발	1식	245,344	매년	<b>소계</b>			<b>22,683,481</b>		<b>합계</b>			<b>57,400,247</b>		설계비			4,018,017	공사비의 7%	감리비			1,722,007	공사비의 3%	<b>총합계</b>			<b>63,140,271</b>	
사업기간	사업구분	수량	금액	비고																																																																																															
단기계획 (2024-2028년)	학 술 조 사 (시·발굴조사)	4식	749,849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 계산																																																																																															
	토 지 매 입	4식	10,846,972	7호분 및 14호분 주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등																																																																																															
	고 분 정 비	3식	4,336,200	기존 시설이 설치된 경우 일부 항목만 설치																																																																																															
	유 적 정 기 정 비	3식	2,520,000	조사 후 매년																																																																																															
	교 육 시 설	1식	7,290,000	노출전시관																																																																																															
	휴 게 시 설	1식	5,493,600	14호분 주변 역사유적공원																																																																																															
	방 제 시 설	3식	1,188,000																																																																																																
	배전설비 이중화공사	1식	2,037,450																																																																																																
<b>소계</b>			<b>34,716,766</b>	경관조명 설치 등																																																																																															
장기계획 (2029-2033년)	토 지 매 입	1식	2,627,915																																																																																																
	고 분 정 비	1식	1,920,600																																																																																																
	유 적 정 기 정 비	5식	7,000,000	매년																																																																																															
	교 육 시 설	1식	5,000,022	방문자센터																																																																																															
	휴 게 시 설	1식	5,493,600	15·16호분 주변																																																																																															
	방 제 시 설	1식	396,000																																																																																																
고분 활용프로그램 개발	1식	245,344	매년																																																																																																
<b>소계</b>			<b>22,683,481</b>																																																																																																
<b>합계</b>			<b>57,400,247</b>																																																																																																
설계비			4,018,017	공사비의 7%																																																																																															
감리비			1,722,007	공사비의 3%																																																																																															
<b>총합계</b>			<b>63,140,271</b>																																																																																																
기타 참고사항																																																																																																			

## 9. 종합의견

- 본 건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13호분 북측 연접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고성 송학동 고분의 특징은 봉분을 축조한 뒤 상부를 굴토하여 석곽(석실)을 구축하는 분구묘 형식으로 봉분의 외곽 일정 범위까지 유구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 현 13호분 북측에는 민가가 연접하여 있으며, 13호분 정비시에 민가의 사유지를 점유하여 문화재정비가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송학동 13호분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고성읍 기월리 417-2)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3.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등)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지번을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하고 합리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 1985.02.23.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일원
- (3) 신청내용
  - 지번 현행화(분할, 합병, 누락 등) : 85필지(28,834㎡)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누락필지추가	6	12,169	11,975	기고시 면적과 상이
등록추가	15	(216)	(216)	기고시 면적과 상이
분할추가	47	309	309	기고시 면적과 상이
신규등록	3	3,850	3,850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제외	(4)	(1,734)	(1,734)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합병말소	(10)	0	0	
면적상이		10,829	9,481	기고시 면적과 상이
면적정정		(6,071)	(1,269)	기고시 면적과 상이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 지번 현행화 포함

구분	기존 지정면적		금회 신청 면적				조정 후 면적*	
			추가 지정 면적		해제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74,928
문화재구역	2,314	25,439,329	84	785,847	677	1,170,433	1,795	25,054,743

#### (4) 조정 사유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05./문화재위원 ○○○, ○○○, ○○○)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괄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된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료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의 지정(해제) 조사보고서 1부.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12. 05.(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2. 문화재 명칭

-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남산 일원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장소다. 경주 남산은 경주시의 남쪽에 솟아오른 산으로, 금오산(金鰲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쪽에 위치한 금오산과 북쪽에 위치한 고위산(高位山) 사이를 연결하는 산과 계곡 일대를 남산이라고 통칭한다. 금오산의 높이는 466m이고, 고위산의 높이는 495m이다. 남북의 길이는 약 8km, 동서의 너비는 약 4km이다. 지형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 남산은 산등성이 대부분은 화강암의 암반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화강암 풍화토(일명 마사토)로 되어 있다.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구분되는데, 동남산 방향은 경사가 급하고 사면의 길이가 짧은 반면, 서남산 방향은 동남산 방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사면의 길이가 길다. 동남산과 서남산에는 제각기 16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도 2개의 계곡이 있어 남산에는 모두 34개의 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 경주 남산 일원은 마치 불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가 신라에서 크게 융성하면서 남산일대는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조각이 곳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 유물과 유적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산을 경배하는 숭산신앙(崇山信仰)과 암석을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는 암석신앙(巖石信仰)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 『삼국유사』에는 남산에서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성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까닭에 남산에 얽힌 전설이 많은 편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남산 기슭의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남산의 산신이 나타나 헌강왕에게 신라의 멸망을 경고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보물), 경주 포석정지(사적), 경주 남산신성(사적) 등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유산 465개(국가지정 25개, 시·도지정 15개, 비지정 425개)가 남산에 위치한다.

- 경주 남산 일원은 1985년 02년 23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 되어왔던 곳이다.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불교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들이 남아있어 신라문화의 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주 남산 일원 도시계획



경주 남산 일원 위성사진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의 오악 중 북악이자, 사령지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왔던 장소이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1280년경) 편찬된 『삼국유사』 권제1 경주시 남쪽에 위치한 남산(南山)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의 산이다.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봉(金鰲峰), 466m과 남쪽의 고위봉(高位峰), 494m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과 계곡 전체를 남산이라 한다. 금오산(金鰲山)은 산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금 거북이(또는 자라)가 엮드린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라의 사령지(四靈地)로 4곳의 영험한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랏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강 왕대에는 남산의 산신(山神)이 나타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다는 전설도 있다. 이는 남산이 그만큼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진평왕대에 남산신성(南山新城)이나 고허성(高墟城)과 같은 산성을 쌓은 것을 보면 방어에 요충지 역할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가의 큰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자 왕족 또는 귀족들이 다녀가는 일상적인 공간 그리고 종교 활동을 벌이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남산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을 비롯하여 나정(蘿井), 남산신성(南山新城), 포석정(鮑石亭)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흩어져 있다. 남산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남산에 소재한 여러 유적에 대

해서는 개인 연구자와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 또는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은 산성터(山城址) 4개소, 절터(寺址) 150곳, 석불(石佛) 129구, 석탑(石塔) 99기, 석등(石燈) 22기 등으로 다양하다.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 5.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근거기준

### □ 조정 필요성

- 발굴 및 정비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최초 지정 1985년으로부터 38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현행화 필요
- 최초 지정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 기존 문화재구역 내 자연마을 및 주거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현실 반영 필요

### □ 조정 기준

\* 조정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구분

#### ○ 추가 지정 기준

- 발굴조사 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1구역, 도당토성)
- 정비목적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10구역, 열암곡 마애불 동쪽)
- 기존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4구역, 9구역)
  - 매장문화재 폐사지로 설정(4구역)   · 매장문화재 청동기유적(9구역)

#### ○ 해제 기준

- 기존 마을 및 마을 인근 전, 답, 대지의 지목(2구역, 3구역, 5구역~8구역, 12구역)
  -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지역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구역, 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 주거지와 농경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인근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개별심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례(3구역)
  - 경관저해여부를 고려하여 제외
  -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는 곳을 참고하여 제외
- 남산 내 문화재(도지정,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가 없는 지역(11구역)
-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통일전(13구역) 및 화랑교육원(14구역))

## 6. 조정 대상 및 범위

###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 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 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해 해제 검토가 필요함

□ 기 고시 분할 및 합병 조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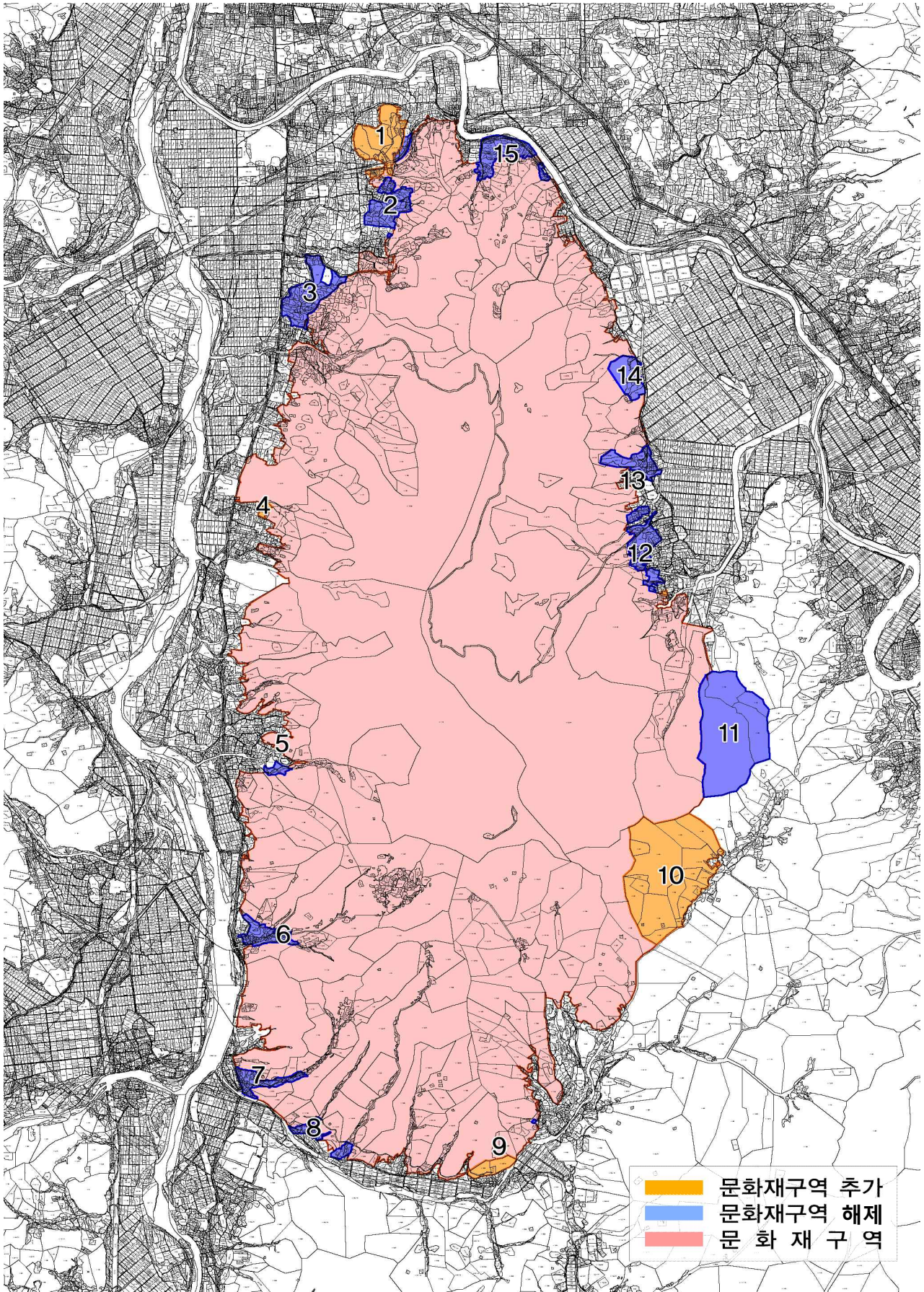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5-6번지 일원(※ 상세 목록 첨부 참조)
- 신청 면적 : 85필지(28,834㎡)
- 신청 사유 : 既 고시에서의 누락필지, 등록·분할 추가, 신규 등록 등으로 정정 필요
- 신청내용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누락필지추가	6	12,169	11,975	기고시 면적과 상이
등록추가	15	(216)	(216)	기고시 면적과 상이
분할추가	47	309	309	기고시 면적과 상이
신규등록	3	3,850	3,850	기고시에서 면적 증가
제외	(4)	(1,734)	(1,734)	기고시에서 면적 감소
합병말소	(10)	0	0	
면적상이		10,829	9,481	기고시 면적과 상이
면적정정		(6,071)	(1,269)	기고시 면적과 상이

□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66 일원(※ 상세 목록 첨부 참조)
- 신청 면적 : 84필지(785,847㎡)
- 신청 사유 : 발굴 및 정비 등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
- 신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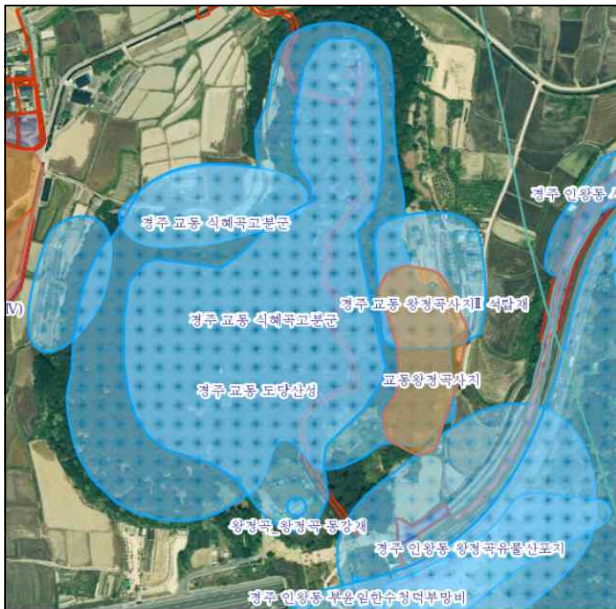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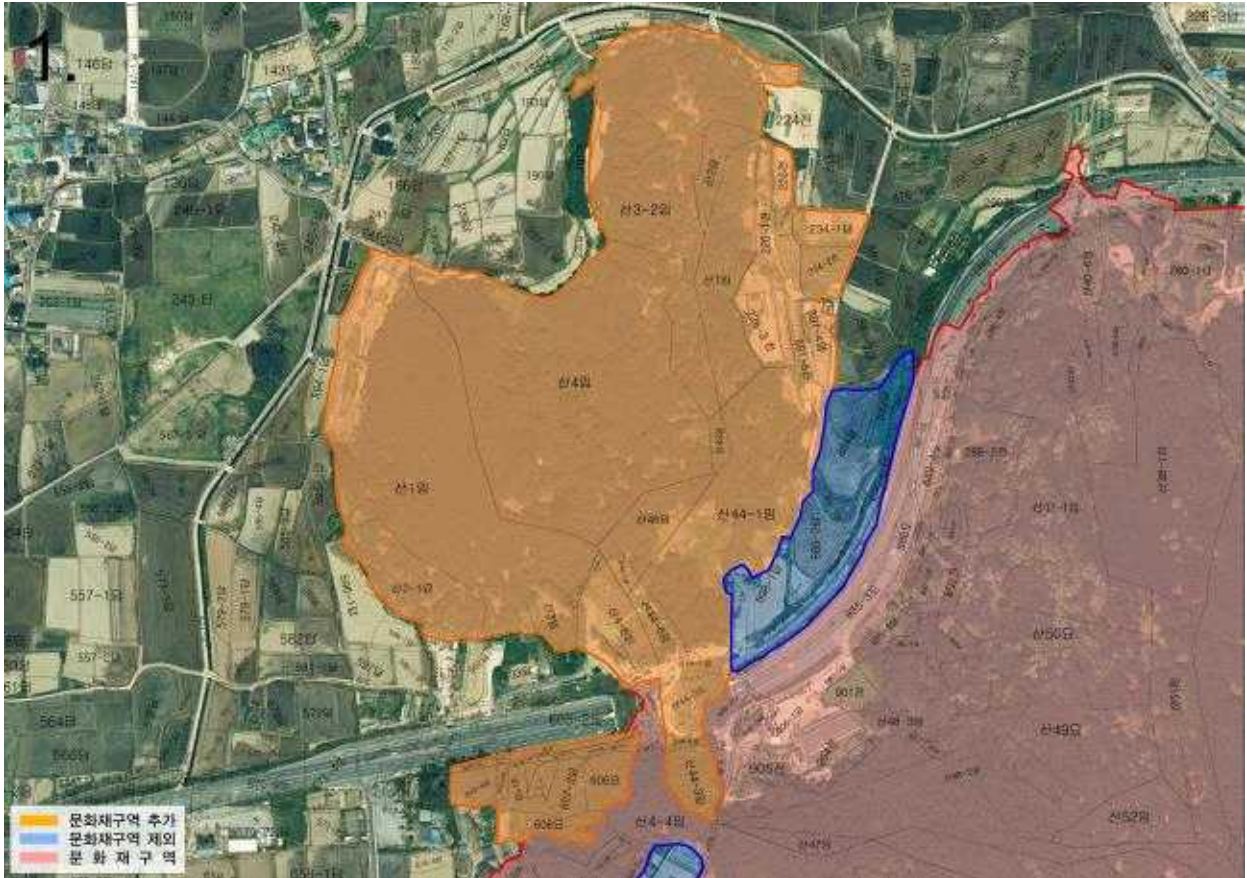
소재지	추가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교동	10	77,694	77,694	
남산동	1	1,031	1,031	
내남면 노곡리	30	623,766	623,766	
배동	3	8,221	8,221	
인왕동	11	28,139	28,139	
탑동	29	46,996	46,996	
합계	84	785,847	785,847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지역 현황

## ■ 1구역\_추가 지정

도당산 토성으로 일컫는 곳으로 2000년, 2013년, 2015년에 성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3세기 중엽~6세기 말 축조된 토성임이 밝혀진 성이다. 남산과 함께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은 곳으로 신라 왕성에서 조망할 때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도당산 토성 모습

#### ■ 4구역\_추가 지정

삼릉과 경주 경애왕릉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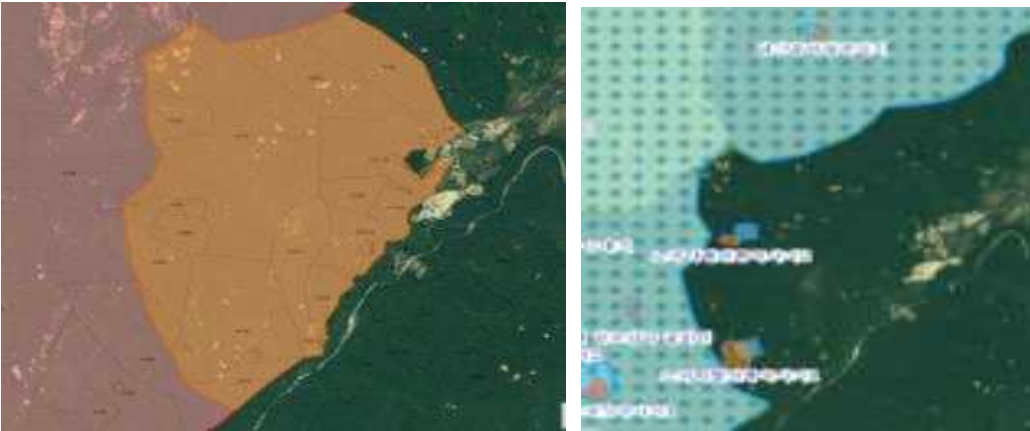
#### ■ 9구역\_추가 지정

남산 자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야로 기존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0구역\_추가 지정

천룡사지 아래에 위치한 노곡리 별천룡곡사지1,2 유물산포지로 기존 남산 일원에 누락된 곳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2구역\_추가 지정

염불사지(동서 삼층석탑-보물)가 위치한 곳으로 기존 염불사지를 문화재구역에 편입시키고자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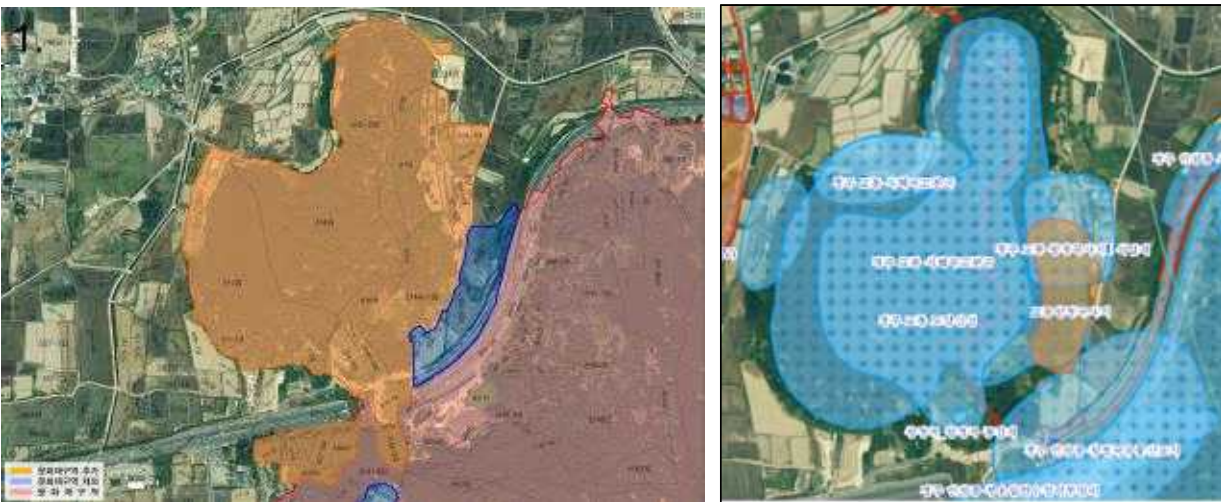
□ 해제 대상 및 범위

- 신청 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35 일원( ※ 상세 목록 첨부 참조)
- 신청 면적 : 677필지(1,170,433㎡)
- 신청 사유 :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 신청내용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전체 해제	660	(1,124,958)	(1,114,652)	
일부 해제	17	165,381	(55,781)	
합계	677	(959,577)	(1,170,433)	

■ 1구역\_해제

도당산 토성과 남산 사이의 전, 답의 지목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2구역\_해제

식혜골 마을로 불리는 곳으로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월암종택’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기존 마을과 농경지, 산지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지를 제외한 유적분포가 없는 기존마을, 답, 대의 지목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3구역\_해제

창림사지 삼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전면의 농경지까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로를 경계로 바깥쪽은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5구역\_해제

용장골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임야를 제외한 오랜 전, 답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6구역\_해제

뜸수골에 위치하는 마을로써 기존 임야와 마을이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7구역\_해제

기존 마을과 임야를 함께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기존마을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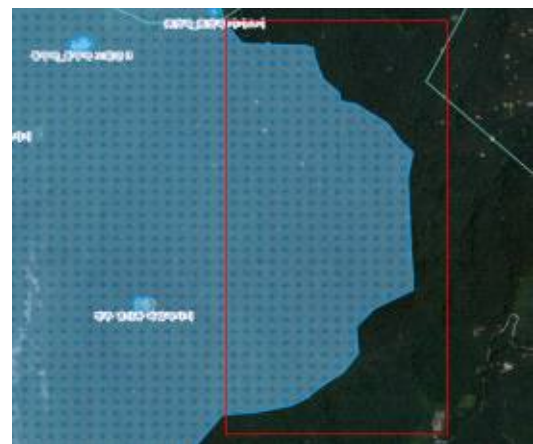
■ 8구역\_해제

남산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과 농경지로 임야를 제외한 대, 전, 답 등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11구역\_해제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양는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2구역\_해제

염불사지(동서 삼층석탑-보물)가 위치한 곳으로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마을과 농경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3구역\_해제

통일전이 위치한 곳으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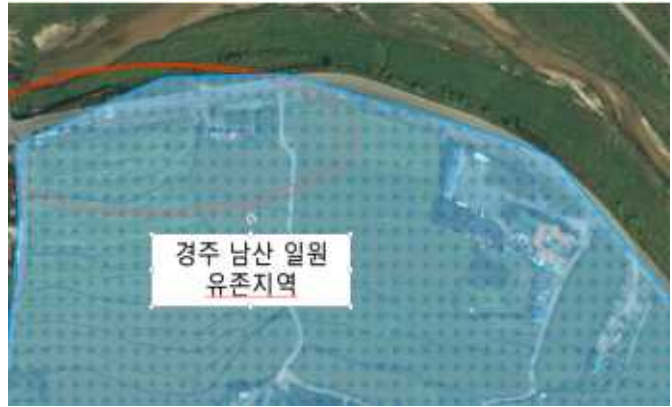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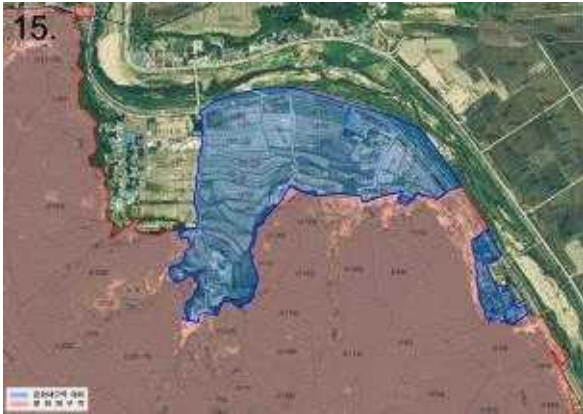
### ■ 14구역\_해제

화랑교육원이 위치한 곳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곳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 15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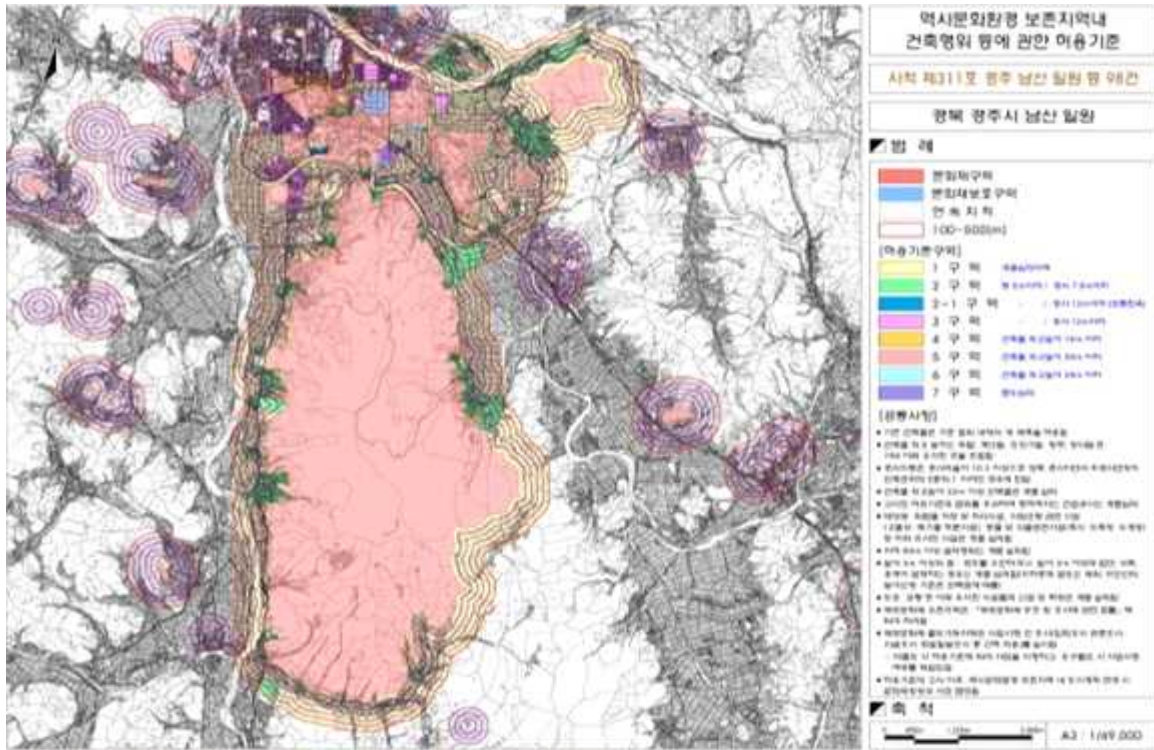
남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일부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임야를 제외한 대, 전, 답 등을 문화재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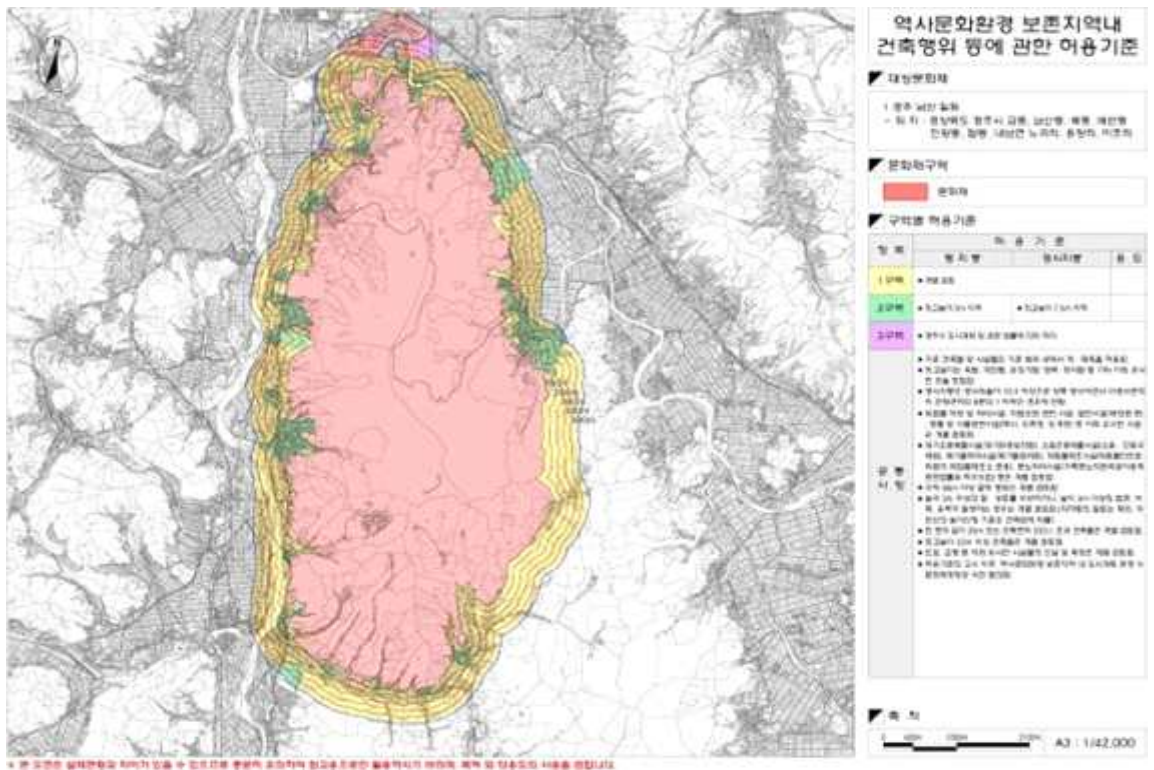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문화재구역에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 1구역(개별심의)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기준안(도면)-통합고시 도면



○ 변경 기준안(도면)-경주 남산 일원 발췌 도면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구분	범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 별도 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검토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 지역은 남산으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남산의 경관을 최대한 살려 원형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길'의 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존 정비 및 활용 기본방향
  -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사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고증을 통한 문화유산의 원형 유지할 수 있는 복원·정비 방향 수립
  - 도심 인접 문화유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존, 정비, 활용 계획 수립
  - 홍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스마트 활용기반 구축

- 관리운영 방향
  -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안내 등을 통한 서비스 관리 강화
  - 분산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화재,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 9. 종합의견

- 경주 남산 일원의 사적 범위는 일괄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새로이 사적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중 사적 추가 지정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분포지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12구역 염불사지는 현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내용에서 제외하고, 10구역의 경우 별천룡곡사지 I,II 분포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해제 신청 지역은 경주 남산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기존 마을 형성지역, 건축물·시설물 설치 지역 주변에 한정된 해제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 지역은 1구역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해제) 신청 지역 세부적인 검토 내용
  - 1구역[도당토성] : 남산 일원에 포함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제의 경우 기 지정 문화재구역은 현상을 유지하고 도로부분만 해제하는 것을 검토 필요
  - 2구역[기존 마을과 전답(경주 월암종택)] :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고 전, 답 등은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기를 검토함. 임야에서 떨어진 전, 답은 해제는 별도로 검토 필요
  - 3구역[기존 마을과 전답(창림사지 삼층석탑)] : 창림사지는 계단상으로 조성된 사찰로서 열린 조망권이 중요하므로 문화재구역 유지 필요
  - 4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삼릉, 경애왕릉)] : 유적 보존 가능성이 높은 임야이므로 추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필요
  - 5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전, 답] : 문화재구역에 면한 전, 답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건조물 구역만 해제 검토 필요
  - 6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마을 구역은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는 문화재구역 유지 검토 필요
  - 7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구역은 문화재구역 해제 검토 필요
  - 8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마을, 전, 답] : 마을에서 떨어진 남동측 지역(780전)과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은 마을 지역은 문화재구역 해제를 고려하지만 임야에 접하는 전, 답은 문화재구역(797답 이상) 유지 검토 필요

- 9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필요
- 10구역[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임야] : 별천통곡사지의 유물 산포지와 그 주변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은 필요하나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11구역[문화재 분포가 없음] :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검토 필요
- 12구역[문화재와 기존마을] : 주택 등 건조물이 조성된 구역은 문화재구역의 해제를 고려하나, 원지형이 살아있는 전, 답 대부분은 문화재구역으로 유지 검토 필요
- 13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통일전)] : 통일전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4구역[시설이 건축된 경우(화랑교육원)] : 화랑교육원 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15구역[기존 마을과 전답] : 남산에 접해 있는 구역은 열린 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을 유지하며, 남산 아래 자락의 도로와 인접한 부분은 문화재구역의 해제 검토 필요

# 붙임

# 조정 대상 목록 현황

## 1. 기 고시 분할 및 합병 조정 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1	남산동					85-6	과	7,591	7,591	등록전환 추가	산31-13에서 등록전환
2	남산동					104-4	전	5,257	3,046	등록전환 추가	산27-2에서 등록전환
3	남산동					104-5	전	2,000	2,000	등록전환 추가	산27-3에서 등록전환
4	남산동					1056-6	전	930	930	분할추가	1056-5에서 분할
5	남산동					1056-7	전	930	930	분할추가	1056-5에서 분할
6	남산동					1056-8	전	596	596	분할추가	1056-5에서 분할
7	남산동					1064-11	전	926	926	분할추가	1064-8에서 분할
8	남산동					1156-1	천	5,259	5,065	추가 필지분할	누락필지 본번476으로분할
9	남산동					1156-476	대	309	309	분할추가	1156-1에서 분할
10	남산동					856-4	답	2	2	분할추가	856-2에서 분할
11	남산동					856-5	답	42	42	분할추가	856-2에서 분할
12	남산동					857-4	답	4	4	분할추가	857-1에서 분할
13	남산동					919-1	유	730	730	분할추가	919에서 분할
14	남산동	산23-1	임	59	59	산23-1	임	20,926	20,926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20,926)
15	남산동	산27	임	11,901	11,901	산27	임	3,883	2,174	필지분할	본번1~3으로 분할
16	남산동					산27-1	임	616	616	분할추가	산27-1에서 분할
17	남산동	산46	임	53,517	53,517	산46	임	53,157	53,157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53,157)
18	남산동	산77	구	1,124	1,124	산77	구	881	881	면적정정	
19	내남면 노곡리					357-1	전	1,140	1,140	등록전환 추가	산173-2에서 등록전환
20	내남면 노곡리					357-2	답	1,145	1,145	등록전환 추가	산173-3에서 등록전환
21	내남면 노곡리					749-3	답	325	325	등록전환 추가 필지분할	산154-2에서 등록전환 본번47로분할
22	내남면 노곡리					749-4	답	611	611	분할추가	749-3번에서 분할
23	내남면 노곡리					749-5	임	717	717	분할추가	749-3번에서 분할
24	내남면 노곡리					749-6	답	3,581	3,581	분할추가	749-3번에서 분할
25	내남면 노곡리					749-7	임	1,334	1,334	분할추가	749-3번에서 분할
26	내남면 노곡리					789-3	대	557	557	분할추가	789번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합병 말소	810번으로 합병
27	내남면 노곡리	811	임	2,076	2,076					합병 말소	810번으로 합병
28	내남면 노곡리					산120-4	임	82,996	82,996	분할추가	산120-2에서 분할
29	내남면 노곡리	산164	임	19,538	19,538	산164	임	19,835	19,835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19,835)
30	내남면 노곡리					산175-1	임	1,862	1,862	분할추가	산175번에서 분할
31	내남면 용장리	1181	도	104	104					제외	문화재구역 아님
32	내남면 용장리	1182	구	251	251					제외	문화재구역 아님
33	내남면 용장리	1288	천	430	430					제외	문화재구역 아님
34	내남면 용장리					545-2	종	750	750	등록전환 추가	산128-4에서 등록전환
35	내남면 용장리					727-3	전	6,628	6,628	등록전환 추가	산106-4에서 등록전환
36	내남면 용장리					744-4	대	30	30	분할추가	744-2번에서 분할
37	내남면 용장리					776-4	대	481	481	분할추가	776-3번에서 분할
38	내남면 용장리					781-1	전	790	790	등록전환 추가	산115-1에서 등록전환
39	내남면 용장리					산106-15	임	10,116	10,116	분할추가	산106-4번에서 분할
40	내남면 용장리					산106-16	임	693	693	분할추가	산106-4번에서 분할
41	내남면 용장리	산106-4	임	17,640	17,640					필지분할 등록전환 말소	본번15~16으로 분할 727-3으로등록전 환
42	내남면 용장리	산115	임	992	992	산115	임	247	247	필지분할	본번1로 분할
43	내남면 용장리									분할추가 등록전환 말소	산128-1에서 분할 '545-2으로등록 전환
44	내남면 용장리					산166	도	496	496	추가	누락필지
45	내남면 용장리					산167	구	4,100	4,100	추가	누락필지
46	내남면 용장리					산171	도	397	397	추가	누락필지
47	내남면 용장리	산52	임	56,555	56,555	산52	임	55,088	55,088	면적정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48	내남면 용장리					산82-1	임	407	407	분할추가	산82번에서 분할
49	내남면 이조리	667-1	대	136	136	667-1	대	147	147	합병	1008-208과 합병
50	내남면 이조리					695-2	전	838	838	등록전환 추가	산11에서 등록전환
51	내남면 이조리					695-4	전	316	316	등록전환 추가	산11-5에서 등록전환
52	내남면 이조리					695-5	전	1,063	1,063	등록전환 추가	산11-8에서 등록전환
53	내남면 이조리					695-6	전	1,095	1,095	등록전환 추가	산11-14에서 등록전환
54	내남면 이조리					695-7	대	121	121	등록전환 추가	산12-6에서 등록전환
55	내남면 이조리					695-3	대	413	413	등록전환 추가	산11-1에서 등록전환
56	내남면 이조리	697-2	전	678	678					합병 말소	697-1번으로 합병
57	내남면 이조리	732	임	311	311					합병 말소	731로 합병
58	내남면 이조리					742-1	전	625	625	등록전환 추가	산7-1에서 등록전환
59	내남면 이조리	757-1		200	200					합병 말소	757과 합병
60	내남면 이조리	760-2	답	195	195					합병 말소	760-1과 합병
61	내남면 이조리	769-1	답	159	159					합병 말소	765와 합병
62	내남면 이조리					산12-7	임	2,821	2,821	분할추가	산12번에서 분할
63	내남면 이조리					산12-8	임	1,848	1,848	분할추가	산12번에서 분할
64	내남면 이조리					산12-9	임	491	491	분할추가	산12번에서 분할
65	내남면 이조리					산22-14	임	83	83	분할추가	산 22-1번에서 분할
66	배동	10	전	1,359	1,359	10	전	1,395	1,395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토지대장(1,395)
67	배동	1125-13 9	천	73,475	14,708	1125-139	천	74,490	14,708	면적정정 (74,711) 필지분할	본번255로 분할
68	배동					1126-1	전	395	395	분할추가	1126에서 분할
69	배동	15	답	1,083	1,083	15	답	1,071	1,071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토지대장(1,071)
70	배동	159	전	949	949					제외	문화재구역 아님
71	배동					68-1	답	149	149	분할추가	68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72	배동					698-3	전	757	757	등록전환 추가	산62-3에서 등록전환
73	배동					865-1	답	1,421	1,421	추가	누락필지
74	배동					965-2	답	496	496	추가	누락필지
75	배동	산3	임	11,983	11,983	산3	임	1,983	1,983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1,983)
76	배동					산62-2	임	33	33	분할추가	산62번에서 분할
77	배동					산86-8	임	6,612	6,612	분할추가	산86-3에서 분할
78	배반동					1070-2	대	229	229	등록전환 추가	산60-2에서 등록전환
79	배반동					1088-5	전	1,382	1,382	등록전환 추가	산56-5에서 등록전환
80	배반동					1088-6	전	420	420	등록전환 추가	산56-6에서 등록전환
81	배반동	1141	도	2,870	70	1141	도	2,509	70	필지분할	본번2~7로 분할
82	배반동					산56-4	임	339	339	분할추가	산56-3에서 분할
83	배반동	산64-1	임	12,379	12,379	산64-1	임	12,397	12,397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12,397)
84	인왕동	141-2	전	229	229					합병 말소	141-1으로 합병
85	인왕동									분할추가 합병말소	141-7에서 분할 141-1으로 합병
86	인왕동	148-2	전	922	922					합병 말소	148-1로 합병
87	인왕동	166	전	1,027	1,027	166	전	1,207	1,207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토지대장(1,207)
88	인왕동					189-2	답	200	200	분할추가	189번에서 분할
89	인왕동					197-1	전	816	816	분할추가	197번에서 분할
90	인왕동	271-2	구	46	46					합병 말소	270-1번으로 합병
91	인왕동					885-8	답	415	415	분할추가	885-1에서 분할
92	인왕동					885-9	답	666	666	분할추가	885-2에서 분할
93	인왕동					897-7	답	672	672	분할추가	897-2에서 분할
94	인왕동					898-9	답	498	498	분할추가	898-1번에서 분할
95	인왕동					898-10	전	214	214	분할추가	898-3번에서 분할
96	탑동					788-4	대	145	145	분할추가	788-3번에서 분할
97	탑동					795-5	대	383	383	분할추가	795-3번에서 분할
98	탑동					803-5	답	170	170	분할추가	803-3번에서 분할
99	탑동					811-1	답	548	548	분할추가	811번에서 분할
100	탑동					811-2	답	1,395	1,395	분할추가	811번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101	답동					849-21	답	44	44	분할추가	849-9에서 분할
102	답동					888-1	답	1,772	1,772	분할추가	888에서 분할
103	답동	902	도	13,097	692	902	도	7,280	692	경계정정 (7,924) '필지분 할	본번3~6을 부함
104	답동					산14-1	임	10,314	10,314	분할추가	산14번에서 분할
105	답동					산28	도	117	117	신규등록	
106	답동					산29	구	2,506	2,506	신규등록	
107	답동					산30	구	1,227	1,227	신규등록	
108	답동	산4-4	임	3,471	3,471	산4-4	임	3,468	3,468	경계정정 필지분할	경계정정 3,912 '본번8로분할
109	답동					산4-8	임	444	444	분할추가	산4-4에서 분할
110	배동					1126-1	전	395	395	분할추가	1126에서 분할
111	배동	15	답	1,083	1,083	15	답	1,071	1,071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토지대장(1,071)
112	배동	159	전	949	949					제외	문화재구역 아님
113	배동	68	답	2,902	2,902	68	답	2,753	2,753	필지분할	본번1로 분할
114	배동					68-1	답	149	149	분할추가	68에서 분할
115	배동					698-3	전	757	757	등록전환 추가	산62-3에서 등록전환
116	배동					865-1	답	1,421	1,421	추가	누락필지
117	배동					965-2	답	496	496	추가	누락필지
118	배동	산3	임	11,983	11,983	산3	임	1,983	1,983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1,983)
119	배동	산62	임	1,258	1,258	산62	임	512	512	필지분할	본번2~3으로 분할
120	배동					산62-2	임	33	33	분할추가	산62번에서 분할
121	배동									등록전환 말소	698-3으로 등록전환
122	배동	산86-3	임	19,760	19,760	산86-3	임	13,148	13,148	필지분할	본번8로 분할
123	배동					산86-8	임	6,612	6,612	분할추가	산86-3에서 분할
124	배반동					1070-2	대	229	229	등록전환 추가	산60-2에서 등록전환
125	배반동					1088-5	전	1,382	1,382	등록전환 추가	산56-5에서 등록전환
126	배반동					1088-6	전	420	420	등록전환 추가	산56-6에서 등록전환
127	배반동	1141	도	2,870	70	1141	도	2,509	70	필지분할	본번2~7로 분할
128	배반동	산56-3	임	2,777	2,777	산56-3	임	674	674	필지분할	본번4~6으로 분할
129	배반동					산56-4	임	339	339	분할추가	산56-3에서 분할
130	배반동									등록전환 말소	1088-5으로 등록전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등록전환 말소	
131	배반동									등록전환 말소	1088-6으로 등록전환
132	배반동					산57	임	18,248	18,248		기고시에서 산57-1로 기입된 것으로 판다
133	배반동	산60	임	7,895	7,895	산60	임	7,651	7,651	필지분할	본번2로 분할
134	배반동									분할추가 등록전환 말소	산 60번에서 분할 1070-2으로등록 전환
135	배반동	산64-1	임	12,379	12,379	산64-1	임	12,397	12,397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임야대장(12,397 )
136	인왕동	141-1	전	913	913	141-1	전	1,351	1,351	합병	141-2, 141-8과 합병
137	인왕동	141-2	전	229	229					합병 말소	141-1으로 합병
138	인왕동	141-7	전	237	237	141-7	전	28	28	필지분할	본번8로 분할
139	인왕동									분할추가 합병말소	141-7에서 분할 141-1으로합병
140	인왕동	148-1	전	1,015	1,015	148-1	전	1,937	1,937	합병	148-2번과 합병
141	인왕동	148-2	전	922	922					합병 말소	148-1로 합병
142	인왕동	166	전	1,027	1,027	166	전	1,207	1,207	면적상이	기입오류로 판단 토지대장(1,207)
143	인왕동					189-2	답	200	200	분할추가	189번에서 분할
144	인왕동	189	답	1,369	1,369	189	답	1,169	1,169	필지분할	본번2로 분할
145	인왕동	197	답	1,531	1,531	197	답	715	715	필지분할	본번1로 분할
146	인왕동					197-1	전	816	816	분할추가	197번에서 분할
147	인왕동	270-1	구	7	7	270-1	구	53	53	합병	271-2번과 합병
148	인왕동	271-2	구	46	46					합병 말소	270-1번으로 합병
149	인왕동	885-1	답	1,214	1,214	885-1	답	799	799	필지분할	본번8로 분할
150	인왕동	885-2	답	2,439	2,439	885-2	답	1,773	1,773	필지분할	본번9로 분할
151	인왕동					885-8	답	415	415	분할추가	885-1에서 분할
152	인왕동					885-9	답	666	666	분할추가	885-2에서 분할
153	인왕동	897-2	답	943	943	897-2	답	271	271	필지분할	본번7로 분할
154	인왕동					897-7	답	672	672	분할추가	897-2에서 분할
155	인왕동	898-1	답	1,959	1,959	898-1	답	1,461	1,461	필지분할	본번9로 분할
156	인왕동	898-3	전	863	863	898-3	전	649	649	필지분할	본번10으로 분할
157	인왕동					898-9	답	498	498	분할추가	898-1번에서 분할
158	인왕동					898-10	전	214	214	분할추가	898-3번에서 분할
159	탑동	788-3	전	1,253	1,253	788-3	전	1,108	1,108	필지분할	본번4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변경사유	
160	탑동					788-4	대	145	145	분할추가	788-3번에서 분할
161	탑동	795-3	대	631	631	795-3	중	248	248	필지분할	본번5로 분할
162	탑동					795-5	대	383	383	분할추가	795-3번에서 분할
163	탑동	803-3	답	446	446	803-3	답	276	276	필지분할	본번5로 분할
164	탑동					803-5	답	170	170	분할추가	803-3번에서 분할
165	탑동	811	답	2,942	2,942	811	답	999	999	필지분할	본번1~2로 분할
166	탑동					811-1	답	548	548	분할추가	811번에서 분할
167	탑동					811-2	답	1,395	1,395	분할추가	811번에서 분할
168	탑동					849-21	답	44	44	분할추가	849-9에서 분할
169	탑동	849-9	답	760	760	849-9	답	716	716	필지분할	본번21로 분할
170	탑동	888	답	3,544	3,544	888	전	1,772	1,772	필지분할	본번1로 분할
171	탑동					888-1	답	1,772	1,772	분할추가	888에서 분할
172	탑동	902	도	13,097	692	902	도	7,280	692	경계정정(7,924) '필지분할'	본번3~6을 부합
173	탑동	산14	임	20,628	20,628	산14	임	10,314	10,314	필지분할	본번1로 분할
174	탑동					산14-1	임	10,314	10,314	분할추가	산14번에서 분할
175	탑동	산4-4	임	3,471	3,471	산4-4	임	3,468	3,468	경계정정 '필지분할'	경계정정 3,912 '본번8로분할'
176	탑동					산4-8	임	444	444	분할추가	산4-4에서 분할

## 2. 문화재구역 해제 토지 현황

- 전체 해제 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1	남산동	835	대	1,309	1,309	
2	남산동	836	임	476	476	
3	남산동	837	대	9,566	9,566	
4	남산동	838-2	도	122	122	
5	남산동	839-1	대	433	433	
6	남산동	839-2	도	43	43	
7	남산동	840-1	도	155	155	
8	남산동	841-1	도	16	16	
9	남산동	842	전	2,010	2,010	
10	남산동	845	임	536	536	
11	남산동	846	대	3,533	3,533	
12	남산동	849	전	7,610	7,610	
13	남산동	850-2	임	152	152	
14	남산동	914-5	도	13	13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15	남산동	914-6	도	46	46	
16	남산동	914-8	잡	159	159	
17	남산동	914-10	잡	942	942	
18	남산동	915	대	592	592	
19	남산동	916-1	도	20	20	
20	남산동	916-2	유	178	178	
21	남산동	916-3	대	1,005	1,005	
22	남산동	916-4	도	10	10	
23	남산동	917	유	109	109	
24	남산동	918	유	3,524	3,524	
25	남산동	919	유	1,445	1,445	
26	남산동	919-1	유	730	730	
27	남산동	920	대	340	340	
28	남산동	920-1	사	11,600	11,600	
29	남산동	921	대	129	129	
30	남산동	922-1	대	479	479	
31	남산동	922-2	도	10	10	
32	남산동	922-3	대	493	493	
33	남산동	922-4	대	188	188	
34	남산동	922-5	대	132	132	
35	남산동	922-6	도	33	33	
36	남산동	922-7	대	512	512	
37	남산동	923	유	66	66	
38	남산동	923-1	유	397	397	
39	남산동	923-2	대	1,187	1,187	
40	남산동	923-3	대	20	20	
41	남산동	923-4	사	939	939	
42	남산동	923-5	도	26	26	
43	남산동	924-1	대	635	635	
44	남산동	924-2	도	13	13	
45	남산동	925	대	393	393	
46	남산동	926	유	159	159	
47	남산동	927	유	357	357	
48	남산동	928-1	도	50	50	
49	남산동	928-2	유	116	116	
50	남산동	929-1	도	86	86	
51	남산동	929-2	유	60	60	
52	남산동	930-1	답	172	172	
53	남산동	930-2	도	3	3	
54	남산동	931-1	도	1,752	1,752	
55	남산동	931-2	도	136	136	
56	남산동	932-1	도	526	526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57	남산동	932-2	도	60	60	
58	남산동	933	도	681	681	
59	남산동	934	도	532	532	
60	남산동	935	도	314	314	
61	남산동	935-1	도	221	221	
62	남산동	936-1	도	698	698	
63	남산동	936-2	도	261	261	
64	남산동	936-3	도	423	423	
65	남산동	936-4	도	83	83	
66	남산동	936-5	도	99	99	
67	남산동	936-6	도	311	311	
68	남산동	936-7	도	1,336	1,336	
69	남산동	936-8	도	53	53	
70	남산동	936-9	도	50	50	
71	남산동	936-10	도	188	188	
72	남산동	936-11	도	26	26	
73	남산동	937-1	도	354	354	
74	남산동	937-2	도	592	592	
75	남산동	937-3	도	403	403	
76	남산동	937-4	도	20	20	
77	남산동	937-5	도	13	13	
78	남산동	937-6	도	116	116	
79	남산동	937-7	도	20	20	
80	남산동	943-2	잡	221	221	
81	남산동	943-3	잡	357	357	
82	남산동	983	임	136	136	
83	남산동	984	임	198	198	
84	남산동	985	전	1,788	1,788	
85	남산동	986-1	전	588	588	
86	남산동	986-2	전	893	893	
87	남산동	987	전	1,332	1,332	
88	남산동	987-1	전	2,208	2,208	
89	남산동	993	전	993	993	
90	남산동	993-2	전	927	927	
91	남산동	993-3	전	1,730	1,730	
92	남산동	994-1	전	1,438	1,438	
93	남산동	995	전	377	377	
94	남산동	1041	전	106	106	
95	남산동	1042	전	1,300	1,300	
96	남산동	1042-1	전	640	640	
97	남산동	1043	전	1,726	1,726	
98	남산동	1044	답	1,220	1,220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99	남산동	1045	답	3,689	3,689	
100	남산동	1046	대	327	327	
101	남산동	1047	전	684	684	
102	남산동	1048	전	2,254	2,254	
103	남산동	1050	전	2,007	2,007	
104	남산동	1051	전	6,972	6,972	
105	남산동	1053-1	도	3	3	
106	남산동	1054	전	347	347	
107	남산동	1055	전	79	79	
108	남산동	1056-1	전	1,428	1,428	
109	남산동	1056-2	도	50	50	
110	남산동	1056-3	도	172	172	
111	남산동	1056-4	창	382	382	
112	남산동	1056-5	전	481	481	
113	남산동	1056-6	전	930	930	
114	남산동	1056-7	전	930	930	
115	남산동	1056-8	전	596	596	
116	남산동	1057	전	79	79	
117	남산동	1058-1	전	407	407	
118	남산동	1058-2	도	36	36	
119	남산동	1059-1	대	641	641	
120	남산동	1059-2	대	340	340	
121	남산동	1060-1	전	1,739	1,739	
122	남산동	1060-2	도	155	155	
123	남산동	1061-1	전	321	321	
124	남산동	1061-2	도	20	20	
125	남산동	1062-1	전	13	13	
126	남산동	1062-2	도	60	60	
127	남산동	1063-1	도	264	264	
128	남산동	1063-2	전	426	426	
129	남산동	1064	전	1,250	1,250	
130	남산동	1064-1	전	1,276	1,276	
131	남산동	1064-2	전	4,932	4,932	
132	남산동	1064-3	대	99	99	
133	남산동	1064-4	대	76	76	
134	남산동	1064-5	대	340	340	
135	남산동	1064-6	답	400	400	
136	남산동	1066	전	909	909	
137	남산동	1067	전	833	833	
138	남산동	1068	전	1,018	1,018	
139	남산동	1069-1	전	330	330	
140	남산동	1069-2	대	291	291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141	남산동	1070	답	711	711	
142	남산동	1071	전	1,812	1,812	
143	남산동	1072	임	129	129	
144	남산동	1073	전	1,223	1,223	
145	남산동	1074	전	1,593	1,593	
146	남산동	1075	전	698	698	
147	남산동	1076	전	1,336	1,336	
148	남산동	1076-2	전	883	883	
149	남산동	1081-1	전	1,342	1,342	
150	남산동	1082	전	3,240	3,240	
151	남산동	1083	전	1,048	1,048	
152	남산동	1084-2	전	436	436	
153	남산동	1084-3	전	1,084	1,084	
154	남산동	1121-1	전	6,506	6,506	
155	남산동	1121-2	전	952	952	
156	남산동	1121-3	전	681	681	
157	남산동	1124	대	377	377	
158	남산동	1125	전	1,233	1,233	
159	남산동	1126	전	836	836	
160	남산동	1127-2	전	1,643	1,643	
161	남산동	1156-1	천	5,259	5,065	
162	남산동	1156-102	임	6,510	6,510	
163	남산동	1156-301	대	9,018	5,825	
164	남산동	1156-476	대	309	309	
165	남산동	1170-3	구	1,930	589	
166	남산동	1173-1	도	3,434	846	
167	남산동	1185	대	536	536	
168	남산동	1190	구	159	159	
169	남산동	1191	도	1,031	692	
170	남산동	1198	도	198	198	
171	남산동	1199	도	13	13	
172	남산동	산18	임	68,628	68,628	
173	남산동	산19	임	25,785	25,785	
174	남산동	산20	임	73,785	73,785	
175	남산동	산21	임	302,280	302,280	
176	남산동	산43	임	298	298	
177	남산동	산52-5	임	14,975	14,975	
178	남산동	산72	구	58	58	
179	내남면 노곡리	750-3	답	2,502	2,502	
180	내남면 노곡리	778-2	전	295	295	
181	내남면 노곡리	779-1	임	423	423	
182	내남면 노곡리	779-2	전	2,324	2,324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183	내남면 노곡리	780	전	1,276	1,276	
184	내남면 노곡리	781	전	825	825	
185	내남면 노곡리	782-1	전	3,281	3,281	
186	내남면 노곡리	782-2	묘	469	469	
187	내남면 노곡리	782-3	도	190	190	
188	내남면 노곡리	786	전	2,079	2,079	
189	내남면 노곡리	788	대	496	496	
190	내남면 노곡리	789	대	250	250	
191	내남면 노곡리	789-1	대	646	646	
192	내남면 노곡리	789-2	임	1,007	1,007	
193	내남면 노곡리	789-3	대	557	557	
194	내남면 노곡리	791	전	848	848	
195	내남면 노곡리	791-1	도	402	402	
196	내남면 노곡리	791-2	도	240	240	
197	내남면 노곡리	791-3	전	471	471	
198	내남면 노곡리	791-4	전	505	505	
199	내남면 노곡리	792	전	386	386	
200	내남면 노곡리	792-1	도	189	189	
201	내남면 노곡리	792-2	도	321	321	
202	내남면 노곡리	794	대	354	354	
203	내남면 노곡리	794-1	전	2,303	2,303	
204	내남면 노곡리	794-2	대	169	169	
205	내남면 노곡리	794-3	대	977	977	
206	내남면 노곡리	794-5	대	301	301	
207	내남면 노곡리	795	대	625	625	
208	내남면 노곡리	796	답	1,296	1,296	
209	내남면 노곡리	797	답	3,474	3,474	
210	내남면 노곡리	798-2	답	432	432	
211	내남면 노곡리	산146	임	1,587	1,587	
212	내남면 노곡리	산147-10	임	785	785	
213	내남면 용장리	550	답	3,841	3,841	
214	내남면 용장리	551	답	1,570	1,570	
215	내남면 용장리	552	답	1,217	1,217	
216	내남면 용장리	553	답	152	152	
217	내남면 용장리	554	답	3,954	3,954	
218	내남면 용장리	559	답	992	992	
219	내남면 용장리	561-1	구	674	56	
220	내남면 용장리	727-3	전	6,628	6,628	
221	내남면 용장리	739	전	469	469	
222	내남면 용장리	740	전	655	655	
223	내남면 용장리	740-1	대	331	331	
224	내남면 용장리	740-2	대	397	397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225	내남면 용장리	740-3	대	331	331	
226	내남면 용장리	741-1	답	208	208	
227	내남면 용장리	741-2	도	63	63	
228	내남면 용장리	742	대	344	344	
229	내남면 용장리	744-1	대	113	113	
230	내남면 용장리	744-2	대	357	357	
231	내남면 용장리	744-3	대	188	188	
232	내남면 용장리	744-4	대	30	30	
233	내남면 용장리	746	대	436	436	
234	내남면 용장리	747	대	382	382	
235	내남면 용장리	758	전	347	347	
236	내남면 용장리	759	대	506	506	
237	내남면 용장리	760	대	565	565	
238	내남면 용장리	761	대	522	522	
239	내남면 용장리	762	대	595	595	
240	내남면 용장리	763	전	443	443	
241	내남면 용장리	764	전	225	225	
242	내남면 용장리	765	전	142	142	
243	내남면 용장리	766-1	대	205	205	
244	내남면 용장리	766-2	대	275	275	
245	내남면 용장리	767	전	595	595	
246	내남면 용장리	768-1	대	307	307	
247	내남면 용장리	768-2	대	684	684	
248	내남면 용장리	768-4	대	182	182	
249	내남면 용장리	769	대	311	311	
250	내남면 용장리	770	대	347	347	
251	내남면 용장리	771	대	347	347	
252	내남면 용장리	772	대	661	661	
253	내남면 용장리	774	전	162	162	
254	내남면 용장리	775	대	298	298	
255	내남면 용장리	776-1	답	1,061	1,061	
256	내남면 용장리	776-3	전	1,893	1,893	
257	내남면 용장리	776-4	대	481	481	
258	내남면 용장리	777-1	답	1,309	1,309	
259	내남면 용장리	777-2	답	112	112	
260	내남면 용장리	780	전	79	79	
261	내남면 용장리	781	전	1,729	1,729	
262	내남면 용장리	781-1	전	790	790	
263	내남면 용장리	782	대	443	443	
264	내남면 용장리	782-1	대	149	149	
265	내남면 용장리	782-2	대	731	731	
266	내남면 용장리	782-3	전	460	460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267	내남면 용장리	783	대	261	261	
268	내남면 용장리	784	전	612	612	
269	내남면 용장리	785	전	380	380	
270	내남면 용장리	786	전	483	483	
271	내남면 용장리	787	대	317	317	
272	내남면 용장리	788	전	585	585	
273	내남면 용장리	789	전	182	182	
274	내남면 용장리	790	대	942	942	
275	내남면 용장리	791	전	218	218	
276	내남면 용장리	792	전	958	958	
277	내남면 용장리	792-1	전	229	229	
278	내남면 용장리	793	답	46	46	
279	내남면 용장리	807-1	답	1,590	1,590	
280	내남면 용장리	807-2	천	671	671	
281	내남면 용장리	808	대	417	417	
282	내남면 용장리	809	대	212	212	
283	내남면 용장리	1185	답	1,877	1,877	
284	내남면 용장리	1200	답	1,240	1,240	
285	내남면 용장리	1207-3	도	1,388	164	
286	내남면 용장리	1208	임	443	443	
287	내남면 용장리	산106-15	임	10,116	10,116	
288	내남면 용장리	산106-16	임	693	693	
289	내남면 용장리	산115	임	247	247	
290	내남면 용장리	산116-1	임	893	893	
291	내남면 이조리	664	대	212	212	
292	내남면 이조리	665	전	126	126	
293	내남면 이조리	666	전	321	321	
294	내남면 이조리	667-1	대	147	147	
295	내남면 이조리	668-1	대	307	307	
296	내남면 이조리	669	대	367	367	
297	내남면 이조리	670-1	대	357	357	
298	내남면 이조리	672-1	대	198	198	
299	내남면 이조리	674-1	대	433	433	
300	내남면 이조리	676-1	대	205	205	
301	내남면 이조리	677-1	대	129	129	
302	내남면 이조리	678	대	281	281	
303	내남면 이조리	679	대	255	255	
304	내남면 이조리	680-1	전	182	182	
305	내남면 이조리	682-1	대	228	228	
306	내남면 이조리	685-1	대	30	30	
307	내남면 이조리	686-1	전	83	83	
308	내남면 이조리	687	대	450	450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309	내남면 이조리	688-1	대	377	377	
310	내남면 이조리	689	대	314	314	
311	내남면 이조리	690	대	367	367	
312	내남면 이조리	691	대	469	469	
313	내남면 이조리	692	대	565	565	
314	내남면 이조리	693	대	476	476	
315	내남면 이조리	694	대	453	453	
316	내남면 이조리	694-1	대	162	162	
317	내남면 이조리	695	대	1,493	1,493	
318	내남면 이조리	695-1	대	378	378	
319	내남면 이조리	695-2	전	838	838	
320	내남면 이조리	695-3	대	413	413	
321	내남면 이조리	695-4	전	316	316	
322	내남면 이조리	695-5	전	1,063	1,063	
323	내남면 이조리	695-6	전	1,095	1,095	
324	내남면 이조리	695-7	대	121	121	
325	내남면 이조리	696	대	420	420	
326	내남면 이조리	697-1	전	1,895	1,895	
327	내남면 이조리	697-3	구	165	165	
328	내남면 이조리	698	대	314	314	
329	내남면 이조리	699-1	대	261	261	
330	내남면 이조리	699-2	대	893	893	
331	내남면 이조리	700-2	대	411	411	
332	내남면 이조리	701-1	답	1,478	1,478	
333	내남면 이조리	701-2	대	40	40	
334	내남면 이조리	701-3	답	595	595	
335	내남면 이조리	702	답	744	744	
336	내남면 이조리	703	전	122	122	
337	내남면 이조리	704	대	635	635	
338	내남면 이조리	705	전	367	367	
339	내남면 이조리	706	대	575	575	
340	내남면 이조리	707	답	407	407	
341	내남면 이조리	708-1	답	294	294	
342	내남면 이조리	708-2	대	291	291	
343	내남면 이조리	750	전	836	836	
344	내남면 이조리	751-1	답	261	261	
345	내남면 이조리	751-2	답	671	671	
346	내남면 이조리	752	답	1,008	1,008	
347	내남면 이조리	753-1	전	1,428	1,428	
348	내남면 이조리	753-2	전	1,190	1,190	
349	내남면 이조리	754	전	155	155	
350	내남면 이조리	755	전	1,451	1,451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351	내남면 이조리	757	전	926	926	
352	내남면 이조리	758	대	413	413	
353	내남면 이조리	759	답	645	645	
354	내남면 이조리	760-1	답	291	291	
355	내남면 이조리	761	답	307	307	
356	내남면 이조리	762	답	446	446	
357	내남면 이조리	763	답	218	218	
358	내남면 이조리	764	답	744	744	
359	내남면 이조리	765	전	364	364	
360	내남면 이조리	766	답	264	264	
361	내남면 이조리	767	대	512	512	
362	내남면 이조리	768-1	답	298	298	
363	내남면 이조리	1004	도	268	268	
364	내남면 이조리	1005	구	1,388	1,388	
365	내남면 이조리	1012	도	645	109	
366	내남면 이조리	1013	도	238	238	
367	내남면 이조리	1014	구	1,592	1,404	
368	내남면 이조리	1014-1	구	27	27	
369	내남면 이조리	1014-2	구	7	7	
370	내남면 이조리	1015	도	261	261	
371	내남면 이조리	1016	도	46	46	
372	내남면 이조리	1054	도	149	149	
373	내남면 이조리	산10	임	561	561	
374	내남면 이조리	산11-2	임	366	366	
375	내남면 이조리	산11-3	임	216	216	
376	내남면 이조리	산11-6	임	2,967	2,967	
377	내남면 이조리	산11-9	임	366	366	
378	내남면 이조리	산11-10	임	2,351	2,351	
379	내남면 이조리	산11-11	임	292	292	
380	내남면 이조리	산11-12	임	241	241	
381	내남면 이조리	산11-13	임	51	51	
382	내남면 이조리	산39	도	198	198	
383	내남면 이조리	산43	도	496	496	
384	배동	72	답	2,426	2,426	
385	배동	73	답	2,357	2,357	
386	배동	74	답	1,405	1,405	
387	배동	75	답	2,195	2,195	
388	배동	76	답	2,863	2,863	
389	배동	77	답	1,960	1,960	
390	배동	78	답	2,572	2,572	
391	배동	79	전	2,526	2,526	
392	배동	80	답	1,570	1,570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393	배동	81	답	2,971	2,971	
394	배동	82	임	5,057	5,057	
395	배동	83	유	578	578	
396	배동	84	잡	12,801	12,801	
397	배동	86	답	1,062	1,062	
398	배동	87-1	답	881	881	
399	배동	87-2	답	1,911	1,911	
400	배동	88-1	답	1,245	1,245	
401	배동	88-2	답	2,443	2,443	
402	배동	88-3	구	202	202	
403	배동	89	답	1,007	1,007	
404	배동	90	답	323	323	
405	배동	90-1	답	193	193	
406	배동	112-3	답	922	922	
407	배동	113	답	843	843	
408	배동	114	답	3,144	3,144	
409	배동	115	답	1,121	1,121	
410	배동	116	답	1,250	1,250	
411	배동	117	답	2,056	2,056	
412	배동	118	답	843	843	
413	배동	119	답	3,127	3,127	
414	배동	120	답	1,534	1,534	
415	배동	121	답	1,659	1,659	
416	배동	122	답	1,607	1,607	
417	배동	123	답	1,382	1,382	
418	배동	124	답	555	555	
419	배동	125-1	묘	1,362	1,362	
420	배동	125-2	답	509	509	
421	배동	125-3	답	2,476	2,476	
422	배동	125-4	답	165	165	
423	배동	125-5	답	106	106	
424	배동	126	답	96	96	
425	배동	127	답	1,448	1,448	
426	배동	128	답	681	681	
427	배동	129	답	1,140	1,140	
428	배동	129-1	답	1,788	1,788	
429	배동	130-1	답	2,139	2,139	
430	배동	130-2	답	1,944	1,944	
431	배동	131-1	답	1,693	1,693	
432	배동	131-2	답	2,783	2,783	
433	배동	132	답	426	426	
434	배동	133	묘	578	578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435	배동	134	전	1,107	1,107	
436	배동	135-1	답	2,522	2,522	
437	배동	135-2	전	1,200	1,200	
438	배동	136	답	1,706	1,706	
439	배동	137	답	856	856	
440	배동	138-1	답	2,357	2,357	
441	배동	138-2	답	2,777	2,777	
442	배동	138-3	답	1,729	1,729	
443	배동	139-3	답	1,650	1,650	
444	배동	140-1	답	50	50	
445	배동	144-1	답	1,081	1,081	
446	배동	144-2	답	1,279	1,279	
447	배동	145	묘	1,041	1,041	
448	배동	146	답	2,688	2,688	
449	배동	147-1	전	2,678	2,678	
450	배동	148-1	전	3,357	3,357	
451	배동	150-1	묘	2,982	2,982	
452	배동	158	전	2,066	2,066	
453	배동	160-1	답	248	248	
454	배동	160-2	유	863	863	
455	배동	1126-1	전	395	395	
456	배동	1127-1	도	423	423	
457	배동	1127-2	잡	152	152	
458	배동	1129-1	잡	780	780	
459	배동	1129-4	답	357	357	
460	배동	1130	구	565	565	
461	인왕동	141-1	전	1,351	1,351	
462	인왕동	141-3	제	35	35	
463	인왕동	141-4	전	199	199	
464	인왕동	141-5	제	199	199	
465	인왕동	141-6	제	945	945	
466	인왕동	141-7	전	28	28	
467	인왕동	142	전	968	968	
468	인왕동	142-1	전	992	992	
469	인왕동	143-1	답	1,616	1,616	
470	인왕동	143-2	답	1,580	1,580	
471	인왕동	144	전	717	717	
472	인왕동	145-1	전	889	889	
473	인왕동	145-2	답	3,058	3,058	
474	인왕동	145-3	답	370	370	
475	인왕동	146	답	2,684	2,684	
476	인왕동	147	답	1,656	1,656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477	인왕동	148-1	전	1,937	1,937	
478	인왕동	148-3	제	528	528	
479	인왕동	148-4	도	441	441	
480	인왕동	149	제	703	703	
481	인왕동	149-1	전	149	149	
482	인왕동	149-2	제	37	37	
483	인왕동	149-3	전	99	99	
484	인왕동	150-1	답	509	509	
485	인왕동	150-2	답	3,547	3,547	
486	인왕동	150-3	제	26	26	
487	인왕동	150-4	답	139	139	
488	인왕동	151-1	도	506	506	
489	인왕동	151-2	답	192	192	
490	인왕동	151-3	도	119	119	
491	인왕동	151-4	제	492	492	
492	인왕동	151-5	제	32	32	
493	인왕동	151-6	전	403	403	
494	인왕동	151-7	제	511	511	
495	인왕동	152	답	946	946	
496	인왕동	152-2	도	82	82	
497	인왕동	153	답	774	774	
498	인왕동	154	답	469	469	
499	인왕동	154-1	도	33	33	
500	인왕동	155-1	답	4,225	4,225	
501	인왕동	155-2	답	3,719	3,719	
502	인왕동	155-3	도	102	102	
503	인왕동	155-4	도	69	69	
504	인왕동	156-1	답	1,960	1,960	
505	인왕동	156-2	답	1,755	1,755	
506	인왕동	156-3	답	1,183	1,183	
507	인왕동	156-5	도	99	99	
508	인왕동	157	답	2,436	2,436	
509	인왕동	158	답	1,071	1,071	
510	인왕동	159	답	6,331	6,331	
511	인왕동	159-1	도	16	16	
512	인왕동	161	답	612	612	
513	인왕동	162	답	374	374	
514	인왕동	163	전	2,145	2,145	
515	인왕동	169	전	1,084	1,084	
516	인왕동	170-1	답	1,956	1,956	
517	인왕동	170-2	답	30	30	
518	인왕동	170-3	제	226	226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519	인왕동	170-4	답	238	238	
520	인왕동	170-5	제	186	186	
521	인왕동	170-6	도	24	24	
522	인왕동	170-7	도	94	94	
523	인왕동	171-1	답	1,142	1,142	
524	인왕동	171-2	제	171	171	
525	인왕동	171-3	제	295	295	
526	인왕동	171-4	전	245	245	
527	인왕동	171-5	도	51	51	
528	인왕동	172-1	전	1,654	1,654	
529	인왕동	172-2	제	147	147	
530	인왕동	172-3	제	264	264	
531	인왕동	172-4	전	8	8	
532	인왕동	172-5	전	498	498	
533	인왕동	172-6	제	69	69	
534	인왕동	172-7	전	117	117	
535	인왕동	176-1	전	823	823	
536	인왕동	176-2	제	132	132	
537	인왕동	176-3	전	536	536	
538	인왕동	176-4	제	51	51	
539	인왕동	176-5	도	177	177	
540	인왕동	179-2	묘	416	416	
541	인왕동	180-1	전	245	245	
542	인왕동	180-2	전	796	796	
543	인왕동	181	과	1,095	1,095	
544	인왕동	181-1	과	840	840	
545	인왕동	181-2	과	865	865	
546	인왕동	182	전	761	761	
547	인왕동	182-1	전	194	194	
548	인왕동	182-2	제	228	228	
549	인왕동	182-3	전	209	209	
550	인왕동	189	답	1,169	1,169	
551	인왕동	189-1	도	20	20	
552	인왕동	189-2	답	200	200	
553	인왕동	190	답	1,931	1,931	
554	인왕동	191	답	1,177	1,177	
555	인왕동	192	답	1,365	1,365	
556	인왕동	192-1	도	13	13	
557	인왕동	193	답	734	734	
558	인왕동	193-1	도	7	7	
559	인왕동	194	전	1,378	1,378	
560	인왕동	194-1	도	149	149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561	인왕동	195	묘	340	340	
562	인왕동	196	전	1,177	1,177	
563	인왕동	197	답	715	715	
564	인왕동	238-3	전	2,060	2,060	
565	인왕동	238-6	전	893	893	
566	인왕동	883	답	1,033	1,033	
567	인왕동	883-1	답	438	438	
568	인왕동	884	답	3,064	3,064	
569	인왕동	885-1	답	799	799	
570	인왕동	885-2	답	1,773	1,773	
571	인왕동	885-6	답	753	753	
572	인왕동	885-7	답	348	348	
573	인왕동	885-8	답	415	415	
574	인왕동	885-9	답	666	666	
575	인왕동	896-1	답	16	16	
576	인왕동	897-2	답	271	271	
577	인왕동	897-6	답	273	273	
578	인왕동	897-7	답	672	672	
579	인왕동	898-1	답	1,461	1,461	
580	인왕동	898-2	대	192	192	
581	인왕동	898-3	전	649	649	
582	인왕동	898-6	답	23	23	
583	인왕동	898-7	전	30	30	
584	인왕동	898-8	답	25	25	
585	인왕동	898-9	답	498	498	
586	인왕동	898-10	전	214	214	
587	인왕동	899-1	답	109	109	
588	인왕동	920-1	도	5,157	5,157	
589	인왕동	920-3	답	50	50	
590	탑동	628	전	1,197	1,197	
591	탑동	629	전	873	873	
592	탑동	630	전	416	416	
593	탑동	631-1	전	2,538	2,538	
594	탑동	631-2	답	549	549	
595	탑동	632-1	답	337	337	
596	탑동	632-2	답	403	403	
597	탑동	774-1	전	912	912	
598	탑동	776	전	1,058	1,058	
599	탑동	777-1	전	2,165	2,165	
600	탑동	777-2	전	2,030	2,030	
601	탑동	778	답	50	50	
602	탑동	779-1	답	2,635	2,635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603	탐동	779-2	답	830	830	
604	탐동	780	답	2,654	2,654	
605	탐동	784	답	2,476	2,476	
606	탐동	785-1	답	1,755	1,755	
607	탐동	785-2	답	4,036	4,036	
608	탐동	785-3	답	1,061	1,061	
609	탐동	788-1	대	228	228	
610	탐동	788-2	대	542	542	
611	탐동	788-3	전	1,108	1,108	
612	탐동	788-4	대	145	145	
613	탐동	789-1	전	225	225	
614	탐동	789-2	전	1,240	1,240	
615	탐동	789-3	답	797	797	
616	탐동	790	전	493	493	
617	탐동	791-1	전	165	165	
618	탐동	791-2	전	132	132	
619	탐동	792	전	360	360	
620	탐동	793	답	982	982	
621	탐동	794-1	답	2,740	2,740	
622	탐동	794-2	답	1,736	1,736	
623	탐동	794-3	답	2,767	2,767	
624	탐동	794-4	답	2,231	2,231	
625	탐동	795-2	전	734	734	
626	탐동	795-3	중	248	248	
627	탐동	795-4	답	840	840	
628	탐동	795-5	대	383	383	
629	탐동	800-1	전	1,167	1,167	
630	탐동	800-2	답	582	582	
631	탐동	801	답	145	145	
632	탐동	802	답	2,218	2,218	
633	탐동	803-1	묘	747	747	
634	탐동	803-2	전	628	628	
635	탐동	803-3	답	276	276	
636	탐동	803-4	전	383	383	
637	탐동	803-5	답	170	170	
638	탐동	804	답	307	307	
639	탐동	805	유	1,174	1,174	
640	탐동	806	전	440	440	
641	탐동	807	답	1,798	1,798	
642	탐동	808	답	1,990	1,990	
643	탐동	809	답	2,605	2,605	
644	탐동	810	답	165	165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645	탑동	811	답	999	999	
646	탑동	811-1	답	548	548	
647	탑동	811-2	답	1,395	1,395	
648	탑동	812	답	1,626	1,626	
649	탑동	813	답	2,493	2,493	
650	탑동	814	답	3,590	3,590	
651	탑동	815	답	2,410	2,410	
652	탑동	816	전	2,463	2,463	
653	탑동	817-1	답	4,705	4,705	
654	탑동	817-3	답	1,090	1,090	
655	탑동	819	답	241	241	
656	탑동	822-1	전	2,221	2,221	
657	탑동	822-2	대	661	661	
658	탑동	822-6	전	1,914	1,914	
659	탑동	899	도	129	129	
660	탑동	920	도	416	331	

- 일부 해제 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조정면적 - 기고시면적	기고시 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1	남산동	산56	임	90,843	55,457	일부제외	(35,386)	90,843
2	남산동	산81	구	6,349	6,236	일부제외	(113)	6,349
3	남산동	산82	구	8,928	3,232	일부제외	(5,696)	8,928
4	내남면 노곡리	448-2	전	2,634	2,143	일부제외	(491)	2,634
5	내남면 노곡리	1374	구	3,792	1,334	일부제외	(1,343)	2,677
6	내남면 노곡리	산331	구	3,935	2,309	일부제외	(1,626)	3,935
7	내남면 용장리	산114-1	임	16,004	12,747	일부제외	(3,257)	16,004
8	내남면 용장리	산170	구	2,745	1,969	일부제외	(776)	2,745
9	내남면 용장리	산171	도	397	112	일부제외	(285)	397
10	내남면 용장리	산172	구	11,640	7,948	일부제외	(3,692)	11,640
11	배동	1132	구	952	851	일부제외	(101)	952
12	배동	1134-6	도	4,515	316	일부제외	(159)	475
13	배동	1135	구	1,170	300	일부제외	(403)	703
14	인왕동	918	구	3,372	1,748	일부제외	(1,624)	3,372
15	인왕동	920-4	제	180	84	일부제외	(96)	180
16	인왕동	926	도	645	337	일부제외	(308)	645
17	탑동	902	도	7,280	267	일부제외	(425)	692

### 3.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1	교동	226	전	800	800	
2	교동	226-1	전	3,451	3,451	
3	교동	226-3	전	1,617	1,617	
4	교동	234-1	답	1,451	1,451	
5	교동	234-2	전	1,451	1,451	
6	교동	산1	임	6,939	6,939	
7	교동	산1-1	임	299	299	
8	교동	산2	임	1,884	1,884	
9	교동	산3-2	임	23,901	23,901	
10	교동	산4	임	35,901	35,901	
11	남산동	1129-3	전	1,031	1,031	
12	내남면 노곡리	84	임	562	562	
13	내남면 노곡리	산15	임	47,603	47,603	
14	내남면 노곡리	산16	임	1,983	1,983	
15	내남면 노곡리	산17	임	1,190	1,190	
16	내남면 노곡리	산20	임	50,380	50,380	
17	내남면 노곡리	산21-1	임	43,835	43,835	
18	내남면 노곡리	산21-2	임	9,322	9,322	
19	내남면 노곡리	산21-3	임	1,587	1,587	
20	내남면 노곡리	산22	임	12,694	12,694	
21	내남면 노곡리	산23-1	임	21,322	21,322	
22	내남면 노곡리	산23-2	임	2,876	2,876	
23	내남면 노곡리	산24	임	3,174	3,174	
24	내남면 노곡리	산25	임	31,339	31,339	
25	내남면 노곡리	산26	임	13,091	13,091	
26	내남면 노곡리	산27	임	176,132	176,132	
27	내남면 노곡리	산28	임	5,157	5,157	
28	내남면 노곡리	산29	임	13,488	13,488	
29	내남면 노곡리	산30	임	17,058	17,058	
30	내남면 노곡리	산32	임	36,496	36,496	
31	내남면 노곡리	산33	임	78,942	78,942	
32	내남면 노곡리	산34	임	298	298	
33	내남면 노곡리	산35	임	595	595	
34	내남면 노곡리	산37	임	16,661	16,661	
35	내남면 노곡리	산190-1	임	16,162	16,162	
36	내남면 노곡리	산190-2	임	2,531	2,531	
37	내남면 노곡리	산190-3	구	48	48	
38	내남면 노곡리	산192	임	12,733	12,733	
39	내남면 노곡리	산192-1	구	817	817	
40	내남면 노곡리	산192-2	임	4,698	4,698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41	내남면 노곡리	산307	구	992	992	
42	배동	862	임	684	684	
43	배동	산86-5	임	2,876	2,876	
44	배동	산87-1	임	4,661	4,661	
45	인왕동	881-4	답	879	879	
46	인왕동	881-5	전	1,627	1,627	
47	인왕동	산44-1	임	15,209	15,209	
48	인왕동	산44-2	도	1,587	1,587	
49	인왕동	산44-3	임	1,779	1,779	
50	인왕동	산44-6	임	1,504	1,504	
51	인왕동	산44-7	임	986	986	
52	인왕동	산44-8	임	304	304	
53	인왕동	산45	임	595	595	
54	인왕동	산46	임	3,183	3,183	
55	인왕동	산46-1	임	486	486	
56	탑동	604-1	전	235	235	
57	탑동	604-2	전	11	11	
58	탑동	605-3	전	519	519	
59	탑동	605-6	전	31	31	
60	탑동	605-7	전	60	60	
61	탑동	605-8	전	194	194	
62	탑동	606	묘	1,436	1,436	
63	탑동	606-4	도	3	3	
64	탑동	606-5	묘	43	43	
65	탑동	606-6	묘	207	207	
66	탑동	607-1	묘	73	73	
67	탑동	607-2	묘	423	423	
68	탑동	607-3	묘	1,340	1,340	
69	탑동	607-4	묘	164	164	
70	탑동	608	묘	1,524	1,524	
71	탑동	610-4	도	212	212	
72	탑동	610-5	묘	988	988	
73	탑동	611	묘	833	833	
74	탑동	612-2	묘	268	268	
75	탑동	612-3	도	76	76	
76	탑동	612-4	도	10	10	
77	탑동	산1	임	28,451	28,451	
78	탑동	산1-1	임	111	111	
79	탑동	산2-1	묘	4,859	4,859	
80	탑동	산3	임	1,320	1,320	
81	탑동	산3-1	임	95	95	
82	탑동	산4-2	임	130	130	

연번	소재지	분할 및 합병 등 이후 지번조서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83	탑동	산4-6	임	3,076	3,076	
84	탑동	산4-7	임	304	304	



## 4. 익산 미륵사지 내외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의 노후 관리사를 개축하여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미륵사 복원정비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현재 미륵사 복원정비 심화연구를 추진 중임.
- 미륵사지 출토 석부재들은 현재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자연환경으로부터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존가치가 높은 석부재를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공간이 필요함.
- 익산시에서 익산 미륵사의 복원고증연구 성과 공유, 석부재의 보관, 미륵사 전반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복원안에 대한 가상체험 등을 통해 국민들과 미륵사의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안을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
  - 익산 미륵사지 노후 관리사 개축
    - 위치 : 현 미륵사지 관리사 및 관광지(상가부지)
    -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 약1,236㎡(기존 관리사 : 306㎡)
    - 구성 : 연구공간, 수장공간, 체험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등
- (4) 신청인 의견
  - 익산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의 경관보존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 위치, 규모, 형태, 구조 등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3.09.12./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제시, 입지 분석 필요
- 제시한 규모의 적정성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검토 및 제시 필요
- 기본 사업계획에 대해 위원회 검토 후 세부계획에 대해 추가 검토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현지조사의견('23.11.03./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 기능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간의 필요성 보강필요
- 각 실별 익산박물관과의 특화된 차별성 필요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별 구분 필요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세부 실시계획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5. 익산 미륵사지 내 경관조명 추가설치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 가. 제안사항

2023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 조명 추가공사 설계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미륵사지 복원정비연구를 실시(2013.01. ~ 2017.03.)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익산시에서 익산 미륵사지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륵사지 경관조명 추가설치안을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
  - 익산 미륵사지 경관조명 추가설치
    - 탐방로 블라드등, 사지 경계 보안등, 건물지 경관조명등, 연지 수목등 설치
    - 배선 배관 및 SMPS설치(기존 분전반 활용)
- (4) 신청인 의견
  - 현재 미륵사지 경관조명은 동·서 석탑, 당간지주, 일부 탐방로만 설치되어 야간 관람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연지, 계단 등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 조명설치가 필요함
  -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야간관광 활성화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하여 경관조명 보강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09.12./문화재위원 ○○○)

-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미륵사지 방문객 수, 야간관광 수요 등)
- 사지 외곽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도가 낮은 가로등기구를 설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 사지 내 경관조명 설치 시 전선관 및 분전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한 기존 분전반 등을 활용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3-12-048

# 1. 2024년 사적분과 문화재현장 위원회 운영 등 보고

## 가. 제안사항

문화재(사적)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나. 목적

- 지정된 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운영시기 : 2024년 상·하반기 총 2회 이상
- 현장 선정 기준
  - 최근 3년 내 민원과다, 언론 지적, 국회 등 대외적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문화재청의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 문화재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는 지역
- 운영방법
  - 현장 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안건은 최대한 지양하고 해당 문화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
  -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지자체 관계자 등 참여의 다양성 강화

## 라. 향후계획

- 2024년 5월 위원회는 현장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마. 참고사항

- 2024년도 사적분과 위원회 운영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위	10	21	13	17	8	12	10	14	11	16	13	11
소위	24	-	27	-	22	-	24	28	-	-	27	-

바.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 내 선덕왕릉 입구 하강선길 개선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43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	경북 경주시	○○○	<선덕왕릉입구 하강선길 개선>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38-18 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량 : PC암거(2.0×1.5) 설치 L=17m - 토공 : 터파기118.0m <sup>3</sup> , 되메우기 130.0m <sup>3</sup> , 순성토 운반 12.0m <sup>3</sup> - 배수공 : 흙관설치(D300) L=18m, 집수정 설치 2개소 - 구조물공 : C암거(2.0×1.5)설치 L=17.0m, 면벽설치 H=0.8~1.5m, L=5.0m, 옹벽설치 H=2.5~3.0m, L=10.0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127m <sup>2</sup>	허가	'23.11.20.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상수도 가압장 증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산82-1, 8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구역으로부터 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가압장 증설(6.0×2.5×2.5), 유량계실, 유입·유출관로(D=300, L=18.0m×2) - 토공 : 터파기(토사) 54.147m <sup>3</sup> , 되메우 기 41.402m <sup>3</sup> ,모래부설11.977, 보조기층 2.755m <sup>3</sup> - 배수공 : 유입관로(DCIP) D300, L=18m, 유출관로(DCIP)300, L=18m - 포장공 : A.S.P 파취 및 복구 = 16.455m <sup>2</sup> - 전기관벨 : 1.2×0.87×2.25m(기초 = con'c 0.72m <sup>3</sup> ) - 유량계실 : 2.5×1.6×1.8m	허가	'23.11.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효소왕릉	경북 경주시	○○○	<p>&lt;태양광발전설비 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731-3(건물위)(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2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용량 : 88kW</li> <li>- 설치면적 : 415.36㎡</li> <li>- 무게 : 16.16t(모듈의 총 무게 : 3.840kg /구조물 무게 : 12.320kg)</li> <li>- 건물 높이 : 7.365m</li> <li>- 설치 후 높이 : 9.053m</li> </ul> </li> </ul>	허가	'23.11.30.
사적 경주 헌덕왕릉	경북 경주시	○○○	<p>&lt;가설건축물(농막)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108-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5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규모 : 18㎡(3m×6m)</li> <li>- 설치높이 : 3.5m</li> <li>- 경량철골조</li> <li>- 상수도 연결·대지면적 : 803㎡</li> </ul> </li> <li>○ 허가조건 : 3년(존치기간) 후 재심의</li> </ul>	조건부 허가	'23.12.06.
사적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	<p>&lt;탐방로 개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번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내용 : 퇴적토 및 노후 콘크리트 제거 및 포장</li> <li>- 노면 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L=610m / B=10.~1.2 / 면적 698㎡</li> <li>· 터파기: T=0.1m</li> <li>· 포장공법: 황토포장(T=0.1m)</li> </ul> </li> </ul> </li> </ul>	허가	'23.11.17.
사적 부여 능산리 사지	충남 부여군	○○○	<p>&lt;2023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기념 고유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93(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3.12.12(화) 10:00~12:00</li> <li>- 시설물설치 : 교자상(150cm×90cm×40cm) 1개, 향탁(45cm×30cm×20cm) 1개, 돛자리(180cm×90cm) 2개</li> </ul> </li> <li>○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li> </ul>	조건부 허가	'23.11.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lt;임목벌채 및 조림(밤나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76-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8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목수종 : 굴참나무 등(3,465본)</li> <li>- 조림수종 : 밤나무(1,680본)</li> <li>- 면적 : 4,200㎡</li> </ul> </li> <li>○ 허가조건 : 산사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li> </ul>	조건부 허가	'23.11.14.
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충남 공주시	○○○	<p>&lt;CCTV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45-3번 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개수 : 3대</li> <li>- 설치장소 : 매표소 시설물 2대, 왕릉원 내 컴퓨터 1대</li> </ul> </li> </ul>	허가	'23.12.06.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lt;기양마을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익산시 기양리 251-8번지 등 15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등 : 300개(1.5kW, 1개당 5W), H=0.55m</li> <li>- 담장등 : 250개(1.125kW, 1개당 4.5W), 설치높이 1~1.5m</li> </ul> </li> </ul>	허가	'23.11.14.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lt;숲가꾸기(간벌)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 68-1(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79,533㎡</li> <li>- 작업내용 : 간벌(사업면적의 15~20%)</li> <li>- 수종 :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li> </ul> </li> </ul>	허가	'23.11.17.
사적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충북 진천군	○○○	<p>&lt;가설건축물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9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8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199㎡</li> <li>- 규격 : 6×4m(24㎡), H 2.6m / 컨테이 너(농막) 2동</li> </ul> </li> <li>○ 허가조건 : 3년 존치 가능하며 연장 설치 시 재허가 필요함</li> </ul>	조건부 허가	'23.11.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 청주시	○○○	<p>&lt;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6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1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2동</li> <li>- 부지면적 : 4,641㎡</li> <li>- 건축면적 : 694.80㎡(1동 463.20㎡ / 2동 231.60㎡)</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2동)</li> <li>- 최고높이 : 1동 7.1m, 2동 7.1m</li> <li>-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li> <li>- 토목공사 : 토공[흙깎기(H=-20cm, 6,136㎡)], 상수공[광역상수도 이용], 우수공[우수관(D300, L=235.0m), 우수맨홀(600×600×1000, A=9.0개소)], 오수공[일체형오수받이 1개소, 우수관(D150, PVC, L=54.0m)], 포장공[아스콘포장(T=15cm, A=2,606.0㎡)], 부대공[잔디식재(H=5m, 평떼, 458㎡)]</li> </ul> </li> </ul>	허가	'23.12.05.																				
사적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p>&lt;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50-1, 527, 검복리 25-1(문화재구역에서 200~300m 이격 / 1,2구역)</li> <li>○ 사업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치</th> <th>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th> <th>설치 대수</th> <th>점용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산성리 1050-1</td> <td>W1955×H2570×D1180</td> <td>6</td> <td>33.58㎡</td> </tr> <tr> <td>산성리 527</td> <td>W1955×H2570×D1180</td> <td>4</td> <td>6.22㎡</td> </tr> <tr> <td>검복리 25-1</td> <td>W260×H376×D171</td> <td>1</td> <td>0.37㎡</td> </tr> <tr> <td>합계</td> <td></td> <td>11</td> <td>40.17㎡</td> </tr> </tbody> </table>	위치	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	설치 대수	점용면적	산성리 1050-1	W1955×H2570×D1180	6	33.58㎡	산성리 527	W1955×H2570×D1180	4	6.22㎡	검복리 25-1	W260×H376×D171	1	0.37㎡	합계		11	40.17㎡	허가	'23.11.15.
위치	충전기 보호 시설(캐노피)	설치 대수	점용면적																						
산성리 1050-1	W1955×H2570×D1180	6	33.58㎡																						
산성리 527	W1955×H2570×D1180	4	6.22㎡																						
검복리 25-1	W260×H376×D171	1	0.37㎡																						
합계		11	40.17㎡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p>&lt;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64(문화재구역에서 421m 이격/7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면적 : 140.23㎡</li> <li>- 발전용량 : 18.6kW</li> <li>- 구조물 최고높이 : H=7.342m(기존건물 최고높이 12.8m + 변경 최고높이 4.4m)</li> </ul> </li> </ul>	허가	'23.11.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p>&lt;전신주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6-59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용면적 : 0.288㎡(0.096㎡×3본)</li> <li>- 설치높이 : 12m</li> </ul> </li> </ul>	허가	'23.12.06.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	<p>&lt;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천지1·2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69-25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9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면적 : 699.4㎡(250.7㎡+448.7㎡)</li> <li>- 발전용량 : 152.32kW</li> <li>- 구조물 최고높이 : H=3.308m</li> </ul> </li> </ul>	허가	'23.11.03.
사적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lt;보호구역 내 미사용 건축물 철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동문리 26번지(문화재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1동, 가압펌프실 1식, 등나무 1식 철거</li> <li>- 퍼걸러 1식 설치</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10.
사적 포천 반월성	경기도 포천시	○○○	<p>&lt;숲가꾸기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06-1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 숲가꾸기(슈아베기 및 임재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8ha</li> <li>- 내용 : 신갈 및 리기다소나무 631본 간벌</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매장문화재는 매장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07.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lt;전국 노래자랑 개최를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가설시설물(무대) 설치(240㎡)</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설치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등</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단독주택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65번지 4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4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354㎡</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82.85㎡/182.85㎡</li> <li>- 층수/높이 : 지상 1층 / 4.2m(평지붕)</li> <li>- 구조 : 철근콘크리트</li> <li>- 콘크리트 용벽(H 0.5~4.9m/L 59m) 및 축조블럭(H 1.1~4.9m / L 55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16.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변천 17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면적 : 153.72㎡</li> <li>- 태양광 최대높이 : 7.72m(기존건축물 높이 : 6.23m)</li> <li>- 설비용량 : 34kW</li> </ul> </li> </ul>	허가	'23.11.22.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	<p>&lt;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3동) 부지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지) 사업면적 1,019㎡(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21㎡), 식생블럭(H 0~3m, L 49.2m),보강토블럭(H 0~3m, L 111.7m)</li> <li>- (2부지) 사업면적 1,058㎡(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60㎡), 식생블럭(H 0~3m, L 102.5m),보강토블럭(H 0~3m, L 71.8m)</li> <li>- (3부지) 사업면적 1,031㎡(부지면적 998㎡, 도로면적 33㎡), 식생블럭(H 0~3m, L 53.3m),보강토블럭(H 0~3m, L 79.8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	<p>&lt;단독주택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산55번지 7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486㎡(부지면적 170㎡, 도로면적 316㎡)</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7.84㎡ / 17.84㎡</li> <li>- 층수/높이 : 지상 1층 / 4.0m</li> <li>- 구조 : 경량목구조</li> <li>- 콘크리트 용벽(H 0~3m / L 128m)</li> <li>- 콘크리트 포장(T 200mm 이하 429㎡)</li> </ul> </li> </ul>	허가	'23.11.21.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경기도 구리시	○○○	<p>&lt;아차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68번지 8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 2-2호선) 길이 41m, 폭 8m</li> <li>- (소로 3-2호선) 길이 94m, 폭 6m</li> <li>· 토공사 : 절토 710㎡, 성토 123㎡</li> <li>· 포장공사 : 아스팔트포장 1,157㎡, 잔디블럭포장 20㎡, 미끄럼방지포장 184㎡</li> <li>· 우수공사 : 우수관(D450~1200) 32m</li> <li>· 구조물 : L형 옹벽(H 2.0~3.0m) 24m, 자연석 쌓기(H 1.5m) 11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20.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	<p>&lt;개간부지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28-22번지, 산12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간목적 : 개간 후 농작물(채소류, 곡물 등) 재배</li> <li>- 개간면적 : 3,101㎡</li> <li>- 절토량/성토량 : 1,712㎡ / 1,054㎡</li> <li>- 수목벌채 : 소나무, 밤나무, 활잡목 등 123본(31.14㎡)</li> <li>- 법면처리 : 씨드스프레이 및 코아네트 설치(1,134㎡)</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보호구역 내 그늘막 설치>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8 (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그늘막 설치(가로 3 × 세 로 2.2 × 높이 2.5)	허가	'23.11.27.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	<국도 확장>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 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 5구역) ○ 사업내용 : 군북~가야 국도건설 공사 (총연장 6.96km, 도로 확장 8m→11.5m)	허가	'23.12.05.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경남 함안군	○○○	<작물재배사 건립>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392-1 등 5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 22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작 물재배사) 건립 - 사업면적 : 6,235㎡ - 건축면적(규모) : 517.5㎡(1층) ※ 높이 3m 이상의 절토 및 석축 ○ 허가조건 : 굴착 작업 시 참관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3.12.11.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	<오수관 매설 및 진입로 조성>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4-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오수관 매설(폭 1m, 연장 6m, 깊이 1.3m), 진입로 조성(폭 6.6m, 연장 5m, 아스콘포장 및 옹벽 설치)	허가	'23.11.02.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자원순환시설 철거 후 증축(선별장)>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86-10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5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철거) 1동, 면적 74.4㎡, 높이 약 8.5m - (증축) 1동, 면적 63.7㎡, 높이 8.46m	허가	'23.11.20.
사적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상수관로 매설>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 94-9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연장 902m, 굴착 폭 1.5m, 깊이 1.3m (관경 75, 50mm)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3.11.1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전주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	<p>&lt;산불예방 숲가꾸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53-4 외 3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29.8ha(1구역), 숲 밀도조절 (1,000본/ha → 500~600본/ha)</li> <li>- 숲아베기, 중층가꾸기, 가지치기 등</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벽 인근 작업 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후 시행</li> <li>- 외래수종 우선 제거</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굴착 작업 시 관계전문가 입회</li> <li>-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람객 및 지역주민에게 안내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17.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lt;하구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0-32 외 2필지(문화재구역 내외)</li> <li>○ 변경내용(추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관로 정비(2개소)</li> <li>- 빗물받이 설치(1개소)</li> </ul> </li> <li>○ 허가조건 : 굴착시 서울문화재연구원 참관</li> </ul>	조건부 허가	'23.11.14.
사적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p>&lt;보호구역 내 미사용 초소 철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1-1 (문화재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 (철거 건축물 규모) 면적 3.91㎡, 높이 2.85m</li> <li>○ 허가조건 : 지하구조물 철거시 관계전문가 입회</li> </ul>	조건부 허가	'23.12.13.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lt;보호구역 내외 연화산 사면 수해복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3, 산1번지(문화보호구역 내외)</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비온 옹벽 설치(H=2.0M,L=8.0M)</li> <li>- 배수시설 설치(벤치플럼관 400×400, L=32.0M / 이중벽관 D500, L=12.0M / 집수정 1,000×1,000, 1개소)</li> </ul> </li> <li>○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li> </ul>	조건부 허가	'23.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lt;보호구역 내 진입로 들계단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 513번지(문화재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서원 돌다리 진입로 계단 정비</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행 하되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li> </ul>	조건부 허가	'23.12.01.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북 경산시	○○○	<p>&lt;경산대입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사무소 추가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산시 임당동 42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0m 이격 /1구역)</li> <li>○ 변경내용(추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10,152㎡</li> <li>- 건축(연)면적 : 1,926.8㎡</li> <li>- 건축규모 : 지상 1층 12동/최고높이 4.2m</li> <li>- 부대시설 : 매쉬펜스(경간 2m, 208개), 도로경계블럭(경간1m,336개),아스콘포장(4,917.3㎡),플룸관(300×300mm, 325m), 보도블럭(732㎡)</li> </ul> </li> <li>○ 허가조건 : 존치기간 연장시 재허가 필요</li> </ul>	조건부 허가	'23.11.21.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lt;단독주택 부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88-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0m 이격/2구역)</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 660㎡ → 634㎡</li> <li>- 보강토옹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석 쌓기(H=0~3.5m, L=56m) → 자연석 쌓기(H=0~3.0m, L=79m)</li> <li>▲ 석축(H=0~3.5m, L=57m) → 석축(H=0~4.0m, L=46m)</li> </ul> </li> <li>- 최대절토/성토고 : 3.5m/3.5m → 3.5m/4.0m</li> </ul> </li> </ul>	허가	'23.11.24.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lt;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4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 844㎡</li> <li>- 건축면적/ 연면적 : 331.19㎡/ 492.3㎡</li> <li>- 건축규모/ 최고높이 : 1동 2층/ 7.9m (평지붕)</li>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li> </ul> </li> <li>○ 허가조건 : 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를 할 것</li> </ul>	조건부 허가	'23.10.0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lt;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07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6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 803㎡→ 799㎡(사업부지 660.0㎡, 도로 139.0㎡)</li> <li>- 건축면적/ 연면적 : 117.64㎡/ 149.77㎡→ 117.90㎡/ 97.65㎡</li> <li>- 건축규모/ 최고높이 : 지상 2층(1동) → 지상 1층(1동)/ 7.5m→ 6.45m</li>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목구조</li> <li>- 보강토 옹벽 설치 : 41m(H=0.2~2.9m) → 93m(H=0.2~4.2m)</li> <li>- 콘크리트포장(T=20cm) : A=315㎡, 웬스 설치(L=82m), 수목식재(41주)</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07.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lt;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4번지 등 4필지(문화재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7,936㎡</li> <li>- 건축면적/ 연면적 : 201.78㎡(가동 107.73㎡, 나동 94.05㎡)/ 869.95㎡</li> <li>-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2동(지하연결)/최고높이 13.68m(지하층 포함)</li>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한식목구조(지상)</li> <li>-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절토(H=7.5m) 7,500㎡, 성토(H=3.1m) 1,125㎡, 사토 7,553㎡</li> <li>·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6목 H=0.2~2.8m, L=84m), 한식 담장(H=1.2m, L=165.4m)-담장기와 포함</li> <li>·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175㎡</li> <li>· 조경공 : 철쭉(150주), 측백(150주), 눈주목(100주)</li> <li>· 부대공 : RPP가설 방음벽(H=4.0m, L=211m), 이동식세륜시설 1개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각 1개소</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관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 후 시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2.0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관문성	울산시 북구	○○○	<p>&lt;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북구 중산동 33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036㎡</li> <li>- 규모 : 18㎡(3m×6m), H=3m/ 1개소</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존치 가능하며 연장 설치 시 재허가 필요함.</li> <li>- 컨테이너 색상은 회색 계열로 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3.11.09.
사적 관문성	울산시 울주군	○○○	<p>&lt;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308-5, 308-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802㎡(사업부지 626㎡, 도로 176㎡)</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19.71㎡/119.71㎡</li> <li>-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1동)/최고높이 5.3m</li> <li>- 건축구조 : 목구조</li> <li>-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흙쌓기(H=2.65m) 252㎡, 흙깎기(H=1.61m) 282㎡, 터파기 77㎡, 되메우기 30㎡</li> <li>· 구조물공 : 석축찰쌓기(H=0.0~2.5m) L=108.7m, 돌계단(B=2m)</li> <li>· 상수공 : 관정 2개소, 상수관(φ25m/m) L=41.0m</li> <li>· 우수공 : 우수관(Ø250m/m) L=100.0m, 우수관(Ø350m/m) L=8.0m, 플룸관(D200) L=46.0m, 집수정(0.5×0.5×0.8m) 6개소, 집수정(0.8×0.8×1.0m) 1개소</li> <li>·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이하) A=229㎡</li> </ul> </li> </ul> </li> </ul>	허가	'23.11.23.

####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